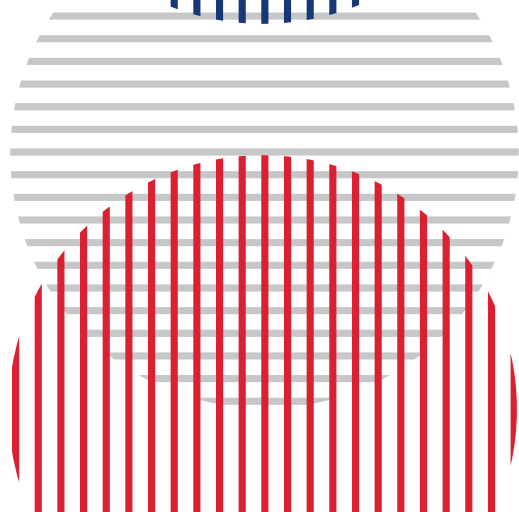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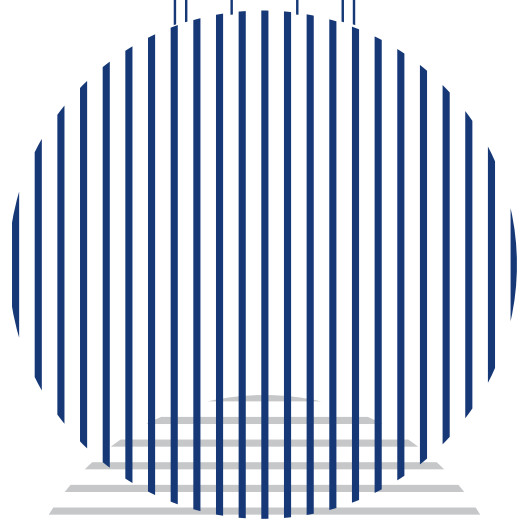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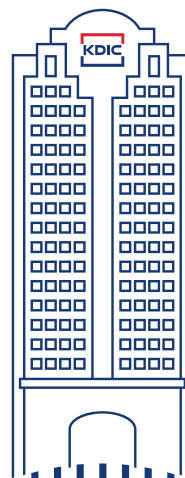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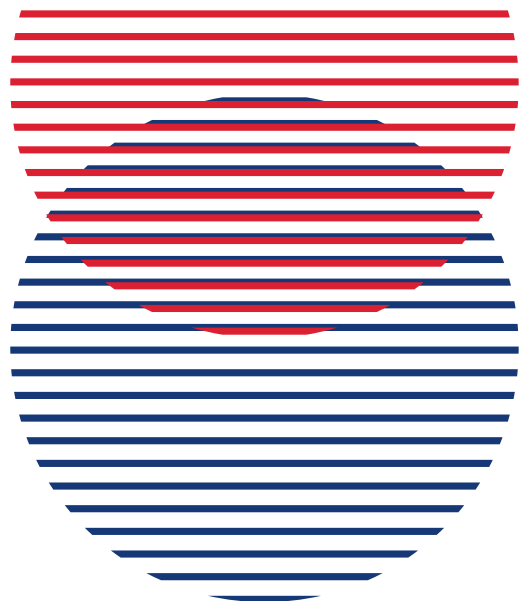


ISSN 2093-5048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

2021 연차보고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

2021 연차보고서

발간사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딛고 성공적인 K-방역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실물경제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종료와 인플레이션 위험에 따른 긴축 논의가 맞물리면서 국내 가계·자영업자의 급격한 부채 증가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례없는 어려움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 수행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공사는 '21년 중 우리금융지주 지분 11.3%를 블록세일과 입찰을 통해 성공적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함과 동시에 잔여 보유지분이 5.8%로 줄어들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자금투입 후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사실상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21.7월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전담조직을 통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반환절차를 간소화하고,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신규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채무조정 확대, 대출채권 최고금리 인하 등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비대면 생활금융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함에 따라 ESG전략체계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 ESG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 발생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21.6월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높은 부실정리계획 작성 등 제도 정착을 위해 10개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정리계획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1 연차보고서

한편,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전성을 향상토록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지표의 적합성을 높이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금융권의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비용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채를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앞서 조기에 상환하고, 기금 설치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수행한 주요 업무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민들이 예금보험 공사의 업무 및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태현

김 태 현

목차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10
제2장	조직 운영	24
	제1절 조직 구성	25
	제2절 조직 관리	30
제3장	예금보험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	42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43
	제2절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연구 강화	44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50
제4장	기금 관리	56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7
	제2절 예금보험기금	66
제5장	리스크 관리	76
	제1절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노력	77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성공적 운영	82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관리	85
제6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88
	제1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성공적 운영	89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확대 노력	93
	제3절 부실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98

2021 연차보고서

제7장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파산재단 관리	102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정리	103
	제2절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107
	제3절 부실금융회사 주요자산 관리	108
	제4절 파산재단 관리	116
	제5절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 관리	121
제8장	부실책임 추궁	124
	제1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125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29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30
제9장	사회적가치 추진 및 성과창출 노력	134
	제1절 사회적가치 추진 기반 강화	135
	제2절 사회적가치 추진 실적	138
제10장	2021년도 결산	154
	제1절 결산 개요	155
	제2절 결산 기준	156
	제3절 결산 현황	161
부 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169
	2. 대외평가	172
	3. 2021년도 주요일지	174
	4. 통 계	176

표 차례

표 I-1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14
표 I-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지원 및 조달 현황	15
표 I-3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16
표 II-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5
표 II-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26
표 II-3	임 원	27
표 II-4	인원 현황	29
표 II-5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사업	32
표 II-6	공사 주요 조직문화 프로그램	34
표 II-7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개선과제	39
표 II-8	2021년도 정보화 주요 대외평가 실적	40
표 III-1	2021년 주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연구 현황	45
표 III-2	2021년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발간 현황	46
표 III-3	학술행사 개최 현황 및 발표 내용	47
표 III-4	2021년 주요 발간물	48
표 IV-1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요율	57
표 IV-2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 수입	58
표 IV-3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보채 상환 현황	59
표 IV-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60
표 IV-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61
표 IV-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62
표 IV-7	상환기금의 회수(2021년)	64
표 IV-8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64
표 IV-9	금융권역별 파산배당금 회수	65
표 IV-10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66
표 IV-11	연도별·계정별 예금보험료 수입	66
표 IV-12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68
표 IV-13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69
표 IV-14	단기사채 발행 및 상환	70
표 IV-15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70
표 IV-16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71
표 IV-17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72
표 IV-18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21년 및 누계)	73

표 IV-19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74
표 V-1	2021년 「금융리스크리뷰」 주요 내용	81
표 V-2	차등평가의 구분	82
표 V-3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금융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83
표 V-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85
표 VI-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전후 비교	92
표 VI-2	사모운용사 청산 업무 현황	94
표 VII-1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련 국제기구 권고 사항	105
표 VII-2	저축은행 파산재단 주요자산 유형별 현황	109
표 VII-3	파산재단 주요자산 유형별 회수 실적	115
표 VII-4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및 채권 소각 주요 내용	118
표 VII-5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120
표 VII-6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120
표 VII-7	케이알앤씨(KR&C) 인수자산(누계)	121
표 VII-8	케이알앤씨(KR&C) 보유자산(잔액)	123
표 VIII-1	부실금융회사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126
표 VIII-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127
표 VIII-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127
표 VIII-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129
표 VIII-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129
표 VIII-6	국내재산 회수 현황	131
표 VIII-7	해외재산 회수 현황	132
표 VIII-8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현황	133
표 IX-1	PF사업장 등 공익활용 내역	144
표 IX-2	2021년 사회공헌활동 내역	146
표 IX-3	비대면 생활금융교육 현황	148
표 IX-4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사업 추진 내역	149
표 IX-5	KDIC 모범거래모델 4대 유형별 개선 필요사항 및 제도개선 실적	150
표 IX-6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153
표 X-1	요약 재무상태표(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163
표 X-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통합)	164
표 X-3	요약 재정상태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5
표 X-4	요약 재정운영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6

그림 차례

그림 I-1	차세대 IT시스템 추진방향 및 공사의 디지털혁신 변화 모습	12
그림 I-2	예금보험기금 계정 체계 및 수익 지출 구조	15
그림 II-1	조직도	29
그림 II-2	공사 비전 및 의미	31
그림 II-3	KDIC 비전 및 전략체계도	31
그림 II-4	KDIC 성과관리체계도	35
그림 II-5	적극행정 제도 운영 흐름도	37
그림 III-1	연구성과물 홍보영상	49
그림 VI-1	연도별 착오송금 건수 및 금액	89
그림 VI-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91
그림 VI-3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96
그림 VI-4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활동 실시	97
그림 VI-5	신문광고, SNS 홍보	100
그림 VII-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 개요	103
그림 VII-2	2021년 비대면 정리 종합 훈련	106
그림 VII-3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109
그림 VII-4	4단계 자산 회수관리 체계	110
그림 VII-5	주요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113
그림 VII-6	매각 대상 자산별 외부 전문기관 유형	114
그림 VII-7	파산재단 업무수행조사 실시 및 피드백	117
그림 VII-8	예보공매정보 화면	119
그림 VII-9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122
그림 VIII-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126
그림 VIII-2	국내재산조사 업무흐름도	131
그림 VIII-3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흐름도	132
그림 IX-1	사회적가치 강화를 위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135
그림 IX-2	ESG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136
그림 IX-3	ESG 전략체계안	137
그림 IX-4	동네서점 지원제도 카드뉴스	151

사진 차례

사진 III-1	정책심포지엄(2021년 12월)	47
사진 III-2	2021년 IADI 아태지역위원회 기술지원워크숍	51
사진 III-3	IFIGS-World Bank 공동 개최 웨비나 및 제8차 IFIGS 연차총회	53
사진 III-4	2021년 제7회 「KDIC Global Training Program」 개최	54
사진 III-5	메타버스 사옥 방문 인증이벤트 및 가상 문화체험 영상	54
사진 VI-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담센터 개소	91
사진 VII-1	자산 매각 홍보 방안	111
사진 VII-2	2021년 주요 매각 자산	114
사진 IX-1	경영진의 안전활동 참여	142
사진 IX-2	안전교육 활동	143
사진 IX-3	페플라스틱→친환경 에코백 업사이클링 활동	143
사진 IX-4	청주·남양주 상가의 공익활용	145
사진 IX-5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46
사진 IX-6	화재취약계층에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147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

주요 추진 업무

2021년 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금융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금융시장 안정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 강화를 위해 부보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하고, 리스크 상시감시와 차등평가 간 업무 연계 강화를 통해 업권별 잠재리스크 요인을 차등보완지표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상시감시 결과 경영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조사·공동검사 및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2021년 6월 말부터 대형금융회사(SIFI) 대상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를 시행하여 금융시스템 불안에 안정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 8월,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비용인 예보채상환기금 부채를 당초 계획 대비 6년이나 앞서 모두 상환하였고, 동 기금 설치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을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재정에 기여하였다. 기금 건전성 제고 및 기금관리체계 정비를 위하여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예보법 개정, 운용자산 및 운용방식 다변화 등 다각도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지분 11.3%를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와 사실상 완전 민영화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캄코시티 사업 재개를 위한 한-캄TF 적극 운영 및 관련 소송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파산재단 운영 효율화 및 자산관리체계 정비,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엄정한 부실책임조사 등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하여 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2021년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신속하고 편리한 반환으로 착오송금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대국민 홍보 등 노력을 지속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예보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보금융회사 영업점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에서도 표시·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있으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열기 속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신설 및 투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부실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영관리와 신속한 청파산을 지원함으로써 펀드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썼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채무조정자 대상 상환유예기간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취약계층 대상의 비대면 금융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는 사회적가치와 환경, 투명경영을 반영한 ESG전략체계를 별도로 수립하고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ESG경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금을 전달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등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인재 및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과 청년 고용 확대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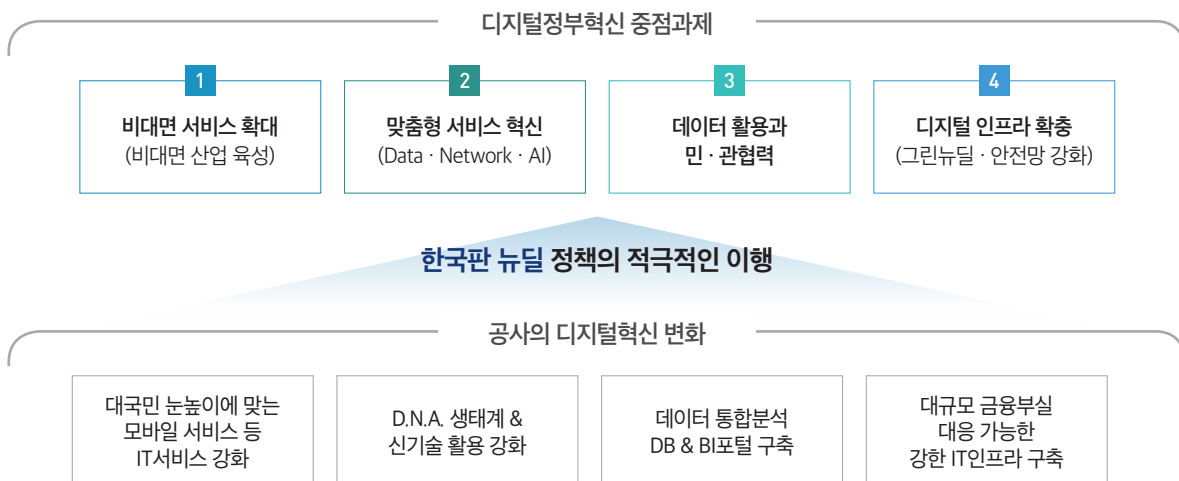
공사는 KDIC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조직과 업무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IT시스템을 개편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개선 및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공사 대응

공사는 2021년 8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원활한 자원 조달을 통한 예금자 보호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현행 예보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2024년 8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을 통하여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사는 디지털 환경 변화의 신속한 대응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해 설립 이래 최초로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사업(2021~2023년, 479.2억원)에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 2022년엔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사업의 선수행과제(Quick-win)인 ① 대국민 상담 챗봇 시스템, ② VR 부동산 공매정보 서비스, ③ 통합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그림 1-1 차세대 IT시스템 추진방향 및 공사의 디지털혁신 변화 모습



이와 더불어, 7월 6일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비스’를 적시에 오픈하였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시안 검토 및 시스템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완료하고, 시스템 모의 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향후에는 모바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동참하였다. 자체적으로 수립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에 따라 30개의 뉴딜과제를 이행하였으며, 과제의 실적점검과 환류를 위해 성과창출TF 회의를 매분기 개최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이 ‘한국판 뉴딜 2.0’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등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뉴딜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행함으로써,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전파를 통한 국제협력 및 교류 강화

공사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국제보험계약자보호 기구포럼(International Forum of Insurance Guarantee Schemes, IFIGS) 등 국제기구의 고위직 당선 및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공사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공사가 고유 브랜드화하여 해외 예금보험기구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KDIC Global Training Program」을 통해 해외에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였다.

우선, 공사는 국제기구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힘을 기울였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였다. IADI의 경우 모든 정회원과의 접촉, 회원별 맞춤형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진행하여 2021년 IADI 회원총회에서 86개 정회원 기구 투표 결과 공사 사장이 이사로 선출되었다. 또한, IFIGS 의장 및 정보공유워킹그룹장 기구로서 IFIGS의 정보공유 확대, 인지도 제고, 회원규모 증대 등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KDIC Global Training Program」을 통해 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뉴딜, 사회적 가치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였다. 국내기업의 웨비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연수를 실시하여 해외 참가자에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홍보하였다. 또한, 충주시와 협업하여 문화체험 영상을 제작하고 연수 시 영상을 상영하여 해외에 충주시를 홍보하고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였다.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을 위한 효율적 기금관리

공사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말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해야 할 82.4조원의 부채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기금 설치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 1.25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다.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2027년 말)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20.12월)

한편,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지분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다. 2021년에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1.33%를 매각하여 1조 470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우선주 매입·소각을 통해 350억원을 회수하였고, 배당 극대화 노력으로 총 1,627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우리금융지주 614억원, 서울보증보험 987억원, 한화생명보험 26억원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매입, 인수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로부터의 대출금 이자 수령(476억) 등을 통해 477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1-1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액	회수액 ¹⁾	잔여지분 평가액 ²⁾	공사 지분율
공사	우리금융지주(舊우리은행)	127,664	123,360	5,362	5.80%
	한화생명보험	35,500	25,071	2,549	10.00%
	서울보증보험	102,500	41,333	30,463	93.85%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11,581	3,398	8,183	우선출자증권
합 계		277,244	193,162	46,557	-

주 : 1) 지분매각,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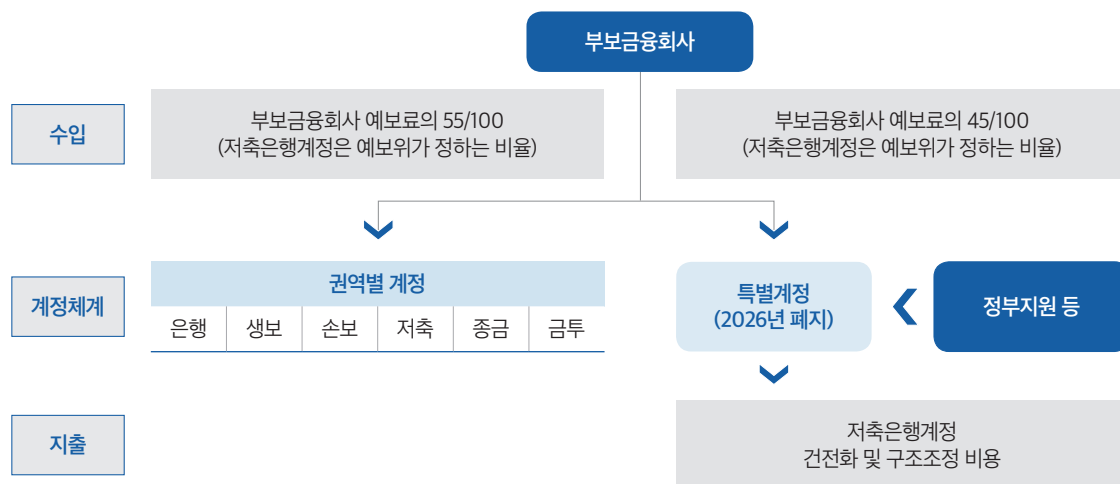
2)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은 2021.12월말 종가 기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우선출자금 회수예정액 기준,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도에 실시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계산 시 평가금액 기준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제고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보험금 지급 등으로 2021년 말까지 31개 저축은행에 27조 1,717억원을 사용하였다.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보험료·차입금·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1년 1월부터 새로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부실 정리에 활용

그림 1-2 예금보험기금 계정 체계 및 수입 지출 구조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2년~201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2,500억원을 무이자·장기 상환조건(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차입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채권’을 발행하여 부보금융회사 차입금을 지속 상환하였으며, 단기사채 활용, 예특채의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인증 및 발행(2021년 5회, 총 1.15조원)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였다.

표 1-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지원 및 조달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조원)

지 원 액			조 달 액	
삼화 등 31개 저축은행	출자, 출연 및 예금보험금 등	27.2	계정 간 차입	2.0
			외부조달(특별계정채권 발행 등)	7.5
			보험료 등	17.7
합 계		27.2	합 계	27.2

한편, 공사는 예금보험료 감면 시스템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고, 감액률과 기금적립 수준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0년 말 기금적립률이 목표규모 하한을 초과한 생명보험업권에 대하여 2020년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감액(70%)하였다.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 및 부실 확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상시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부실징후를 사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재무정보와 업권 및 시장정보를 입수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내부 리스크 감시모형을 활용한 개별 금융회사 부실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또는 공사 단독조사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On·Off-site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감독당국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 상시감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적시 수집은 가장 핵심적 요소로, 이를 위해 공사는 한국 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안전망 기구 간 정보공유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의 정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기 선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리스크정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IT기반 리스크 상시감시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수집한 리스크감시 정보에 대한 기본 재무분석 기능 자동화, 재무 및 비재무 정보 통합조회, 부실징후 추세분석, 재무지표 이상치 적출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점검의 경우 금감원과의 실무협의 활성화 및 매분기 공동검사 대상 선정 관련 사전협의를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에는 방역지침·원격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총 12회, 공사 단독조사 1회를 실시하여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 및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표 1-3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동검사	9개사	8개사	12개사	7개사	12개사
단독조사	6개사	3개사	1개사	-	1개사

한편,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실질리스크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에 있어서 평가지표를 재점검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하여 정교화하는 등 부보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건전경영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능동적인 예금자보호 서비스 실현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제고된 반면, 송금인의 실수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자금이 이체된 착오송금은 크게 증가*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020년 기준 전 금융업권 20만건(4,646억원)의 착오송금 발생(출처 : 금융결제원)

법 개정 후 제도 시행까지 약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및 공사 내규 등 하위 법령 및 규정을 제·개정하여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시행에 토대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언론·SNS, TV광고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에도 공사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다. 2021년 12월 말까지 총 5,281건(77억원)의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접수되어,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이 96% 수준에 달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공사는 인터넷, 방문신청 이외에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보완하는 등 착오송금인의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불완전 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금융당국은 2020년 7월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사모펀드 전담 검사단」을 금융감독원 내에 구성하고, 공사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사는 조사·검사 유경험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 6명을 「사모펀드 전담 검사단」에 파견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공사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점검 및 사모펀드 사후 처리 등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지원TF」를 신설하여 사모운용사 검사 상황을 파악하고 부실이 발생한 사모운용사 2개사에 대해서는 경영관리(1개사) 및 청산(1개사) 등 정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6월 금융위원회의 긴급 조치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1개 사모운용사의 경우 공사는 공사 직원을 경영관리인으로 파견하여 고유재산 등을 관리하며 펀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다. 2021년 11월 말 금융위원회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근거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부과하면서 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공사는 청산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파견하여 재산목록 작성 및 확인, 채권신고공고 등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2020년 12월 청산 절차를 시작한 1개 사모운용사의 경우 공사는 청산인으로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부실 관련 임직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채무초과를 사유로 하는 파산 절차로의 이행을 위해 파산신청 준비도 병행하였다.

모든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표시·설명·확인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사는 표시·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대면 금융거래 일반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계좌조회 화면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보호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호 로고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공사는 예보제도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유튜브·SNS 홍보, TV·교통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최신 홍보 트렌드에 맞춰 유튜브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착오송금·금투상품 안내·예보제도 안내 등 대국민 관련 콘텐츠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공사 SNS 채널에 게시하여 공사 및 주요 업무 등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였고, 지상파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 대상 공사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정보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실시 중인 생활금융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중 노인·장애인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총 845회, 14,874명에게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금융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집합 기준 적용, 강사행동수칙 개선, 참관 평가 등 현장점검 강화 및 교육 전 방역물품 지원 확대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총 637회의 대면교육을 실시하였고, 온라인 콘텐츠·체험교구 신규 제작 및 쌍방향 온라인교육 신설 등 고객 니즈를 반영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로 총 208회의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 및 제도 개선

공사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시하지 못한 우리금융지주 매각로드맵 이행을 위해 2021년 4월에 블록세일로 2% 지분을 매각하여 1,493억원을 회수하였고 매각로드맵 이행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블록세일에 비해 장기투자자 유치가 가능하고, 대량의 지분 매각에도 주가 하락 발생 우려가 적은 희망 수량 경쟁입찰 방식 매각으로 9.33% 매각에 성공하였다. 매각 흥행으로 원금회수가능주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매각하여 8,977억원을 회수하였다. 2021년 블록세일과 입찰을 통한 매각 성공으로 공사의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율이 5.8%로 축소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사실상 민영화가 달성되었다.

또한, 공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금요일 거래 마감 후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월요일에 인수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그에 따라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부실저축은행을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으로 정리하였으나,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저축은행은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함에 따라 공사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공사는 2013년 하반기부터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여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관리 부담과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리체계를 정착시켰으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예금수취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17년 은행 등에 이어 2018년에는 외은지점 및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동 제도 시행의 IT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한 전체 저축은행(79개)을 대상으로 예금자 정보 데이터의 정합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저축은행 부실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점검 결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저축은행(5개)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여 오류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2021년 6월 30일, 공사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제도가 최초 시행되었다. 공사는 동 제도에 따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대형금융회사(SIFI)*’)라 한다)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초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사는 체계적인 부실정리계획 작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정리계획 작성을 개시하였다. 공사는 실효성 높은 부실정리계획 작성을 통해 동 제도가 위기에 대비한 사전대응체계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매년 선정하며 2022년도 기준 신한·KB·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 및 은행을 SIFI로 선정(21.7월)

파산재단 주요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공사는 PF사업장, 주식, 미술품, 해외자산 등 파산재단에서 보유한 주요 자산 유형별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매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및 매각장애사유 분석 등을 통해 채권 매각, M&A 등 다양한 맞춤형 매각방안을 마련하였고, 미술품 등의 경우 전문 옥션사와 협력하여 국내 또는 해외 경매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다.

공사는 자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2011년 회수 전담부서 신설 등 본부 주도의 회수체계를 정비하고, 일괄 매각방안 도입 및 매각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 새로운 매각방식을 시도하였다. 또한, 매각물건 홍보를 위해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전문번호사의 권리관계 설명, 1:1 투자 상담 및 투자 노트를 제공하는 등 잠재 매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산회수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매각방안 등을 사전 심의하고, 장기간 미매각된 자산에 대하여는 매각장애 사유별 법률 쟁점 검토 및 처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21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비접촉 PF사업장 매각과 더불어, 국내 골프 수요증가 및 아파트부지에 대한 높은 시장관심을 감안하여 관련 PF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매각을 중점 추진하였다.

2021년의 대표적 자산 매각사례로 마론뉴데이 골프장 부지 매각이 있다. 30만평·18홀 규모의 마론뉴데이 골프장 부지는 입회보증금 채무, 기존 골프장 인허가권 이전 어려움 등 각종 매각장애요인으로 인해 2017년부터 4차례 공매 유찰된 바 있었다. 이에 매수자가 회생절차 M&A를 통해 입회보증금 등 관련 채무를 확정·해소한 후 대중제로 전환하여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정보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21년 3월 직전 최저유찰가의 2.5배인 502억원에 매각이 성사되었으며, 회수자금은 향후 경기·한국·진흥·영남 파산재단 피해예금자 구제 재원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향후 골프장 건설 사업이 정상화 될 경우 건설 및 골프장 운영을 위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천안지역 골프장 방문객 증가로 관광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공사의 해외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캄코시티 사업 재개 및 피해 예금자 구제를 위해 국회, 정부, 검찰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사는 2019년도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캄보디아 정부 방문 면담*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양국 정부 간 협력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캄보디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였다.

* 2019년 11월 총리실, 외교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이 참여하여 (캄)정부 관계자 방문 면담 실시

특히, 한-캄보디아 양국 정부 간 캄코시티 공동 TF 구성, TF 1차 회의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캄코시티 관련 당면 현안 및 과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을 상시화하였다.

2020년 12월 양국 정부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캄코시티 정보공유 TF 운영기준(Terms of Reference)」에 합의하였다. 한국 정부 측에 총리실, 금융위, 국토교통부, 외교부, 대검찰청 등과 캄보디아 정부 측에 개발위원회, 국토관리부, 외교부, 법무부, 관방부, 프놈펜주정부가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캄코시티 정보공유 TF」 출범을 통해 캄코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완성하게 되었다.

TF 출범 직후인 2021년 1월에는 양국 정부 간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TF 운영 방향 및 정보공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6월에는 실무 차원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측 요청 정보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한 제공 의사를 재확인하고, 워킹그룹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캄보디아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캄코시티 현안 해결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사는 2020년 2월 27일에 부실관련자가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사업재개를 위한 확고한 법적 권한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소송으로서 사업부지 보전 소송을 최종 승소하였고, 현지 시행사 경영권 회복을 위한 소송도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공사가 보유중인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지분에 대하여 부실관련자가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반환을 청구

공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회수 노력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말까지 PF부동산, 주식, 선박, 미술품 등을 매각하여 총 5조 5,786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공사는 2011~2013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 30개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총 34개 금융회사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파산재단의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2021년 중 3,372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였다.

공사는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경비 절감 등의 성과가 파산배당 극대화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 파산재단의 통폐합 및 파산관재인 겸직 확대 등을 통해 자산감소 추세에 맞추어 적정수준의 인력과 규모로 운영되도록 하고,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규정 및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소송 등 법률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파산관재 업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자산매각 등 환과과정에서 공정·투명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파산재단 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반부패·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와 파산재단 간 안전·보건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비상대비훈련, 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파산채권자 보호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부실책임 추궁 등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학계·금융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책임 여부를 심의·확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부실책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심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공사는 부실책임심의 이후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정보 및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파산재단의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발견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을 활용하여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및 활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우선, 공사는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PF사업장 등을 코로나19 피해 청년,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매각가치 제고를 도모하였다. 2021년에는 수차례 공매에도 매각되지 않은 청주시 올리브상가 6개호 중 2개호를 충북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창업가(2개사)에게 창업공간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그 결과 빈 상가에 사람들이 드나들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청주 상가 6개호 중 공익활용 2개호 제외 인근 4개호 전부를 매각하였다. 또한, 남양주 리치플러스 상가 1개호도 지자체(남양주 시청)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연합회 판매물품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분할상환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상환유예와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대상 한시적 추가 감면 기한을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각 1년 연장하였으며, 추가 감면 대상 코로나19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동참하였다.

또한, 공사는 채용의 효율적 관리 및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연간 채용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5개년 채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정현원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36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으며, 특히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공개채용(2명)을 3년 만에 실시하여 고졸자 등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체험형인턴 프로그램의 실습기간을 예년에 비해 연장하여 청년층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개 팀장 직무에 대한 대·내외 공모를 실시하여 조직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을 발굴하여 생활 물품, 식자재 등을 후원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후원 방식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하였다. 또한, 동반성장물을 통해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여 후원함으로써, 영세업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복지시설을 후원하는 쌍방향 후원을 실현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였으며, 비규격농산물(‘못난이 딸기’) 구매, 농산물꾸러미 전달 등 판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공사 사옥 인근의 청계천 환경 정화활동 등을 위해 청계천 사회공헌활동 협약기관으로 참여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적극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과 더불어 환경 및 투명 경영을 반영한 ESG 경영을 추진하였다. ESG 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전략체계를 설정하고 ESG 추진위원회, ESG 전담조직 신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공사의 존립목적,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는 등 ESG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에 주기적으로 발행하던 “사회적가치 뉴스레터”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예보의 노력, 우수사례,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ESG 뉴스레터”로 변경하여 대내외에 ESG 경영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공사는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최고경영진이 전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공사가 획득한 ISO 45001 국제 인증의 사후관리 및 심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점검 하였으며, 사옥 내 고위험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 경영진이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지원 및 건강상담 등을 위해 건강관리실을 신설하여 임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끝으로, 공사는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반부패·청렴 경영 체계 강화 요구 및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방지 시스템(금융상품 투자 및 파산재단 자산매각 참여 제한)을 정비하여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해추구행위에 대해 공사의 적극적 예방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청렴모니터링 등 전사적 부패취약분야 개선·운영 노력을 지속하여 외부청렴도 상위권(2등급)을 유지하였으며, 공사 고유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반부패·청렴정책을 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이행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1절

조직 구성

1.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공사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채권의 발행, 기금 계정간의 거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지정,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예금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결정, 정리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보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공동검사 참여 요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표 II-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021년 12월말 기준)

구 성		성 명
당연직 위원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김 태 현
	금 용 위 원 회 부 위 원 장	도 규 상
	기 획 재 정 부 차 관	이 억 원
	한 국 은 행 부 총 재	이 승 현
위촉직 위원	금 용 위 원 회 위 촉	김 선 구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추 천	최 희 남
	한 국 은 행 총 재 추 천	김 성 민

표 II-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내 용
의결 사항	의 결	• 공사 정관의 변경 •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 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내지 납부 유예 •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 규모 설정 •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실시 요청 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 •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
	결 정	• 부실금융회사의 결정 •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 기금 계정간의 거래 •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의 공개 방법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관련 필요 사항 •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관련 필요 사항 • 가지급금의 지급 •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자금 지원 등의 예외 인정
	심 의	• 기금운용계획 • 공사 업무와 관련한 제규정의 제·개정
	지 정	• 여유자금의 운용 - 매입 대상 유가증권의 지정 - 예치 대상 부보금융회사의 지정
보 고 사 항		•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분기별 점검실적 보고

2. 이사회

이사회는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 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조직·인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다른 법령·정관 또는 다른 내규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 II-3 임 원

(2021년 12월말 기준)

직	위	성	명
사	장	김	태 현
부	사 장	공	석
상	임 이 사	박	연 서
상	임 이 사	조	양 익
상	임 이 사	김	상 기
상	임 이 사	박	상 진
비	상 임 이 사	원	봉 희
비	상 임 이 사	이	성 철
비	상 임 이 사	선	종 문
비	상 임 이 사	성	영 애
비	상 임 이 사	김	진 일
비	상 임 이 사	김	영 도
비	상 임 이 사	김	정 범
감	사 *	이	한 규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3. 조직 개편 및 현황

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 예방 및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건전성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자본시장 성장·핀테크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금보험제도 실효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자 산업분석·예금보험제도 개선·소비자 보호 부문을 중심으로 대대적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산업분석 부문 내 기존 업권별 리스크 상시감시 조직을 금융산업분석1부·2부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여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간 부실 전이 가능성 분석 등 거시건전성 및 금융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평가지표 발굴 등 차등평가모형 개선, 차등보험료율 산정 결과의 적정성 검증 체계 강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차등보험운영부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예금보험제도개선 부문 내 금융제도개선부를 신설하여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예금보험제도 보호대상 적정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금융환경 급변 속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공적자금 투입 등을 방지·대비하고자 대형금융회사관리부를 신설하였으며, 예금보험연구센터에 디지털금융·핀테크·가상자산 등 최신 금융현안을 연구·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였다.

한편, 소비자보호 부문 내 금융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하여 표시·설명·확인제도 점검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고도화된 최신 금융상품을 분석하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착오송금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착오송금반환지원부를 신설하였다.

그림 II-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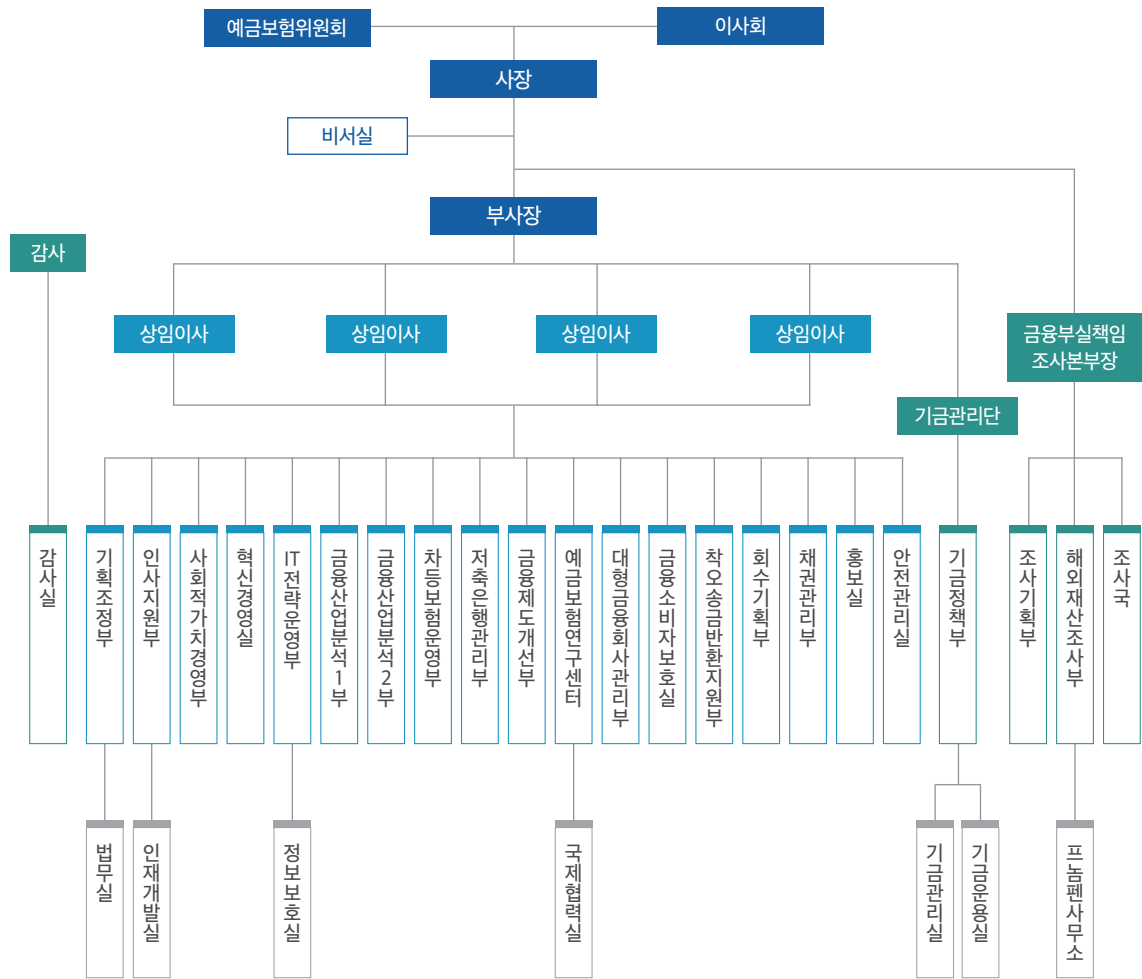


표 II-4 인원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현원, 단위 : 명)

구 분	임 원	직 원				임·직원 합계
		일반직	별정직 ²⁾	업무지원직 ³⁾	소 계	
인 원	13 ¹⁾	702	52	57	811	824

주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임이사 7인 포함

2) 전문직 및 특정직 등

3)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라 2017년 12월 신설 직군

제2절

조직 관리

1. 비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공사는 2018년 12월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비전, 핵심가치 등 전사 전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고, 이후 매년 전략체계를 정비하여 적합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하였다.

2021년에는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코로나19 관련 금융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전략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실누증 가능성, 착오송금반환지원 및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제도 등 신규사업, ESG 경영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전략과제를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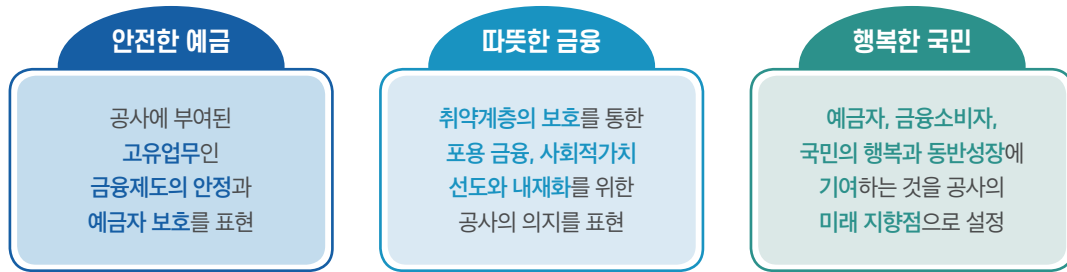
가. 비전체계

(1) 공사 비전 및 의미

공사는 설립목적에 따른 미션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이라는 현 비전을 2018년에 설정하였다.

'안전한 예금'은 공사에 부여된 고유 업무인 금융제도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 업무를 완수할 것을 의미하고, '따뜻한 금융'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사회적가치 선도와 내재화를 위한 공사의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행복한 국민'은 예금자,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공사의 미래 지향점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2 공사 비전 및 의미



(2) 비전 및 전략체계도

그림 II-3 KDIC 비전 및 전략체계도



나.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 추진사업

공사는 비전의 달성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2022~2026)의 중장기 전략목표를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시장 안정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전략과제별로 연계된 총 48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2021년 시행되는 착오송금반환지원 및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의 성공적 안착, 예금보험료 체계 개편 등 기금체계 정비, 차등평가와 상시감시 간 연계 강화 등 사업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전략과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ESG 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 추진체계 마련,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보건·안전 경영 강화, 반부패·청렴 경영 등 공직자 윤리 정립, 대국민 IT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도 개편하였다.

표 II-5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 추진사업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 추진계획
금융 소비자 보호 확대	예금자보호 서비스 강화	예금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표시제도 운영 강화
		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및 보험금 지급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 확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금융시장과 소통을 통한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검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실정리 체계 정립 등 인프라 구축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금융교육 강화
		금융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 활성화 및 재기지원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미수령금 찾아주기
금융 시장 안정 강화	기금 건전성 제고 및 기금관리체계 정비	예금보험료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
		기금관리체계의 합리적 개편
		예보기금의 안정적 조달 및 관리
		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상환대책 이행
		기금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및 공익성의 조화
	차등평가와 연계한 리스크관리 강화	상시감시와 연계를 통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부실위험 정보수집·분석 및 적시 대응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공동검사의 효율적 수행
		시스템리스크 및 코로나19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분석 강화
		부실위험 감독·조사를 위한 임직원 역량 강화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 추진계획
금융 시장 안정 강화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제도 고도화	대형금융회사 정리계획 작성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 선진화
		위기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업권별 정리제도 정비
		금융불안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 도입
	효율적인 지원자금 회수·관리	보유지분의 가치제고 및 효율적 매각 추진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회수 강화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재산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부실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익보호 강화
		신속한 해외 특별자산 회수 및 해외은닉재산조사 효율화
사회적 가치 실현	ESG 강화 등 경영혁신	ESG 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녹색금융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좋은 일터 만들기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ESG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예산 운영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정립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윤리경영 및 인권보호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문화 내재화
		채용과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상생의 노사협력 강화
	안전·보건 경영 강화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
		재난 위기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보건관리체계 정립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체계적 IT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시스템 품질 제고
		디지털 금융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역량 제고
		미래과제의 발굴 및 전략적 대응

2.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현

가. 소통과 학습을 일상화 하는 조직문화 조성

공사는 조직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구성원 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고 상생·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였다.

특히, 조직 내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대 공존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정교한 설문 문항 설계, 이벤트 개최, 참여 독려 등을 통해 46%의 높은 설문 참여율을 기록하였으며, FG인터뷰*를 통해 설문결과를 보완·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대별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구성원 간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 Focus Group Interview : 부서장, 팀장, 청년플랫폼 등 세대별 대표 그룹 2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평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온라인 중심의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하였다. 팀원, 그룹 간 협력 활동을 진행하며 팀워크 제고 및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원데이·원먼스 클래스', 온라인 플랫폼(줌 등)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랜선 모임', 현지 가이드와 온라인으로 여행하는 '랜선 투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강좌인 '워킹맘·대디 스쿨' 등을 통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임직원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표 II-6 공사 주요 조직문화 프로그램

구분	랜선 여행	랜선 모임	원데이 클래스	원먼스 클래스
대상/기간	35명 내외/1시간 30분	5인 이상/1시간 내외	팀/반일	5인 이상/1~2개월
프로그램	유튜브Live 활용, 현지가이드 해설	줌, 제페토 활용	가족공예, 도예, 인문·예술 강좌 등	

나. 성과주의 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운영

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 말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alanced Score Card : BSC)를 도입하여 2006년 부서 단위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3급 이상 종합직원의 성과급에 반영하였으며, 2007년 팀 단위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한 후 2008년 평가결과부터 전체 종합직원 성과급에 반영하였다.

공사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성과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윤리경영 가점을 신설하여 각 팀의 KPI 설정 및 고유업무 수행 시 윤리경영 과제를 연계하도록 독려하였고, '동반성장 과제 수행' 지표 신설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지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였으며, 성과향상 지원 프로그램인 '코칭 워크숍'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계량실적보고서 분량을 축소하여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성과 평가제도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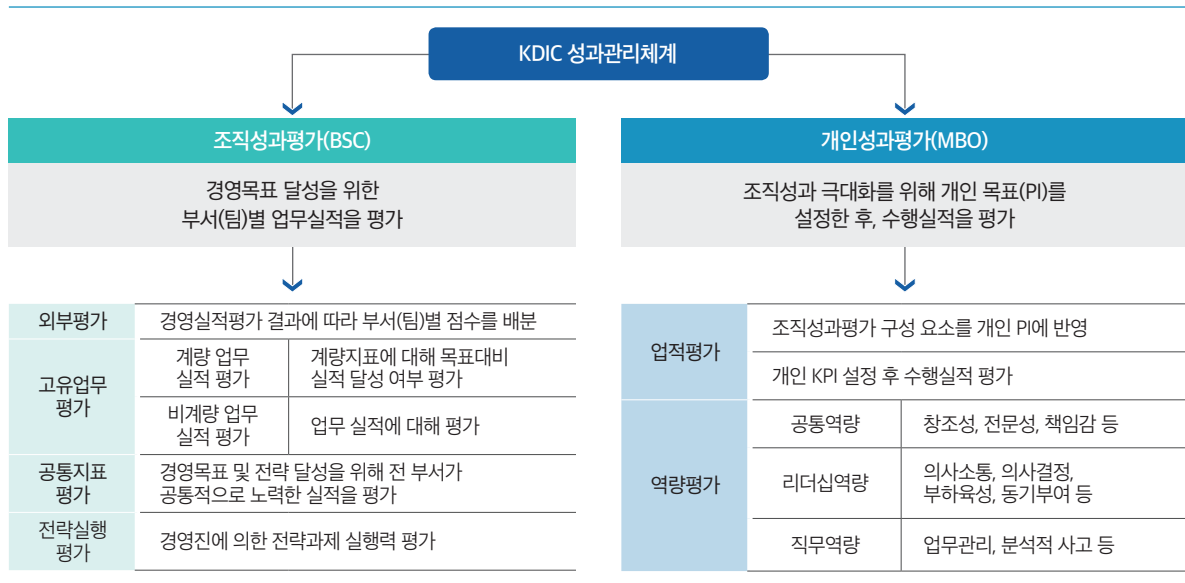
아울러, 전 직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노사합의로 도입한 개인성과평가제도(MBO)를 2012년부터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노사공동 성과평가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사적 의견 수렴을 통해 개인성과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노사 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개방형계약직 직원에 대한 평가제도 신설, 팀원의 업적평가항목 개선, 승격 등에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 변경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2018년에 상향평가 및 수평평가 등 입체적인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후, 2020년에는 성과평가 전문업체의 다면평가 결과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평가결과 분석, 부족역량 파악 및 역량 강화 방향성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하향식 평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평가환경 개선(웹기반, 모바일 환경 등)을 통해 파견·휴직·연수중인 직원도 평가자 풀에 신규 포함함으로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없는 다면평가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개인성과평가 절차의 사전예고, 직군별 이의신청 제도 신설·개선, 승격후보자명부 공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그림 II-4 KDIC 성과관리체계도



다. 기존의 업무관행 혁신 및 적극행정 선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고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도입 추진, ② 디지털 뉴딜 IT구축, ③ 포용적 금융강화를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 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장관상, 1위)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또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IT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재기지원·채무경감 등의 노력을 연중 지속하였다.

아울러,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직원을 혁신 선도 직원으로 선정하고 사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였으며, 2021년 9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공사에 높은 관심을 가진 국민들을 4기 국민참여단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2021년 업무 성과 중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선정·포상*하여 부서차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개선 아이디어 게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특허청 주관 공공기관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자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2차례 실시하고 포상을 진행하여 개인차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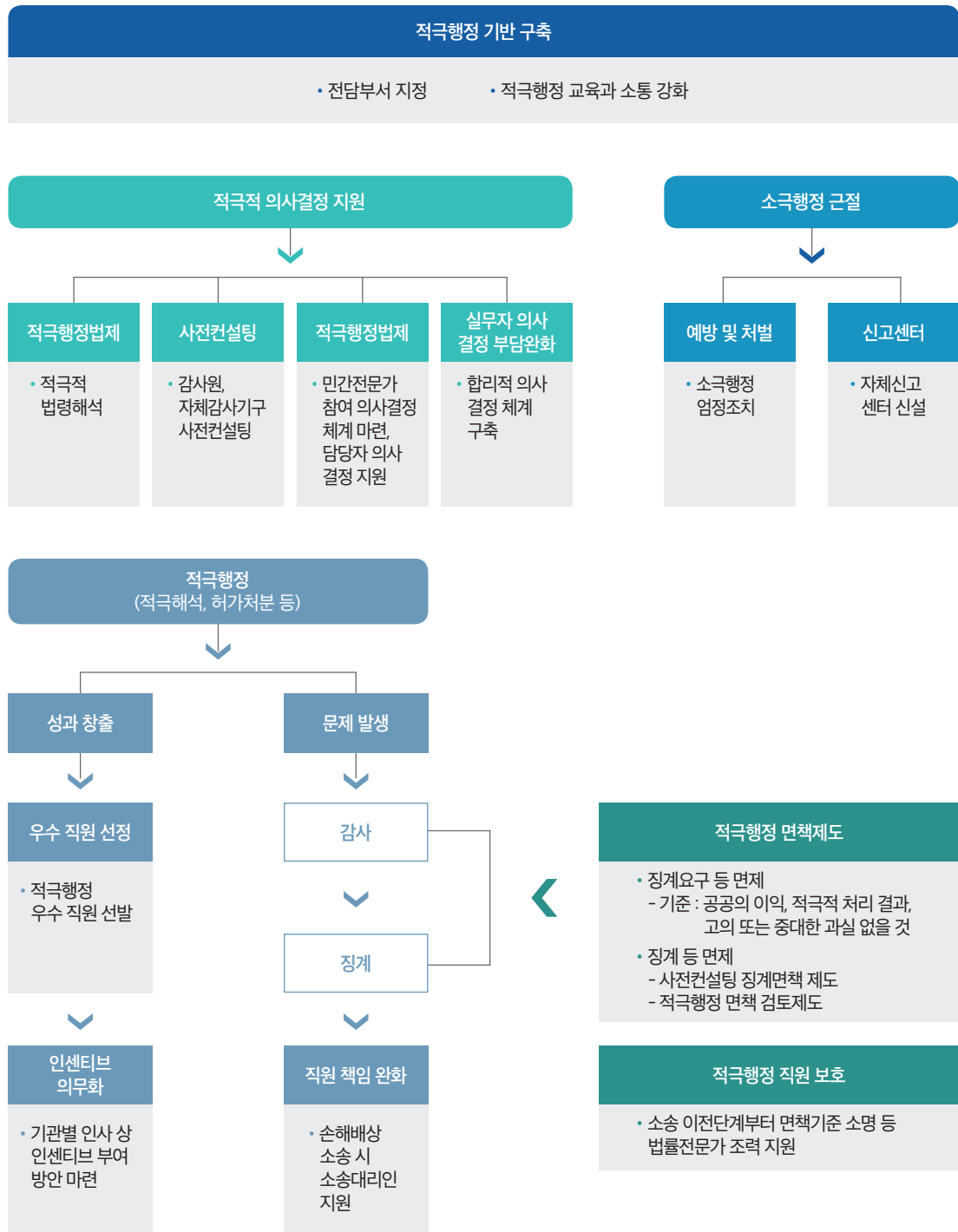
* 2021년 혁신 최우수사례 : 세계 최초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시행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한편,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우선 면책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단의 운영 및 면책 신청사안의 검토기한을 규정화하였고 수감부서의 신청 이외에도 감사반장의 직권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의 근거를 감사규정에 명문화하고, 적극행정 모범사례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적 등을 부서평가에 반영하도록 내부평가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사 내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도입하고, 모의신고 훈련, 감사 소식지(“監動뉴스”) 및 신고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사전컨설팅 부문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개최한 ‘2021년 우수공공기관 및 감사인 대회’에서 기관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II-5 적극행정 제도 운영 흐름도



3. 중장기 정보화 계획 추진 현황

공사는 IT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은 전년도에 수립한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ISMP*)을 이행하는 첫 해로, 다음과 같이 정보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으로 비즈니스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기술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여 구축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우선,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조직, 추진계획 등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 경영예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479.2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타 금융 공공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차세대 구축 전담 TF를 구성하였다. 전체 업무시스템 개편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현업 사용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리스크·기금재무·회수 등 부문별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 사업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추진하는 차세대 IT사업으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외부의 전문성 있는 사업관리 지원조직(PMO*)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지원 및 시스템 품질 확보 등 사업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였고, 타 기관 벤치마킹, 시장조사, 기술자문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함으로써 공사 IT혁신의 본격 가동 준비를 완료하였다.

* Project Management Office : 대규모 IT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의 품질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조직

2022년에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선수행과제(Quick-win)인 ① 「대국민 상담 챗봇시스템」, ② VR 부동산 공매정보 서비스, ③ 「통합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표 II-7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개선과제

구 분	과 제 명
1 KDIC New Start (전사적 IT시스템 강화)	통합 지원시스템 재구축(지원계) - ERP, e-HR, 내부통제 포함
	통합 고유업무시스템 재구축(기간계) - 기금운용 포함
	통합 권한관리시스템 구축
	개발/테스트계 인프라 구축
	대내·외 연계시스템 구축
	배치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IT Service Management 시스템 고도화
	업무자동화(RPA)시스템 대응개발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IT서비스 강화	스마트고객센터시스템 구축·콜센터
	대국민서비스 채널 통합 구축 - 홈페이지, 모바일(미수령금 신청)
	대국민 챗봇 상담시스템 구축
	VR기반 부동산 공매정보 서비스 구축
3 D.N.A.생태계 강화 및 언택트 업무 환경	통합 정보분석시스템 재구축(정보계)
	통합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 스마트 포털, 모바일 그룹웨어
	통합 커뮤니케이션시스템 고도화
4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응 가능한 IT인프라 구축	차세대 IT인프라 구축
	차세대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차세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통합 보안관제센터 구축
	백업/재해복구시스템 구축
5 기타	외부 PMO
	외부 감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또한, 공사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공사의 중요 정보자산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공사의 긍정적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공공·금융기관 대상 디도스 공격 확산 우려에 따라 사이버대피소를 도입하여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국정원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통신사 합동 디도스 공격 대응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 자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등 각종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침해사고 예방 및 사이버공격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전사 실전형 정보보안 체험훈련 등 임직원 정보보안 인식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공사 창립 이후 사이버 보안사고 ‘ZERO’ 달성 및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4년 연속(2018~2021년) 준정부기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후화된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기술지원 및 보안취약점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성능 및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ISMS-P 인증* 사후심사를 통과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한 결과,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다.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표 II-8 2021년도 정보화 주요 대외평가 실적

대외평가	주관기관	평가결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행정안전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정보자원 관리수준)		97.1점으로 “우수”성적 획득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국가정보원	4년 연속 최상위권(“TOP5”) 달성

아울러,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비스’를 적시에 오픈하였으며, 강제집행 등 후속 업무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 시스템」은 사전에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사업 분석단계 기간을 최소화하고,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시안 검토 및 시스템 검증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착오송금 업무(대량등기 자동발송, 가상계좌·편뱅킹 확인)에 업무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반환신청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업무 오류·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업무효율화를 추진하였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여 개선사항을 도출·보완하였다. 2022년에는 더 나아가 모바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3

예금보험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2절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연구 강화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1. 「예금자보호법」 개정

공사는 2021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을 통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에 따른 착오송금의 거래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등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률은 ①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수행근거 명문화 ②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③ 착오송금 관련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의 사후정산 방식 매입 ④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제공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2021년 8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예금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원활한 자원 조달을 통한 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부칙 개정을 통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부칙 제9134호 제2항). 현행 예보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었다. 공사는 금번 예보법 부칙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4년 8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종전 한도 기준의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방지하는 한편,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을 통하여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외에도, 공사는 2021년 6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 요건 및 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계산하도록 변경하였다.

제2절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연구 강화

1.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연구 실시

가. 제도개선 및 현안 연구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정책 동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여 대내외에 공유함으로써,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제시해왔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 금융 및 ESG 경영 확산, 비은행금융중개 성장, 금융소비자 강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예보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금융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은행 등 부보금융업권의 잠재부실위험 측정,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일런트뱅크런의 판단기준 및 대응방안 연구, 공사 사회성과의 종합적 측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차등보험요율제 도입효과 및 모형 정합성 분석, 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은행과 예보기구의 역할 비교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공사 기금운용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며 투자자 보호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본질과 내재가치, 향후 전망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지속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안전망 기구로서 공사의 역할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사는 향후에도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표 III-1 2021년 주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연구 현황

주 제	제 목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효과 및 모형정합성에 관한 분석 •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저축은행 잠재위험 분석 • 공사 사회성과 측정 개선방안 :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효과 • 공사 사회성과 측정 개선방안 :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금융안정 효과 • 은행업권 잠재부실로 인한 건전성 영향 분석 • 공사 기금운용 다변화 방안 검토 • 사일런트뱅크런 판단 기준과 공사 대응방안 연구 • 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은행과 예보기구의 역할 비교
금융현안 관련 금융안정연구	• 비은행업권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급등요인과 잠재위험 분석 • 시스템리스크 측정지표 필요성 및 개발방향 검토 • 은행업권 잠재부실로 인한 건전성 영향 분석 • 금융상품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 최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 • 증권사발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과 대응방안 • 가상자산의 본질과 전망 • 비트코인의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 기준금리 인상의 부보업권 영향과 시사점

나.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발간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사 임직원 등에게 해외 금융이슈 및 정책·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을 매월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구위원(박사)들이 해외의 주요 연구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학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 기관들의 정책동향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임직원의 금융관련 지식 함양 및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였다.

한편, 발간된 자료는 일반 국민, 정책당국 및 국책 연구기관 등에도 적극 공유하는 등 예보제도 개선 관련 연구 활성화 및 공사의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표 III-2 2021년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발간 현황

구 분	주 제
3월호	• COVID-19 충격 이후 은행 배당제한 조치의 효과 분석(BIS) 등 7건
4월호	• 경제회복 이후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IMF) 등 7건
5월호	• 금융과열지수를 이용한 금융위기 조기경보 방안 분석(IMF) 등 7건
6월호	• 정리기구와 감독기구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BIS) 등 7건
7월호	• 비은행부문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구축(伊 중앙은행) 등 7건
8월호	• 스테이블코인의 화폐로서 사용가능성·잠재위험과 정책 대응(Gorton and Zhang) 등 7건
9월호	• G-SIBs 선정 시 시장정보 기반 평가방법론 활용 방안(ECB) 등 8건
10월호	• 美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급한 과제(Hutchins Center-Chicago Booth 공동TF) 등 7건
11월호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규제 필요(PWG, FDIC, OCC) 등 7건
12월호	• 정부채 시장에서의 비은행부문 역할 증대와 복원력 강화방안(BIS) 등 5건

2. 연구 결과물 공유 노력

가.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지 발간

공사는 사회적 이슈를 감안한 시의성 있는 학술행사 개최와 함께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결과물을 대내외에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대외적으로 정책심포지엄, 외부전문가 강연회의 개최, 학술지 게재,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공유하였다.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21년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였다. 특히, 동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심포지엄 참가 인원 확대 등 연구 저변을 넓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외부전문가 강연회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환경에 미칠 영향,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 전망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동 포럼에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금융·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이슈를 토론했다.

사진 III-1 정책심포지엄(202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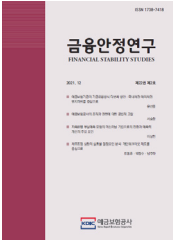
표 III-3 학술행사 개최 현황 및 발표 내용

구 분	개최시기	주요 발표 내용
정책 심포지엄	2021년 12월	• 주제: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방식: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 개최 • 발제: 세션1(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세션2(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진화 필요성과 과제)
외부전문가 강연회	2021년 2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신용공급 및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
	2021년 5월	• 금소법 발효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배상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과제
	2021년 9월	• 가상자산의 본질과 규제현황 및 전망
	2021년 10월	• 중국 경제 현황 및 금융리스크 요인

한편,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금융안전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 등에 수록·발간하였다.

이외에도,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재의 조기발굴 등을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금융안정 관련 2021년도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2개 대학 및 1개 대학원에서 46여명의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수준의 분석과 참신함을 갖춘 다수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총 6개의 논문이 당선되어 그 결과물을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 당선논문집”으로 수록·발간하였다.

표 III-4 2021년 주요 발간물

제 목	게 재 논 문
금융안정연구 (제22권 1, 2호) 	• 코로나19가 금융 시스템리스크에 미친 영향 • 주식네트워크를 통한 코로나19 충격의 금융산업 시스템 위험에 대한 영향 : 경제충격과의 비교 • The Out-of-Sample Predictability of Asymmetric Dependence of Portfolio Returns - The Multivariate Copula Distribution Function Approach •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의 경기 설명력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A Dynamic Measure of Intentional Herd Behavior Causing Excess Volatility in U.S.Stock Markets • House Price Predictability and Demographic Structure:Evidence from a Long-horizon International Data •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정책발표뉴스 효과 • 예금보험기금의 기금운용방식 다변화 방안 : 국내채권·해외채권 벤치마크를 중심으로 • 예금보험공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저축은행 부실예측 모형의 머신러닝 기법으로의 전환과 예측력 개선의 주요 요인 • 채무조정 상환의 실효율 결정요인 분석 :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중심으로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통권 제18호) 	• 예금보험기금의 기금운용방식 다변화 방안 : 국내채권·해외채권 벤치마크를 중심으로 • 디지털 금융혁신과 예금보험 • 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사후피해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2021 예금보험공사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 당선논문집 	• (최우수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운용에서의 디지털런(Digital run) 분석과 대응방안 • (우수상) 차주 단위별 DSR 규제가 가계 부채의 부실위험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우수상) 코로나19 이후 :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의 거래 확대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 (장려상) 저금리 시대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분석 • (장려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안착과 성숙을 위한 고찰 -법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 (장려상) 사모펀드 사태 예방을 위한 자산운용사의 운영위험 감지 방안

나. 연구성과물 홍보영상 제작

공사가 생산한 연구성과물(논문·보고서 등)의 대외 홍보를 위해 2편의 홍보동영상을 공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홍보영상은 논문 작성 취지 및 특징 등을 강조하고, 논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자 인터뷰를 포함하였다. 또한, 해외 연구자의 이용 지원을 위하여 영문 자막을 추가하였다.

*뱅크런 발생 시 예금인출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2021년 10월)
비은행부문의 확대에 따른 선제적 자금지원제도 도입 필요성(2021년 12월)

그림 Ⅲ-1 연구성과물 홍보영상



그 결과, 독자층을 연구자 등에서 일반인·학생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로 확대했으며, 향후 공사 유튜브 계정에 성과물이 지속 업로드됨에 따라 공사의 연구성과물의 대외 홍보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공사는 대내외 경제·금융 이슈 및 예금보험제도 홍보 등을 고려하여 우수 연구성과물을 매분기 1편 이상 선정 및 제작할 예정이다.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1. IADI 및 IFGS 등 국제기구 내 주도적인 활동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

가.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리더십 각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는 88개 정회원, 9개 준회원, 17개 파트너 기구의 총 114개 기구로 구성된 세계 각국 예금보험기구의 협의체이다. 공사는 IADI가 설립된 2002년부터 창립회원이자 이사 기구로서 그간 IADI의 주요정책 및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는 등 기존 방식의 국제 교류·협력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는 화상회의, 웨비나 등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업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온라인으로 개최된 IADI 이사회 및 연차총회에서 공사는 IADI 이사 기구로서 중장기 전략목표 수립, 재무제표 감사기준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IADI가 주관하는 각종 컨퍼런스 및 웨비나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특히, 12월에는 대만 예금보험공사가 개최한 2021년 IADI 아태지역위원회 기술지원워크숍에 발표자로 초청받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사의 비상계획 수립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예보제도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다수의 연구실무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연구방향 및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핀테크 실무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정책 브리핑 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화, 핀테크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 확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였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로 급변한 국제 업무환경에 대응하여 웨비나 형식의 다자간 기술지원 행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식공유 사업에 앞장섰다. 3월에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IADI 회원기구 대표 및 실무진 약 160명이 참석하여 예보기구가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6월에는 핀테크를 주제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IADI 아태지역위원회 예보기구 기관장을 비롯하여 총 16개 회원기구로부터 약 230명이 참가하여 핀테크 발전에 발맞춰 변화하는 예보기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지원 행사 개최 빈도가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2021년에도 디지털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예보제도 발전을 목적으로 공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특히, 공사가 개최한 웨비나는 금융 환경 변화의 핵심인 기후변화 및 핀테크가 예보기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예보기구의 대응 등을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예보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나. 이사 당선을 통한 IADI 내 공사 역할 공고화 및 리더십 제고

공사 사장은 2021년 12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IADI 연차총회에서 이사로 선출(임기 3년)되었다. 이사회(Executive Council Committee)는 IADI의 전략,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는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IADI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이번 이사 선출에 따라 공사는 2002년 IADI 창립 이후 약 20년 간 지속적으로 이사직을 유지하며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그간 공사가 IADI 내에서 주도적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IADI 발전에 기여한 점과 공사의 높은 위상 및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제 설정자로서 국제 예금보험·정리제도 현안에 대한 공사의 발언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향후 이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예보제도의 선진화와 예보기구 간 국제적 협력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다. FIGS 의장직 및 정보공유 워킹그룹장직 수행 등 공사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nternational Forum of Insurance Guarantee Schemes, FIGS)」은 전 세계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협의체로서, 현재 25개 정회원 및 4개 준회원 등 총 29개 회원기구가 활동 중인 국제포럼이다.

공사는 FIGS가 설립된 2013년부터 해당 기구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해왔으며, 2019년말 의장단(Management Committee)으로 선출되어 1년 간 제1부의장직 수행 후 2020년 제7차 연차총회에서 의장직에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공사는 FIGS 의장기구로서 제8차 연차총회 및 분기별 의장단 정례 화상회의를 주재하여 FIGS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기획·총괄하는 등 공사의 글로벌 리더십을 적극 발휘하였다.

먼저, 공사는 현재 협의체 형태의 국제포럼으로 운영되고 있는 FIGS의 정식 국제기구 출범을 도모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수립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전체 회원기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IGS의 조직 운영 및 발전방향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는 정보공유 활성화, 인지도 제고, 회원규모 증대로 이루어진 FIGS의 세 가지 전략목표를 재정비한 후,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공사는 FIGS의 정보공유 워킹그룹(Information Sharing Working Group) 그룹장직을 맡아 회원기구별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설문조사를 기획·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FIGS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회원기구 간 정보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사 주도로 FIGS 연구소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원기구의 관심 주제인 부실 보험사 정리 관련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역할, 가상 위기대응 훈련 및 위기관리, 전세계 주요 보험사 부실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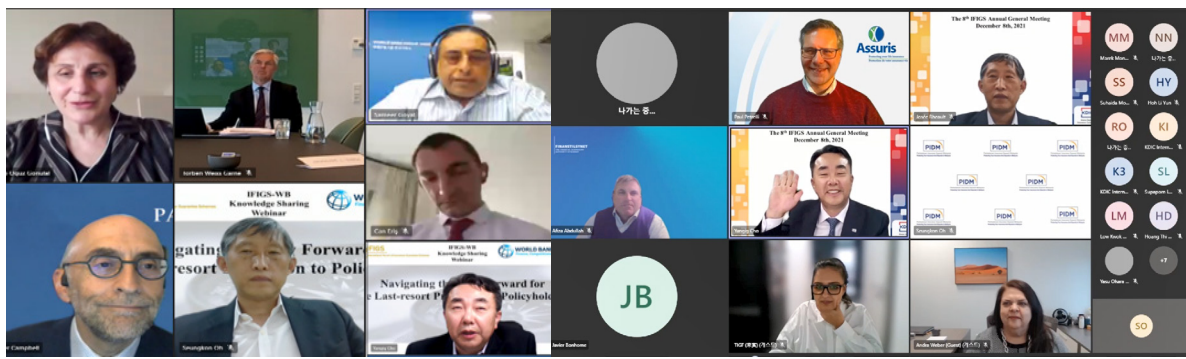
다음으로, 공사는 FIGS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역할 및 정리사례 소개’를 주제로 FIGS-세계은행(World Bank) 공동 웨비나를 6월에 개최하였다. FIGS·IADI·세계은행(World Bank) 회원기구 등 45개국 64기관 총 250여 명이 참석한 해당 행사에서 공사는 실제 부실 보험사 정리사례에 기반하여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게 FIGS를 성공적으로 홍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IADI 내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설립을 추진 중인 5개국(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을 신규 준회원 및 옵저버로 유치함으로써 FIGS의 회원규모를

한층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카자흐스탄 등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기운영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IFIGS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신규 정회원 가입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와 같이 공사는 2021년 IFIGS 의장직 및 정보공유 워킹그룹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IFIGS가 내부역량 강화 및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22년 공사는 IFIGS 제2부의장직을 맡아 의장단을 대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IFIGS의 주요 의사결정에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 III-3 IFIGS-World Bank 공동 개최 웨비나 및 제8차 IFIGS 연차총회



2.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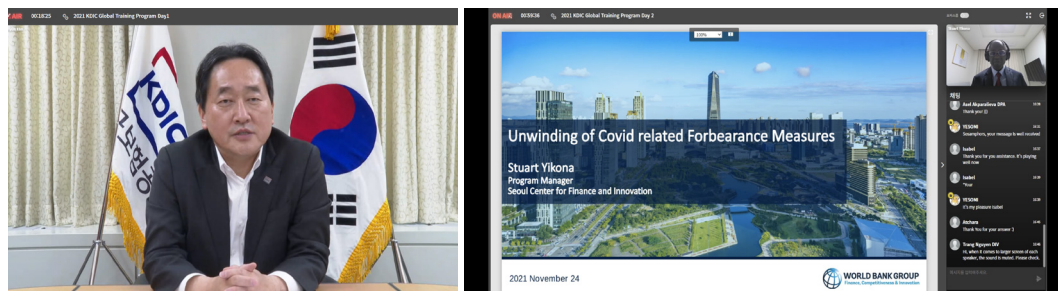
가. 글로벌 연수프로그램 「KDIC Global Training Program」 비대면 방식 실시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등에 대한 해외 각국의 지속적인 연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사는 2017년부터 정례화된 글로벌 예금보험제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예보기구 임직원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집합연수 방식으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예보기구 임직원들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2021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개최한 제7회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4개 대륙 총 22개국 예보기구 임직원 210여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비대면 방식 개최로 공간 및 인원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연수참가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영국, 호주, 팔레스타인 등 3개 국가의 예보기구 임직원이 신규로 연수에 참가하였다.

사진 III-4 2021년 제7회 「KDIC Global Training Program」 개최



2021년도 연수는 ‘리스크 관리 및 대국민 홍보(Risk Management & Public Awareness)’를 주제로 공사의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차등보험료 제도, 대국민 홍보 활동에 대한 강의부터 최신 글로벌 금융이슈를 다루는 초청강의까지 참가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국내기업의 웨비나,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에 공사 사옥 및 청계천 등 주변 환경을 구축하고 참가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마련하여, 메타버스 사옥 방문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의 흥미를 제고하였다.

기존 내방 연수 시 일과 후 진행하였던 문화체험활동의 경우 비대면 상황을 반영하여 Vlog 형식*의 가상 문화 체험(Virtual Excursion) 영상을 제작하고 상영함으로써 비대면 진행으로 자칫 저하될 수 있는 참가자들의 흥미를 제고하고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였다.

* Video+Blog합성어로 텍스트,이미지중심에서 탈피하여 일상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식

사진 III-5 메타버스 사옥 방문 인증이벤트 및 가상 문화체험 영상



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 강화

한국의 위기대응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에 대한 해외 예보기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사는 2010년부터 ‘예보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시작하여 맞춤형 연수, 세미나,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다.

2021년 10월에는 베트남 예금보험공사 및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예금보험기구를 대상으로 각각 비대면 연수를 실시하였다. 공사는 베트남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파산에 대한 비대면 연수를 실시하였다. 베트남 예금보험공사 의장 등 임직원 90여명이 참가한 동 연수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파산절차 및 업무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의장 등 전 직원 150여 명이 참가한 비대면 연수에서 공사는 금융회사 파산재단 관리·운영을 주제로 파산재단 보유자산 회수, 케이알앤씨(KR&C)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연수 실시를 위하여 주아세안대표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며 협업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는 향후에도 맞춤형 예보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다. MOU 체결을 통한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 확대

공사는 해외 예보기구와의 상호협력 증진과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목적으로 해외 예보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왔다.

2021년 12월말 기준 공사는 23개국 25개 기구와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러시아 예금보험원(DIA), 키르기스스탄 예금보호원(DPAKR), 우크라이나 예금보험기금(DGF) 및 팔레스타인 예금보험공사(PDIC)와 체결한 MOU를 갱신하였다.

공사는 향후에도 MOU 체결기구들과 활발한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4

기금 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이하 ‘상환대책’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1월 1일,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였다. 동 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 안정적 조성

가. 특별기여금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2021년에 총 2조 1,772억원의 특별기여금을 수납하였다.

표 IV-1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요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요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¹⁾

주 :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

표 IV-2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생 보	손 보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탁 ¹⁾	합 계
2003	4,775	156	889	185	21	222	-	6,247
2004	4,956	168	978	198	6	264	-	6,570
2005	4,872	145	1,069	219	5	319	-	6,628
2006	4,987	151	1,160	242	6	370	216	7,133
2007	5,027	156	1,265	278	7	430	116	7,280
2008	4,976	185	1,364	319	8	491	129	7,472
2009	5,965	169	1,430	352	10	593	137	8,656
2010	6,811	213	1,534	409	19	715	170	9,871
2011	7,789	227	1,650	487	12	718	205	11,087
2012	8,518	226	1,760	592	10	521	228	11,855
2013	8,973	202	2,297	707	9	394	248	12,830
2014	9,590	200	2,386	790	7	323	263	13,560
2015	9,786	179	2,617	896	7	308	275	14,068
2016	10,664	240	2,835	1,001	8	348	299	15,394
2017	11,344	272	3,068	1,103	10	403	332	16,531
2018	12,011	300	3,133	1,197	11	469	-	17,121
2019	12,566	307	3,228	1,281	12	539	-	17,933
2020	14,100	305	3,384	1,361	14	585	-	19,748
2021	15,681	538	3,436	1,449	17	651	-	21,772
합 계	163,389	4,340	39,482	13,063	199	8,662	2,617	231,753

주 : 1) 신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총 52조 3,064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599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말 예보채 잔액 80조 9,744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는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라 한다)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특별기여금 및 기타 회수 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표 IV-3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보채 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1998	210,150	-	210,150
1999	224,849	-	434,999
2000	89,407	-	524,406
2001	310,593	14,640	820,359
2002	36,600	47,215	809,744
2003	-	97,371	712,373
2004	-	166,227	546,146
2005	-	180,904	365,242
2006	-	190,636	174,606
2007	-	60,672	113,933
2008	-	113,933	-
합 계	871,599 ¹⁾	871,599	-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상환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만기도래한 채권 원리금은 회수자금 및 특별기여금 등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환기금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 한편, 2021년 중 만기 도래한 상환기금채 잔액 1조 4,80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21년말 현재 상환대책에 따른 기금부채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기금설치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 1.25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다.

* 상환기금 청산(2027년말)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2020년 12월)

표 IV-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04	65,000	-	65,000
2005	74,400	-	139,400
2006	28,705	3,155	164,950
2007	27,200	450	191,700
2008	88,000	100	279,600
2009	58,600	65,000	273,200
2010	68,100	74,400	266,900
2011	7,800	37,300	237,400
2012	47,700	56,900	228,200
2013	72,700	75,700	225,200
2014	10,100	50,100	185,200
2015	8,800	46,900	147,100
2016	19,700	41,300	125,500
2017	15,200	43,900	96,800
2018	14,800	53,100	58,500
2019	-	19,700	38,800
2020	-	24,000	14,800
2021	-	14,800	-
합 계	606,805	606,805	

마.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융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 개발은행(ADB) 및 부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하였다.

표 IV-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금 액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회사	차 관 ¹⁾	재정융자 특별회계	소 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2010	-	-	-	-	1,168	3,504
2011	-	-	-	-	1,168	2,336
2012	-	-	-	-	1,168	1,168
2013	-	-	-	-	1,168	-
합 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83,251	-

주 : 1) IBRD, ADB 차관자금 등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로 기존 차입금 잔액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전액은 2003년 1월 1일자로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한 신규 차입은 없고, 2013년에 세계은행(IBRD) 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마지막으로 상환하여 2021년말 현재 차입금은 없다.

2. 지원

가. 개관

공사는 상환기금을 통해 예금보험금의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2021년 중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021년 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부보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0조 8,946억원이다. 이 중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으로 30조 3,124억원(27.3%),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로 50조 7,937억원(45.8%),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으로 18조 6,117억원(16.8%),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1조 1,767억원(10.1%)이 지원되었다.

표 IV-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2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¹⁾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¹⁾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81,064	-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21,239	-	113	125,264
보 험	159,198	31,192	3,495	-	-	193,885
종합금융	26,931	7,431	-	-	182,718	217,080
저축은행	1	4,161	-	5,969	72,892	83,023
신 협	-	-	-	-	47,402	47,402
합 계	507,937	186,117	105,799	5,969	303,124	1,108,946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지원 포함

나. 금융권역별 지원내역

(1) 은행

공사는 상환기금을 통해 2021년 말까지 총 20개의 은행을 출자·출연·자산매입의 형태로 구조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총 44조 2,292억원을 지원하였다. 다만, 2021년 중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 금융투자회사

2021년 말까지 총 7개의 증권사를 출자·출연·자산매입 등으로 구조조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총 12조 5,264억원을 지원하였다. 다만, 2021년 중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3) 보험회사

2021년 말까지 상환기금을 통해 총 19조 3,885억원을 지원하여 총 21개의 보험회사를 출자·출연·자산매입으로 구조조정하였다. 다만, 2021년 중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4) 종합금융회사

2021년 말까지 총 21조 7,080억원을 투입하여 총 29개의 종합금융회사를 출자·출연·예금보험금 지급의 형태로 구조조정하였다. 다만, 2021년 중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5) 저축은행

2021년 말까지 총 92개의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금 지급·출연 등으로 구조조정하였으며, 상환기금을 통해 총 8조 3,023억원을 지원하였다. 다만, 2021년 중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6) 신용협동조합

공사는 2021년 말까지 총 4조 7,402억원을 지원하여 총 348개의 신용협동조합을 구조조정하였다. 다만, 2021년 중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 개관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부보금융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보금융회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예금대지급·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한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공사가 직접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보금융회사에 대출한 자금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공사는 2021년에 1조 2,923억원을 회수하고, 2021년 말까지 총 61조 4,388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V-7 상환기금의 회수(2021년)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회수	파산배당금 ¹⁾	합 계
은 행	11,051	-	-	-	-	11,051
금융투자	-	-	1	-	-	1
보 험	1,013	0	-	-	-	1,013
종합금융	382	-	-	-	76	109
저축은행	-	-	-	-	400	400
신 협	-	-	-	-	-	-
합 계	12,447	0	1	-	476	12,923

주 : 1)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포함(21년도 이전에 회수한 금액 포함)

표 IV-8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회수	파산배당금 ¹⁾	합 계
은 행	230,759	702	66,667	-	18,472	316,600
금융투자	12,121	3,375	18,014	-	78	33,588
보 험	66,673	888	2,453	-	4,310	74,324
종합금융	3,121	59	-	-	93,391	96,571
저축은행	-	343	-	5,969	52,760	59,072
신 협	-	4	-	-	34,229	34,233
합 계	312,674	5,371	87,134	5,969	203,240	614,388

주 : 1)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

(1) 은행

공사는 2021년 중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11.33%를 매각하여 1조 108억원(은행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회수하였으며, 배당금 593억원(은행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수령하였다. 또한, 수협은행으로부터 2017년도에 최초로 공적자금을 회수(127억원)한 후, 2021년도에 350억원을 회수하였다.

(2) 보험회사

공사는 2021년 중 배당으로 한화생명보험 26억원, 서울보증보험 987억원을 수령하였다.

(3) 종합금융회사

공사는 2021년 중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11.3%를 매각하여 361억원(종금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회수하였으며, 배당금 21억원(종금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수령하였다.

다. 파산배당금

2021년 중 공사는 케이알앤씨가 종합금융회사와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금 476억원을 수령하였다.

표 IV-9 금융권역별 파산배당금 회수¹⁾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파산재단 수 ²⁾	회 수 액	
		2021년	1999년 ~ 2021년 총회수액
은 행	5	-	18,472
금융투자	4	-	78
보 험	10	-	4,310
종합금융	22	76	93,391
저축은행	75	400	52,760
신 협	325	-	34,229
합 계	441	476	203,240

주 : 1) 공사가 파산재단(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및 케이알앤씨(구 한아름증권·금고를 통해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로부터 수령한 파산배당 회수금액

2) 상환기금과 관련된 파산재단 기준

라. 대출금 회수 등

공사는 2021년 중 현대생명보험 계약이전 관련 출연금 정산 등으로 0.1억원을 회수하였다.

제2절

예금보험기금

1. 안정적 조성

가. 예금보험료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표 IV-10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8/10,000	15/10,000 ¹⁾	15/10,000	15/10,000	40/10,000 ²⁾

주 : 1) 2007년부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예금 보험료율 30% 인하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예금보험료율 변경(기존 35/10,000)

표 IV-11 연도별·계정별 예금보험료 수입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생 보	손 보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⁴⁾
2003 ¹⁾	4,775	312	2,580	535	73	668	-	8,942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	9,509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	11,066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생 보	손 보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⁴⁾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	12,446
2010	5,451	284	2,609	698	34	2,524	-	11,600
2011	4,795	283	2,362	700	18	2,332	1,742	12,231
2012 ⁵⁾	3,748	2	-14 ³⁾	100	8	1,345	5,816	11,004
2013 ⁵⁾	3,948	-	221	488	8	253	6,672	11,590
2014 ⁵⁾	4,197	-	811	445	6	256	6,158	11,872
2015 ⁵⁾	4,369	-	1,280	710	4	64	7,120	13,547
2016 ⁵⁾	4,675	-	1,857	806	7	296	6,823	14,463
2017 ⁵⁾	5,005	-	2,349	883	9	286	8,242	16,774
2018 ⁵⁾	5,250	-	2,466	973	9	139	9,102	17,940
2019 ⁵⁾	5,342	39	2,426	1,018	10	248	9,360	18,443
2020 ⁵⁾	5,942	0	2,109	1,030	11	216	10,259	19,567
2021 ⁵⁾	6,641	165	914	1,093	14	253	11,267	20,347
합 계	13,725	4,233	61,010	20,813	407	31,006	82,564	253,194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설치(2026년 말까지 존치 예정)

3) 2012년 이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에 대한 환급

4)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5)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2012년(금투·생보 면제, 손보 15% 감액), 2013년(금투 면제, 생보 45% 감액, 손보 7% 감액), 2014년(금투 면제, 생보 38% 감액, 손보 1% 감액), 2015년(금투 면제, 생보 17% 감액), 2016년(금투 면제, 생보 5% 감액), 2017년(금투 면제, 생보 5% 감액), 2018년(금투 80% 감액, 생보 6% 감액), 2019년(금투 면제, 생보 16% 감액), 2020년(금투 49% 감액, 생보 64% 감액), 2021년(생보 70% 감액) 예금보험료 감면 조치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2011년 3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별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다만,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공사는 특별계정을 포함하여 2021년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총 2조 347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였다.

나.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2016년 6월 이전에는 부보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2016년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 때 최저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2002년까지 수납한 출액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2003년부터 수납한 출액은 현행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표 IV-12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단위: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생 보	손 보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합 계 ²⁾
2003 ¹⁾	0.3	-	6.5	2.0	-	-	-	8.8
2004	3.4	2.0	6.0	2.0	-	-	-	13.4
2005	2.2	2.0	-	-	-	12.5	-	16.7
2006	3.8	8.0	-	2.0	-	13.4	-	27.2
2007	-	-	-	-	-	-	-	-
2008	1.6	110.1	-	-	-	5.6	-	117.2
2009	7.7	43.1	4.2	3.4	0.2	7.8	-	66.3
2010	0.8	5.8	9.0	0.3	-	-	-	15.9
2011	0.3	-	-	-	-	12.0	-	12.3
2012	5.8	1.3	50.0	8.0	-	24.0	-	89.1
2013	0.8	21.7	3.2	3.1	0.0	49.8	-	78.6
2014	-	0.6	-	-	-	90.6	-	91.2
2015	-	-	-	-	-	-	-	-
2016	8.8	5.3	-	6.0	-	-	-	20.1
2017	20.3	0.6	-	0.3	-	-	-	21.2
2018	-	2.9	3.0	-	-	-	-	5.9
2019	-	-	-	-	-	-	-	-
2020	-	△3	-	2	-	-	-	△1
2021	3	2	-	-	-	-	-	5
합 계	58.2	202.5	81.9	29.1	0.2	215.6	-	587.8

주 : 1) 2002년까지의 출액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제24조의4 및 제26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정부보증 없이 공사 자체 신용으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하여 특별계정채권을 발행하였다. 2014년 이후에는 만기도래 특별계정채권의 상환(차환)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원자금 회수 및 예금보험료 등으로 채권 잔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2021년 중에는 2조 4,700억원의 특별계정채권을 상환하고, 1조 1,500억원을 차환발행하여, 2021년말 기준 특별계정채권 발행 잔액은 7조 5,400억원이다.

한편, 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투자자 관심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 기금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3월 특별계정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채권 부합 여부에 대한 외부 인증 획득에 성공하였으며, 2020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2조 7,800억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였다.

표 IV-13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11	12,000	-	12,000
2012	200,400	-	212,400
2013	20,900	-	233,300
2014	-	12,000	221,300
2015	56,400	98,800	178,900
2016	26,300	42,200	163,000
2017	37,300	72,900	127,400
2018	14,500	26,500	115,400
2019	11,400	26,300	100,500
2020	22,300	34,200	88,600
2021	11,500	24,700	75,400
합 계	413,000	337,600	75,400

또한, 공사는 조달수단 다변화 및 조달비용 절감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제26조의2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7년 7월에 전자단기사채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일시적 자금수지 불일치 시 활용중인 부보금융회사 차입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중에 3조 2,830억원의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연말까지 3조 2,800억원을 상환하였다.

표 IV-14 단기사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17	7,500	7,500	-
2018	14,800	14,800	-
2019	33,400	33,400	-
2020	37,300	37,300	-
2021	32,830	32,800	30
합 계	125,830	125,800	30

라.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특별계정 설치 이전에는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부보금융회사로부터 2003년과 2004년에 1,664억원을 차입하였고,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007년에 2,314억원을 차입하였다.

표 IV-15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계정별	연 도	차입금액 ¹⁾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회사	한국은행 등	정 부	소 계		
저축 은행	2007	2,314	-	-	2,314	-	2,314
	2008	-	-	-	-	2,314	-
	소계	2,314	-	-	2,314	2,314	-
특별 계정	2011	104,199	-	-	104,199	12,000	92,199
	2012	141,932	-	1,000	142,932	222,625	12,506
	2013	19,365	-	1,000	20,365	30,871	2,000
	2014	960	-	500	1,460	960	2,500
	2015	67,339	-	-	67,339	67,339	2,500
	2016	22,988	-	-	22,988	22,988	2,500
	2017	42,707	-	-	42,707	39,907	5,300
	2018	16,376	-	-	16,376	19,176	2,500
	2019	11,877	-	-	11,877	11,877	2,500
	2020	12,744	-	-	12,744	12,744	2,500
	2021	9,898	-	-	9,898	9,752	2,646
	소계	450,385	-	-	452,885	450,239	2,646
합 계		452,699	-	2,500	455,199	452,553	2,64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이 중 신용협동조합계정의 외부 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20억원을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잔액을 모두 이관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부 차입금이 없고, 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중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였다.

한편,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로부터 2021년 말까지 총 45조 385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특별계정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무이자(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2,500억원 융자받았다.

2021년 말까지 특별계정 차입금 45조 2,885억원 중 지원자금회수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45조 239억원을 상환하여 2021년말 차입금 잔액은 2,646억이다.

2. 적시 지원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지출한다.

2010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저축은행 등 16개 부실저축은행에 저축은행계정을 통해 총 4조 5,2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에는 특별계정을 통해 총 27조 1,71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에 1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정을 통해 22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V-16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계 정 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226	-	-	-	22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3,655	229,873	36,278	1,136	775	271,717
합 계	4,866	254,642	50,690	6,027	994	317,219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금융권역별 지원내역

(1) 은행

2021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 금융투자회사

2021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3) 보험회사

2021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보험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4) 저축은행(특별계정)

공사는 2011년부터 영업정지된 31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전이 확정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순자산부족분 출연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자산을 케이알앤씨(KR&C)로 계약 이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2021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보험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 영업정지기준 연도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17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보험금 지급 (가치금금 포함)	출연, 대출 등	합 계
삼화 등 16개 저축은행	2011년	32,796	127,034	159,830
솔로몬 등 8개 저축은행	2012년	3,453	86,706	90,159
서울 등 5개 저축은행	2013년	29	18,185	18,214
해솔저축은행	2014년	-	2,994	2,994
골든브릿지저축은행	2015년	-	520	520
합 계		36,278	235,439	271,717

3.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부보금융회사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회수,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른 파산배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 등의 회수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21년에 손해보험계정 25억원, 저축은행계정은 14억원, 특별계정은 3,374억원을 회수하였고, 2003년부터 2021년 말까지 누적으로 총 15조 3,099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V-18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21년 및 누계)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¹⁾	개산지급금 회수	합 계 ²⁾
2021년	손해보험	-	25	-	-	-	25
	저축은행	-	10	-	4	-	14
	특별계정	-	2,910	463	2	-	3,374
	합 계	-	2,944	463	6	-	3,413
2003~2021년말 누계		5,948	116,016	24,011	6,130	994	153,099

주 : 1)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대출원금 및 이자의 회수

2)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21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3,407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계실적으로 총 14조 1,021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공사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케이알앤씨(KR&C) 등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6,027억원을 대출하여 총 6,130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V-19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파산배당금 회수액		대출금 회수액	
	2021년 중	2003~2021년말 누계	2021년 중	2003~2021년말 누계
손해보험	25	147	-	-
저축은행 (특별계정 포함)	3,382	140,875	6	6,130
합 계	3,407	141,021	6	6,130

다.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2003년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한 이후 2006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를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2007년 10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가 시행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2009년 2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생명보험계정과 손해보험계정을 분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은 종금계정은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보험료를 인하,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6개 계정 외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일부 및 회수자금 등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달하여 2011년 이후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매년 「예금자보호법」제24조의4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하고,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 및 해당 연도 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2012년 7월 및 2013년 11월, 2014년 10월에는 특별계정의 재원확충 및 조성재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로부터 무이자 조건으로 총 2,500억원 차입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공사는 특별계정을 통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을 2011년 12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채권 발행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2년 8월 공사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공사는 「예금보험료 감면 시스템」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고, 감액률과 기금적립 수준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예금보험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명확한 감면기준을 금융업권에 제시하여 공사 업무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료 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대되어 기금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금보험기금의 운용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19 번이 출현으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발생하였다. 인플레이션 조짐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은 유동성 축소를 시작하였는데, 미국 연준은 2021년 11월 테이퍼링 시작을 선언하였고 한국은행도 이에 앞서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이에 공사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 동향 및 시장금리 전망 등을 토대로 탄력적인 자산배분과 채권 듀레이션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위기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미국 국채를 운용자산에 편입하는 한편,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5

리스크 관리

- 제1절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노력
-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성공적 운영
-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관리

제1절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노력

1. 리스크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가. 리스크 감시 기반 강화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감시모형을 활용하여 부보금융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재무상태 및 보험사고 위험 등을 예측하고 있다. 동 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체결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입수하는 부보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보험사고 위험요인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유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적시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2018년에 구축한 「리스크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리스크 분석 자동화 및 디지털 기반의 리스크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플랫폼의 개선 필요사항을 수시로 반영하고 사용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리스크 분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리스크 감시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 2021년에는 직제개편을 통해 리스크 감시 업무와 차등평가 업무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련 내규 개정 및 업무체계 검토·개편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리스크 감시 업무수행 원칙에 차등평가 업무와의 연계성을 명시적으로 내규에 규정하였으며, 상시감시 단계 결정 시 차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필요시 감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사의 고유업무인 차등평가와 리스크 감시 업무 간 시너지 및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한편, 개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리스크감시모형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외부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2021년 상반기에 기존 금융지주 리스크감시모형 개선을 완료하고, 기존 공사 리스크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모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후 시범운행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모형 평가를 시작하였다.

또한, 공사는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리스크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상치적출, 재무분석 등을 수행하는 「리스크프로파일링시스템(RPS)」 등 리스크 분석시스템에 대한 사내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초청 상시감시포럼 실시를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업권 이해도를 제고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공사의 리스크 감시 업무를 평가받고,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보험사고 위험관리 역량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리스크 감시 업무에 식견이 풍부한 학계 교수, 연구위원 및 시장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평가 결과를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리스크 감시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상시감시 기능 활성화

공사는 경영·영업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변동 등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등 리스크 상시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각 상시감시 업권별로 핵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리스크 분석기법 및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사의 선제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재확산·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공사는 선제적 리스크 감시 강화를 위해 ‘일일 금융시장 동향’ 외에도 단기자금시장 경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간 단기금융시장 동향’,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적시에 추가 보고하는 ‘금융현장정보’ 등을 통해 주식·외환·채권시장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및 기준금리 인상 배경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한편, 보험업권의 경우 新제도(IFRS17, K-ICS) 도입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 및 보험수익 인식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예금보험제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이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상시감시포럼을 개최하는 등 상시감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중점감시 대상 보험사에 대해서는 중점감시 Review 작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진·실무진 면담을 통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을 선별하여 밀착 감시를 실시하고, 공동검사 및 경영진 면담 등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감축에 기여하는 등 부실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인신용대출 현황 및 다중채무자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였다.

출범 5년차를 맞이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직접 은행을 방문해 실무진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의 위기대응전략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와 관련된 공사의 시각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공사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금융의 디지털전환 확산에 따른 잠재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자 금융산업 경쟁구도 변화 및 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신사업이 도입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3. 조사 및 공동검사 실효성 강화

가. 리스크 현장 확인

공사는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및 기금 손실 유발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단독조사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현장점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역지침·원격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탄력적 검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총 12회 실시하여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 및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 등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기금손실 예방에 중점을 둔 조사·공동검사 실시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조사·공동검사에서 부보금융회사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보다는 기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잠재 기금손실위험을 확인하고 부보금융회사에 리스크 감축을 권고하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를 지향함으로써 차별화된 관점에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감시에 관련한 공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

은행업권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실가능성으로 인한 자산건전성·손실흡수능력 악화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제도와 더불어 기업·가계 여신관리, 내부통제 부문 등에서의 미흡한 점들에 대해 경영참고사항을 부여하였다. 또한, 기업·가계대출에 대한 전이율분석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시 BIS자기자본비율을 추정하는 등 미래 부실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금투업권의 경우 단기조달에 의존하는 증권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 중심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2020년 3월 ELS 마진콜 사태 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주요 증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유동성 비율 산정 오류 등 문제점을 적발하고, 검증·보고 절차 개선 등 유동성 위험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

보험업권의 경우 공동검사에서 대체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투자자산의 현금흐름 악화 등 손상징후 발생을 실질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선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 최초로 보험사 단독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금소요액 및 최소비용 정리 방식 추정 등 정리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하여 기금손실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중 금융플랫폼 연계 대출을 급격히 확대하여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다중채무자 등의 취약차주 취급현황과 자산건전성 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또한, 장기신용위험에 노출된 사모사채에 대해 신용위험 축소 및 위험관리조직의 심사 역할 강화 등 경영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에 전달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공사는 리스크분석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기금손실 유발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경영정상화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부실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4. 시장친화적 리스크 관리 강화

가. 시장전문가들과의 교류 확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금융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분석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조정실장을 초청하여 리스크이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리스크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상시 개최하는 등 시장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장참가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유도하고자, 2004년부터 계간지「금융리스크리뷰」를 발간하고 있다.

「금융리스크리뷰」는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이슈사항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 주요부처 및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2021년도에는 금융환경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변화와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고를 게재함으로써 금융리스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표 V-1 2021년「금융리스크리뷰」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2021년 봄호	•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지속가능금융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한 소고
2021년 여름호	•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 행정부와 연준의 정책 대응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저축은행 개인신용시장의 하반기 리스크요인 점검과 시사점
2021년 가을호	• 코로나19와 스트레스 테스트 • 기후관련 위험 확대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현황 및 다중채무자의 취약성 평가를 통한 리스크요인 분석
2021년 겨울호	• <특집> 2022년도 업권별 전망과 리스크 이슈 • 핀테크, 빅테크와 금융산업 : 전망과 과제

나. 부보금융회사와의 교류 강화

공사는 조사 및 공동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회사별 특성을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2021년 12월 저축은행 임직원, 정책담당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9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에서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였다.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성공적 운영

1.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의의 및 개요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제30조제1항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업계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 평가모형 개발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전체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평가가 실시되었다.

차등평가는 평가의 기대효과, 예금보험료 납부규모, 평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크게 (1)차등모형평가, (2)특정 보험료율 적용 평가, (3)등급의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 이 중 차등모형평가는 재무평가부문(90점)과 비재무평가부문(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및 (재무)보완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비재무평가부문은 위험관리·내부통제, 부실예방조치 부과 여부 및 (비재무)보완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 차등평가의 구분

구 분	대 상	평 가 방 법	적 용 요 율
차등모형 평가	특정보험료율 및 등급의 적용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회사	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 (A+, A, B, C+, C)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요율 적용
특정 보험료율 적용 평가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소액(일천만원이하)인 부보금융회사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규정에서 미리 정한 요율 적용
등급의 적용 평가	부실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중인 부보금융회사 등		규정에서 미리 정한 할증 요율 적용(+10%)

또한,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에 관한 부보금융회사의 수용성 제고,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확보, 평가모형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V-3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금융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구 분	'14~'15	'16	'17~'18	'19~'20	'21	구 분	'22~
1등급	-5%	-5%	-5%	-7%	-10%	A+등급	-10%
2등급	0%	0%	0%	0%	0%	A 등급	-7%
						B 등급	0%
3등급	+1%	+2.5%	+5%	+7%	+10%	C+등급	+7%
						C 등급	+10%

* 은행(0.08%), 보험·금융투자(0.15%), 상호저축은행(0.40%)

2. 정확하고 공정한 차등평가 실시로 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공사는 2020 사업연도 중 286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차등평가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여 전체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설명회 영상을 제작하여 공사와 금융회사 간 쌍방향 비대면 채널인 「KDIC-Connect」를 통해 배포하고, 「차등평가산정시스템(RBPS)」을 확충하여 사용자 편의 및 업권과의 소통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부보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건전경영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차등평가 결과 종합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가 언제라도 차등평가 결과를 예측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Tool을 제공하였다.

또한, 차등폭 확대(7%→10%) 등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차등평가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등평가 사후점검 기법을 개발하여 48건의 평가 오류를 시정하고 예금보험료를 추가 수납하였다.

이외에도, 2021년 12월 29일에 차등평가 개선도, 잠재리스크 관리 수준 등이 우수한 10개 부보금융회사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대내외에 공유함으로써,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경계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안착 수준, 제도운영의 적절성 및 도입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종합인식도 점수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경영진 관심도 및 건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묻는 차등평가제도의 유용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등 차등평가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핵심 리스크 감축 노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차등보험료율제 개선·발전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 일부 업권에서 나타난 등급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바젤 III 규제 도입 등 금융감독 관리지표 변화 등을 차등평가모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6년에 평가모형을 개편하였다.

2020년에는 차등보험료율제가 금융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실질리스크를 잘 변별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인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민간전문가, 업권 등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선방안에 평가등급 세분화(3→5등급), 평가지표 교체 및 배점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2021년에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차등보험료율제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개편된 차등보험료율제는 2022년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3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관리

1. MOU 체결 및 점검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였고, 해당 금융회사에 재무비율 목표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하여 이를 분기별로 점검해왔다. 2002년 4월 이후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회사를 매각 또는 합병시킴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회사와의 MOU를 해지하였으며, 2016년 12월 1일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분리된 신설 수협은행과 MOU를 신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말 현재 수협은행 및 서울보증보험 2개 금융회사에 대해 MOU 관리를 하고 있다.

표 V-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2021년 12월말 기준)

금융회사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수협은행 (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2001. 4. 25 (2016. 12. 1 ^h)	2005. 3. 23 2007. 3. 28 2009. 3. 30 2011. 3. 30 2012. 3. 29 2013. 4. 24 2014. 3. 25 2015. 3. 25 2016. 3. 25 2017. 3. 22 2018. 3. 28 2019. 4. 24 2020. 3. 25 2021. 6. 9	2003. 2. 12 2003. 7. 9 2005. 12. 21 2007. 12. 26 2010. 3. 23	-

금융회사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서울보증보험	2000. 4.12 ²⁾ (2001. 6. 9)	2005. 6. 22 2007. 7. 18 2009. 6. 10 2011. 6. 8 2012. 6. 12 2013. 6. 26 2014. 3. 25 2015. 3. 25 2016. 3. 25 2017. 3. 22 2018. 3. 28 2019. 4. 24 2020. 3. 25 2021. 4. 21	2002. 7. 10 2006. 6. 21 2007. 12. 26	-
우리은행 (구 한빛은행)	1999. 1.22 ³⁾ (2000.12.30)	2003. 1. 22 2005. 3. 23 2007. 3. 28 2009. 3. 30 2011. 3. 30 2012. 3. 29 2013. 4. 24 2014. 3. 25 2015. 3. 25 2016. 3. 25	2004. 9. 22 2007. 12. 26 2010. 3. 23	2016. 12. 16 ³⁾ (과점주주 매각)
제주은행	2000.12.30	-	-	2002. 4. 29 (신한지주 앞 매각)
서울은행	2000.12.30	-	2001. 6. 29	2002. 12. 1 (하나은행 앞 매각)
조흥은행	1999.11.12 ²⁾ (2002. 1.31)	-	-	2003. 8. 19 (신한지주 앞 매각)
대투증권	2000. 9.25 ²⁾ (2002. 2.20)	-	-	2005. 5. 31 (하나은행 앞 매각)
한투증권	2000. 9.25 ²⁾ (2002. 2.20)	-	-	2005. 3. 31 (구 동원지주 앞 매각)
대한생명	2000. 4.12 ²⁾ (2001. 9. 5)	-	-	2002. 12. 12 (한화컨소시움 앞 매각)
우리카드 (구 평화은행)	2000. 6. 7 ²⁾ (2000.12.30)	-	2002. 3. 25	2004. 3. 31 (우리은행과 합병)

금융회사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우리종금	2000. 12. 9	-	2001. 6. 29	2003. 8. 1 (우리은행과 합병)
우리금융지주	2001. 7. 2	-	2004. 9. 22 2007. 12. 26	2014. 11. 3 (우리은행과 합병)
광주은행	2000. 12. 30	-	2010. 3. 23 2004. 9. 22 2007. 12. 26	2014. 10. 10 (JB 금융지주 앞 매각)
경남은행	2000. 12. 30	-	2010. 3. 23 2004. 9. 22 2007. 12. 26 2010. 3. 23	2014. 10. 10 (BS 금융지주 앞 매각)

주 : 1)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2016.12.1 수협중앙회에서 분리·신설된 수협은행과 MOU 신규 체결
 2) 해당 금융회사, 공사,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3자간 약정 체결
 3)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2016.8.2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내용 및 MOU 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우리은행 간 체결된 MOU 해지

공사는 수협은행의 경우 2016년 신경분리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5개년 실적을 기초로 목표를 부여하던 방식을 경쟁은행인 지방은행의 전년도 실적 평균을 기초로 해당년도의 목표로 부여하는 ‘벤치마크’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중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의 2020년도 4/4분기(연간)부터 2021년도 3/4분기까지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수협은행은 2020년도(연간) MOU 재무비율 중 총자산순이익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사는 기관에 대해서 기관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임원에 대하여 주의(상당) 조치를 취하였다. 2021년도 수협은행은 3/4분기까지 MOU 목표를 달성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도 4/4분기(연간)부터 2021년도 3/4분기까지 MOU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의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사는 MOU 이행실적 점검 시 MOU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 이외에도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주의환기 내용을 MOU 점검결과에 포함하여 통보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MOU 체결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사후적인 MOU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6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제1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성공적 운영
-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확대 노력
- 제3절 부실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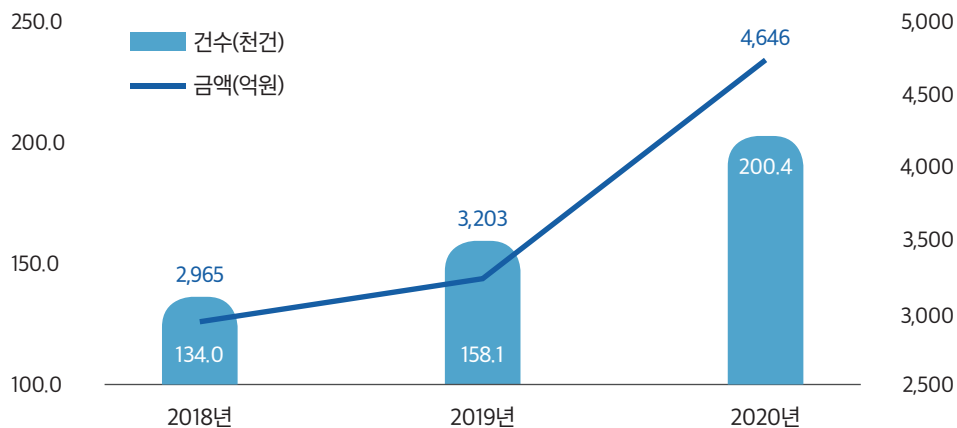
제1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성공적 운영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편의성이 증대되는 반면 착오송금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VI-1 연도별 착오송금 건수 및 금액



제도 도입 전에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 등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 송금액 1백만원 기준 소송기간 6개월이상, 소송비용 60만원 이상 소요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경과

공사는 착오송금 미반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부터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을 공사가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회수하는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새롭게 추진하였다.

동 반환지원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정부·금융회사의 출연으로 인한 정부 및 업계의 부담, 사전 지급 방식에 따른 자원 마련 부담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 되어 논의되던 중 제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공사는 제21대 국회에서 동 반환지원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기 위해 종전에 제기되었던 이슈를 포함한 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정부 등과 논의를 통해 재정·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 조항을 삭제하고, 사전 지급 방식 대신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이해도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나 금융권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설계 시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국민참여단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동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사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 국회 설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으로 제도 도입이 논의된 지 2년여만에 법제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노력

법 개정 후 제도 시행인 2021년 7월 6일까지 약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는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적용대상회사의 범위 및 매입계약 해제 기준 등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2021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하였으며, 매입대상, 매입금액, 매입절차 등 제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정(규정 6월 9일, 시행세칙 6월 25일)하였다.

또한, 4월 29일에 e-그린우편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취인에 대한 반환안내문 발송을 위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하였고, 6월 21일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시스템 사용을 통한 수취인의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으며, 이외에도 금융회사,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5일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신청인을 위해 공사 1층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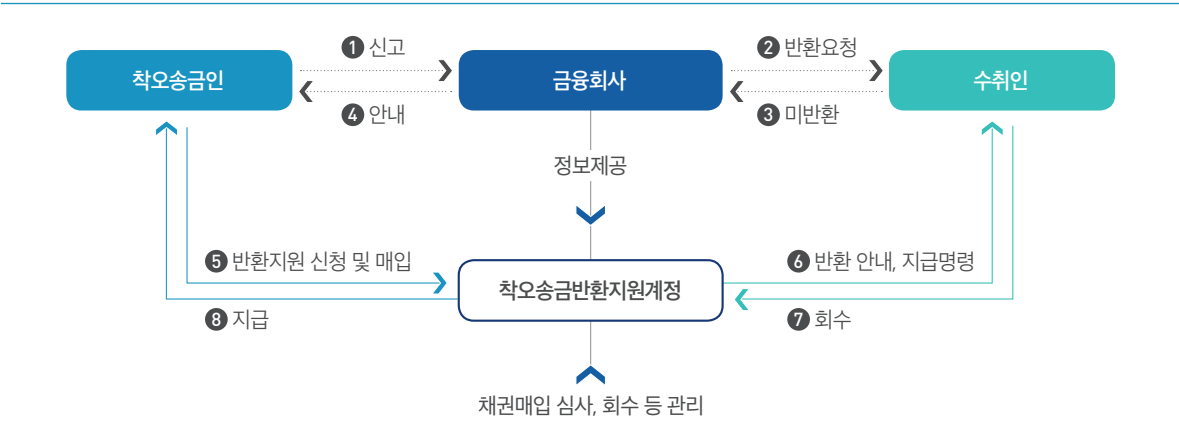
한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자료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TV, 신문 등 언론광고 및 SNS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금융회사 주요 점포에 제도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사진 VI-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담센터 개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림 VI-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사기 의심 신청 건이 접수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운영 성과

제도 시행 이후 2021년 12월 말까지 총 5,281건(77억원)의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접수되어,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이 96% 수준에 달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전보다 평균 회수기간을 약 4.5개월 이상 단축하고, 평균 회수비용을 약 55만원 이상 절감시켜(100만원 기준) 착오송금인이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VI-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전후 비교

구 분	도입 前	도입 後
반환방법	송금인 직접 소송	공사 제도 신청
회수기간	6개월 이상 소요	평균 41일 소요
회수비용 (100만원 기준)	소송 시 60만원	제도 이용 시 약 4만원

공사는 앞으로도 인터넷, 방문신청 이외에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보완하는 등 착오송금인의 이용 편의성 강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확대 노력

1. 사모운용사 등 검사 및 사후 처리 지원

가. 사모운용사 등 전수 점검 지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19년부터 불완전 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투자자 피해사례 증가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2020년 7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모펀드 등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원 내에 「사모펀드 전담 검사단」을 구성하여 공사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였다. 공사는 신속하게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조사·검사 유경험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6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부실 사모운용사 적시 발견 및 위험 전이 방지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수점검 조직이 유지되는 2023년까지 인력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다.

나. 사모운용사 경영관리 및 청산 업무 수행

2019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운용사의 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실화된 사모운용사를 관리하고 부실이 심화된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과거 저축은행 등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청·파산 경험을 살려 2020년 부실이 발생한 2개 사모운용사의 정리 업무(경영관리 1개사, 청산 1개사)를 맡아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다.

2020년 6월 금융위원회의 긴급 조치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1개 사모운용사(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경우, 공사는 공사 직원을 경영관리인으로 파견하여 고유재산 등을 관리하며 펀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다.

경영관리 기간 중 자체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부실책임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형사 판결 등을 바탕으로 부실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사무실 이전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등 투자자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11월 말에는 금융위원회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근거로 금융투자업 등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부과하면서 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공사는 청산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파견하여 재산목록 작성 및 확인, 채권신고공고 등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2020년 12월 청산 절차를 시작한 1개 사모운용사(라임자산운용(주))의 경우 공사는 청산인으로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회사 해산 및 잔여재산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실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재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채무초과를 사유로 하는 파산 절차로의 이행을 위해 파산신청 준비도 병행하였다.

공사는 2개 사모운용사의 원활한 경영관리 및 청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지원TF와 사모운용사간 공동 화상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향후 부실 사모운용사 추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모운용사 청산·경영관리 업무참고서를 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다. 공사는 사모운용사 경영관리 및 청산 업무를 지속 수행하며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을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표 VI-2 사모운용사 청산 업무 현황

금융회사명	부과 조치	조치 결정일
옵티머스자산운용(주)	인가 및 등록 취소	2021.11.24
라임자산운용(주)	등록 취소	2020.12.2

2.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 점검 및 개선

가. 표시·설명·확인업무 이행 점검 실시

모든 부보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표시·설명·확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 상품설명서, 홍보물,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여부와 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영업점마다 예금보험관계 안내자료(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거치대)와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는 제도
-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 표시제도만으로는 일부 취약계층 등이 예금보험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2011년 저축은행 및 2013년 동양증권 부실사태 당시 채권·기업어음 투자자 등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이를 예방하고자 금융상품 판매시마다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고객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
- 예금보험관계 확인제도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예금자보호여부와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

먼저, 공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6개 업권의 12,300여개 영업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여부를 고려하여 777개 영업점을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을 통해 부보금융회사 직원들의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육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는 최근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부보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대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표시·설명·확인제도 개선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업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 9월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먼저, 2022년 3월부터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안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 및 비보호 금융상품의 투자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금융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로고 이외에 비보호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호로고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IT기기를 활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 영업점 내에 비치하는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및 안내자료(포스터, 리플렛 등)를 태블릿PC 등에 전자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비대면 금융환경에서도 예금보험제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예금자보호제도 비대면·온라인 홍보 강화

2021년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온라인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영상 콘텐츠, 카카오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TV 방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공사 유튜브의 정보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착오송금·금투상품 안내·예보제도 안내 등 대국민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사의 주요 업무 관련 홍보 효과를 제고하였다. 기존 공사 홍보 영상 콘텐츠와 달리 국민의 입장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드라마·대담 형식, 전문가 인터뷰, 메타버스 활용 등을 통해 정보 전달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공사 자체 콘텐츠 이외에도, 공사의 인적·물적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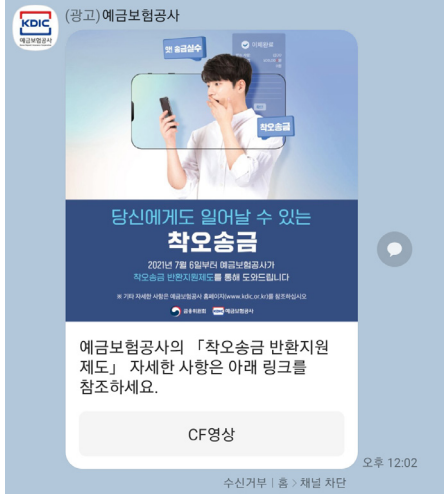
그림 VI-3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착오송금 CF	금투상품 안내	예보제도 안내
		
웹 드라마	메타버스 홍보관	사회적기업
		

다음으로, 네이버,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였다. 주요 검색 플랫폼인 네이버 광고를 실시하여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인 20대부터 50대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관련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공사 주요 이슈에 대한 소식을 발송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공사 및 예보제도 관련 퀴즈에 참여하고, 경품을 수여하는 SNS 이벤트를 확대 실시*하여 공사 SNS 채널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 2020년 연간 총 2회 실시 → 2021년 연간 총 9회 실시

그림 VI-4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활동 실시

네이버 광고	카카오톡 광고
	

마지막으로, 고령층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공사 관련 콘텐츠의 접근성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였다. 2021년 11월 해당 연령층의 시청비율이 높은 지상파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KBS 생생정보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방송을 송출하였다. 또한, 도심지역을 제외한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189개소에 예보제도 안내 리플렛·포스터와 홍보물품인 마스크와 장바구니를 배포하였다.

제3절

부실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1. 예금자 미수령금 지급 노력

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및 개산지급금·정산금 지급

부도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금을,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채권액 비율에 따른 파산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사는 파산절차 장기화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배당금을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산지급금은 향후 예상되는 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공사가 매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한편, 파산절차 진행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파산배당금이 미리 지급된 개산지급금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

이처럼 공사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및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금자의 상당수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으로 파산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미수령금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예금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금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통합관리체계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 지급금 정산금을 일괄조회·신청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자의 미수령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지급대행기관 및 지점을 확대하면서 현재 전국 1,130여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IBK) 지점에서 파산금융회사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미수령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강화

공사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서비스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제공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대상 자산을 기존 예금보험금에서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까지 확대하였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휴면계좌와 미수령금이 함께 조회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의 접근성을 증대시킨 한편,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를 통해서 미수령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산금융회사의 예금자들이 쉽고 편하게 미수령금을 안내받고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 안내방식 개선 등을 통한 홍보 강화

공사는 예금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내·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한 개별 우편 안내문 발송 확대, 신문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배당집중시기를 고려한 광고 게재, 지급대행점을 통한 리플렛 배포, SNS 홍보, 상속인·법인 미수령자에 대한 우편 안내 및 고액 미수령자에 대한 개별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예금자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여 파산배당금 보유 사실을 직접 공지하는 「모바일 안내 서비스」 시행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강화하였다.

(4) 지급 절차 개선을 통한 편의 증대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의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거주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외대사관의 공증 절차를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거주국가 공증인 공증 등으로 해당국가의 발행문서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제도

이러한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용자 편의성 증대, 대국민 접근성 향상, 예금보험제도 및 미수령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의 효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미수령금 잔액은 미수령금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6년말 128억에서 2021년말 49.4억원으로 약 78.6억원이 감소하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파산된 금융회사에 예금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수령하지 않으신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찾아가세요!

▶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고객 미수령금 통합조회/신청' 참조
▶ 안내전화 1588-0037 → 2번(예금보험금), 3번(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파산금융회사 미수령금】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권 - 채권 회수 등의 보충시각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에 지급할 수 없음 시 공사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파산배당금이란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산지급금이란 파산금융회사의 파산이 확정된 후 지급한 금액(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인 안내】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거주지】 원고서류 제출시 주소지나 임시거주지, 또는 마포스타워가 입주한 경우에 접수 가능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먼게이트 통합조회 시스템**(<http://sleepmoney.or.kr>)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http://gov.or.kr>)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조회 → 신청 → 지급 → 조회

잃어버린 돈? 잊어버린 돈!
미수령금을 상속받다

- feat. 사망자의 미수령금을 찾는 방법 -

2. 경영관리 중 여신 고객 등에 대한 불편 해소

2012년 하반기부터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적·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리된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관리 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됨으로써 예금자들의 피해가 크게 경감되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종전에는 영업정지 후 초기 3개월 정도는 예금 인출이 제한되어 가시급금 또는 예금담보대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정리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없이 금융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역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수령 시점이 5개월 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종전에 비해 본인 예금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경영관리 기간의 단축은 비단 예금자뿐만 아니라, 공사 입장에서도 경영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자원 및 동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 비용들이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7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파산재단 관리

-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정리
- 제2절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 제3절 부실금융회사 주요자산 관리
- 제4절 파산재단 관리
- 제5절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 관리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정리

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2020년 12월 2일 금산법 개정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대형금융회사(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라 한다)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제도」가 2021년 6월 30일부터 최초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대형금융회사의 위기 시 대응 방안 및 부실 심화 시 체계적인 정리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제도이다. 대형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책을 담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한편, 공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대형금융회사를 금융시장 혼란 없이 최소비용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림 VII-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 개요



부실정리계획은 평시에 위기에 대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공사는 부실정리계획의 체계적인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사는 차질 없는 부실정리계획 제도 시행을 위하여 법령·규정을 정비하고, 조직·인력을 개편하였으며, 부실정리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기관 연구용역, 해외 선진사례연구, 과거 공사 정리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공사는 관계기관 합동 「금산법 하위규정 개정 TF」 참여 등을 통해 대형금융회사 세부 선정대상·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 위임사항 관련 시행령 개정(2021년 6월 29일)을 지원하였으며, 부실정리계획 수립에 관한 공사 내규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동 내규 및 시행세칙에 부실정리계획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부실정리계획 제출 전 외부전문가를 통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조직 개편 및 인력 증원 등을 통해 부실정리계획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인 '대형금융회사관리부'를 신설하였고, 외부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부실정리계획 목차 검토, 대형금융회사로부터 징구할 자료 양식 마련 등 정리계획 작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FSB 산하 국제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정리제도 관련 국제논의 및 최신 동향 등을 파악하고 정리계획 작성 노하우를 습득하였으며, RRP 제도 관련 해외 사례들을 수집하여 부실정리계획 작성 시 참고하고 있다.

* 국경 간 위기관리그룹(CBCM :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Group), 국내 진출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HSBC은행의 부실에 대비한 위기관리그룹(CMG : Crisis Management Group) 등

이외에도, 지난 IMF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경험하며 축적한 공사의 은행 정리 경험 노하우 등을 분석하여 부실정리계획상 정리전략 마련, 정리 시 장애요인 사전 파악 등에 활용함으로써 부실정리계획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

공사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금융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동 제도 이외에도 정리체계 고도화에 필요한 정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제도 정비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융회사가 평상시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은행과 같이 예금자 및 계좌수가 많은 부보금융회사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IADI(국제예금보험기구) 권고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동 제도의 IT기반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은행 등과 협력하여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온 결과, 인터넷 전문은행 2개를 포함한 국내은행 18개, 종금사 1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5개로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도입을 확산시켰다.

또한,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 체계를 은행 등에서 금융투자업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에는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업권의 예금자정보 표준화와 신속한 지급체계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토록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저축은행업권의 보험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저축은행(79개)을 대상으로 예금자정보 데이터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전년도 점검결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저축은행(5개)을 대상으로 예금자정보 데이터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사시 보험금을 신속·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표 VII-1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련 국제기구 권고 사항

구 분	IADI 핵심준칙 제15조 내용
보험금 지급 기한	예금보험기구는 7영업일 내에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야 함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 은행은 일정 형식으로 예금자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함 - 예금보험기구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예금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함

3. 부실금융회사 정리

2011년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사는 2013년 하반기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고 스마일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해솔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이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관리 부담을 없애고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조기에 종결하는 정리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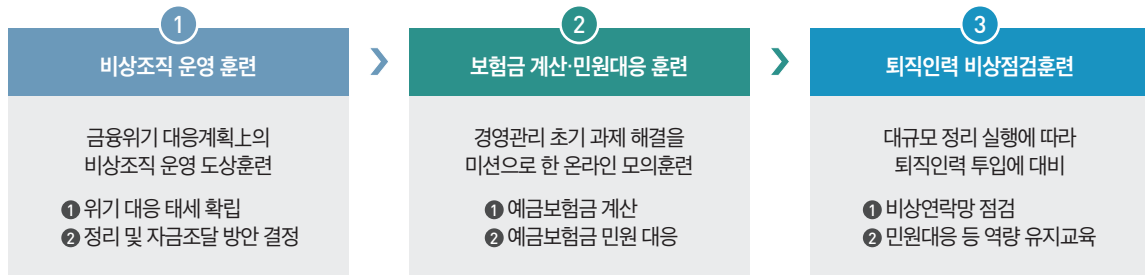
그 이후부터 2021년까지 새롭게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저축은행은 없었으나, 공사는 부실저축은행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부실저축은행 단계별 정리실행계획’을 작성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가교설립 및 계약이전 매뉴얼과 청·파산 매뉴얼을 추가하여 이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과거의 구조조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3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공사의 보유자료를 저축은행 별로 분류하고 정리 프로세스에 따라 시계열화하여 DB를 구축하였으며, 과거 정리경험을 전승하고 향후 부실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및 공사와 정책·감독당국의 대응과정, 주요 4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사례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사례집도 발간하였다.

4.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 실시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상황 하에서도 차질 없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 대응 계획을 정비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공사의 비대면 업무 노하우를 금융위기 대응 계획에 반영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매뉴얼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금융업권에서 동시에 부실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자 민원 등 초기 대응에서부터 대규모 부실금융회사 정리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예금자 민원 대응을 연습하기 위해 새로 구축한 가상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을 실시하여 공사의 비대면 금융부실 정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림 Ⅷ-2 2021년 비대면 정리 종합 훈련



제2절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사는 정부가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방안(2019년 6월 25일, 이하 ‘매각로드맵’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를 이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매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매각을 개시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 4월에 블록세일로 2% 지분을 매각하면서 매각로드맵 이행을 개시하였고, 1,493억원을 회수하였다. 매각로드맵의 이행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었으며 통상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각을 성공시키면서 하반기 희망수량입찰의 성공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2021년 하반기에는 블록세일에 비해 장기투자자 유치가 가능하고, 대량의 지분 매각에도 주가하락 발생 우려가 적은 희망수량경쟁입찰로 9.33% 매각에 성공하였다. 4% 이상 지분 취득 시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지분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소입찰물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최적의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입찰을 흥행시킴에 따라 원금 회수가능주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매각하였으며 8,977억원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96.6%를 달성하였다.

2021년 블록세일과 입찰을 통한 매각이 성공하여 공사의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율이 5.8%로 축소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사실상 민영화가 달성되었다.

2022년에도 시장 상황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로드맵에 따른 잔여지분 매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9년 6월 25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방안 주요내용

-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17.25%)의 매각방안에 대한 로드맵(road map) 제시
- ①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각은 2020년부터 시작 → 2022년까지 마무리
- ② 2020~2022년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 실시
- ③ 대규모 투자자 등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 →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

제3절

부실금융회사 주요자산 관리

1. 주요자산 현황

가. 개요

2011년 이후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해 부실이 심화되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함에 따라, 공사는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자산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2021년말 기준 총 2,280억원의 주요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보유한 자산의 경우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건설사업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고, 이들 SPC에 대출을 실행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래된 자산이 많았다. 따라서, 각 자산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법률분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 및 고가의 외제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여 자산가치 유지를 위해 이들 자산을 특성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1년 자산 관리 전담부서(특수자산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2부(회수기획부, 해외재산조사부), 1사무소(프놈펜사무소)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재산조사부는 해외재산 조사·회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전담조직으로서 현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중재, 협상 및 범정부적 외교적 협의 등 다각적 회수방안을 추진 중이다.

표 Ⅶ-2 저축은행 파산재단 주요자산 유형별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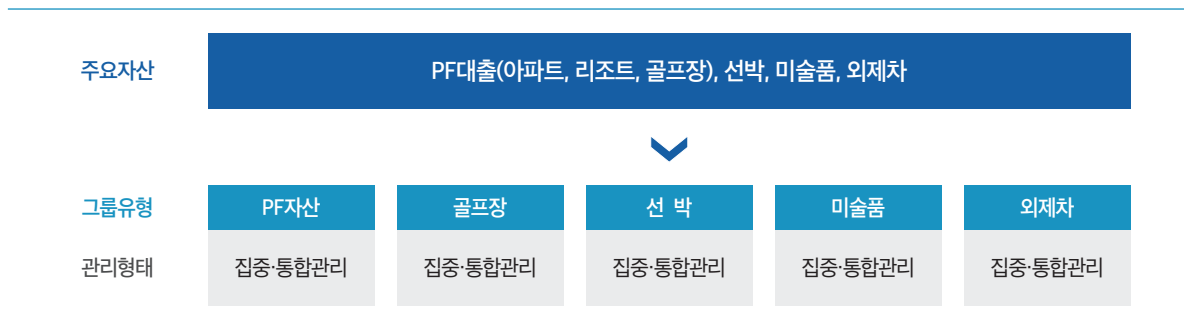
구 분	파산당시 관리대상 건 수	대출잔액	미매각 자산 유효담보가
PF부동산	758	78,521	1,795
선박	16	2,070	-
주식	23	2,930	-
해외자산	37	3,345	484
미술품 등 기타	5	33	1
합 계	839	86,899	2,280

나. 주요자산 관리현황

자산 관리 전담부서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시점부터 자산 관련 대출의 취급과정, 권리관계 분석 및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자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자산가치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가치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허가 및 사업권 만료 임박 등 가치 저하가 예상되는 자산에 대한 회수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회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Ⅶ-3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2. 자산 회수 극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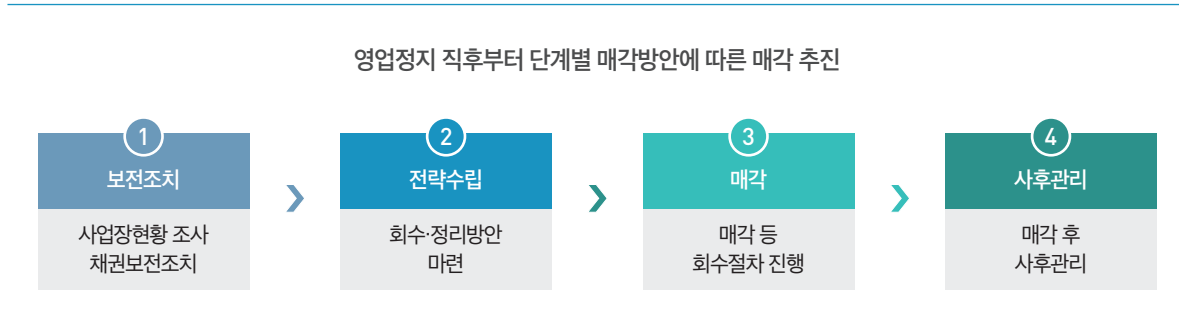
가. 회수관리 체계

공사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시점부터 자산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외부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4단계 회수관리체계

금융회사 영업정지 시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맞는 매각방안 등 회수전략을 수립한다. 이어서 대상자산에 대한 매각공고 및 입찰실시 등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매각완료 자산에 대한 입금관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4단계의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VII-4 4단계 자산 회수관리 체계



또한, 조사결과 분류된 자산을 특성에 따라 그룹별로 유형화하고, 각 자산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집중도 및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2) 자산회수자문위원회

자산 매각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산회수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에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학계·회계·법률 전문가 이외에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새로 선정하여 위촉하기도 하였다.

(3) 매각설명회 및 홍보영상, 설명자료 제공 등 자산매각 홍보

공사는 2014년부터 잠재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 가능한 자산을 대상으로 매각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3회에 걸친 매각설명회를 통해 1:1 현장상담, 사업장 설명자료 제공, 권리관계 분석 및 외부전문가 강의 등으로 잠재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VII-1 자산 매각 홍보 방안

매각설명회	1:1 현장상담	홍보영상	투자노트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각설명회 등 기존 대면 위주의 자산매각 홍보가 어려웠으나,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혁신 부응 등을 위해 비대면·비접촉, 신기술을 활용한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현장답사를 필요로 하는 매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항공뷰 등 생생한 정보전달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PF사업장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완성된 동영상은 유튜브 및 예보공매정보 홈페이지 등 디지털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한 결과, 홍보영상을 제작한 6개의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충남 보령 아파트 사업부지, 강원 춘천 연수원 시설)을 2021년 중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PF사업장별 교통여건·입지, 매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투자노트를 PDF, 책자 형태로 별도 제작하여 예보공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관·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언택트 서비스’도 개시하였다.

(4) 대외 협력체계 구축

공사는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자산에 대한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해외 소재 자산의 경우 공사 단독의 노력으로는 회수에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국회, 정부 등 대외기관은 물론 자산 소재국 정부와의 협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해외소재 자산 중 최대 규모인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의 재개를 위해 국내 정부부처·기관과 협업하고, 나아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과거 부산계열저축은행이 대규모로 투자한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성과로는 양국 정부 간의 「한·캄 캄코시티 TF」의 구성과 성공적 운영을 꼽을 수 있다. 2019년도 11월 정부대표단의 캄보디아 정부 방문면담을 통해 물꼬를 튼 양국 정부 차원의 캄코시티 협력 모멘텀은 동 TF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공사는 범국가적 대응을 통해 조성한 양국 간 협업 기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공동TF 구성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신속한 개발사업 재개 및 부실저축은행 피해 예금자 구제를 가시화하고자 두 나라가 캄코시티 관련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채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공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캄코시티 사업의 추진동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신속한 TF 회의 개최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캄보디아 TF 출범 직후, 캄코시티 사업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유지와 적시 정보공유를 위해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 간 논의를 통해 회의 참석인원, 회의방식 및 개최시기를 신속히 조율하였고, 이를 캄보디아 정부에 제안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화답하여 2021년 1월 한·캄 TF 1차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TF 운영방향과 정보공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2021년 6월에는 실무 차원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측 요청 정보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한 제공 의사를 재확인하고, 세부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 공동TF 운영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향후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사는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자료 제공 거부로 캄코시티 사업현황 파악을 위한 정확한 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공동TF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캄코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캄코시티 관련 국내외 소송에도 진력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0년 캄코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었던 현지 시행사 주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사업부지 보전과 현지 시행사 경영권 회복 등을 통해 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소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특히, 사업부지 보전을 위한 현지 가압류 소송과 관련하여 2020년 10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2021년 7월 이의심에서도 승소하였고, 2022년 1월 항고심에서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 또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 등 법적조치를 통한 경영권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국내시행사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이하 ‘LMW’라 한다) 파산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국내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다. 특히, 채무자 측의 LMW 투자자들을 상대로 LMW 파산재단이 제기한 원금상환 부인의 소*에서 준비서면 작성 지원 등을 통해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의 최종 승소를 도모하였다.

* 채무자는 LMW의 (캄)시아누크빌 부동산 투자사업 관련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상환하였고, 이에 LMW 파산재단은 투자 원금 상환에 대해 우선 부인(否認)의 소 진행

앞으로도 공사는 「한·캄 캄코시티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경영권 확보 등을 위한 잔여 소송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한국과 캄보디아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캄코시티 현안 해결과 부실저축은행 피해예금자 구제라는 사회적 책무를 완수해 나갈 계획이다.

나. 회수절차

저축은행 보유자산은 당해 사업의 특성과 담보물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수립한 뒤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공개입찰 등을 거쳐 회수하게 된다.

매각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법률자문을 거쳐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석한 뒤, 사업장별 또는 자산별 특성에 맞춰 최적의 회수방안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Ⅷ-5 주요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또한, 일부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여 사업성이 높은 경우 채권매각 등 사업권을 매각하고, 청산가치가 큰 경우 신탁사 공매, 법원 경매 등의 방식으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한편,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송 등으로 장기 미매각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매각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법률쟁점 해소방안을 잠재매수자에게 제공하는 해법제시형 매각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파산재단별 개별 공매방식으로 매각하였으나, 2017년부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주도로 일괄공매하는 일괄매각 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신탁사 및 파산재단 등과 협의하여 매각 가능 PF사업장을 선정한 후 신문 전면에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매각광고 이전 매각설명회 개최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 잠재매수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자산매각 입찰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온비드)」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대면접촉 없이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입찰 장소에서의 코로나19 발생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한편, 미술품 등의 경우에는 국·내외 경매 전에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림 Ⅶ-6 매각 대상 자산별 외부 전문기관 유형

자산 유형	사업부지·주식 등	선 박	미술품·오디오	외제차
주관사 등	회계법인·증권사	선박 브로커리지	경매 전문사	등록 대행사 경매 전문사

다. 회수실적

공사는 이와 같은 자산 회수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말까지 총 5조 5,786억원을 회수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골프 수요증가 및 아파트부지에 대한 높은 시장관심을 감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마론뉴데이 골프장부지, 용인 아파트부지 등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였다.

30만평·18홀 규모의 마론뉴데이 골프장부지는 입회보증금 채무, 기존 골프장 인허가권 이전 어려움 등 각종 매각장애요인으로 인해 2017년부터 4차례 공매 유찰된 바 있었다. 이에 매수자가 회생절차 M&A를 통해 입회보증금 등 관련 채무를 확정·해소한 후 대중제로 전환하여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정보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21년 3월 직전 최저유찰가의 2.5배인 502억원에 매각이 성사되었으며, 회수자금은 향후 경기·한국·진흥·영남 파산재단 피해예금자 구제재원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향후 골프장 건설 사업이 정상화 될 경우 건설 및 골프장 운영을 위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천안지역 골프장 방문객 증가로 관광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Ⅶ-2 2021년 주요 매각 자산



공사는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매각 및 회수 노력을 통해 장기간 사업중단된 PF사업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회수된 자금으로 파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 구제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PF사업장 공익활용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표 VII-3 파산재단 주요자산 유형별 회수 실적

(202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회수 금액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PF부동산	1,737	3,529	9,522	10,516	4,829	5,408	3,863	4,447	1,311	2,267	47,429
선 박	223	661	870	1,200	152	-	-	-	-	-	3,106
주 식	838	641	214	183	1	10	16	16	-	-	1,919
해외자산	734	158	357	88	72	576	345	2	-	10	2,342
미술품 등	53	49	86	161	116	121	104	253	22	25	990
합 계	3,585	5,038	11,049	12,148	5,170	6,115	4,328	4,718	1,333	2,302	55,786

제4절

파산재단 관리

1. 파산재단 관리 현황

가.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예금자보호법」은 지원자금 등의 효율적 회수를 위하여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말 현재 34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에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공사 직원 28명을 대리인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자금 등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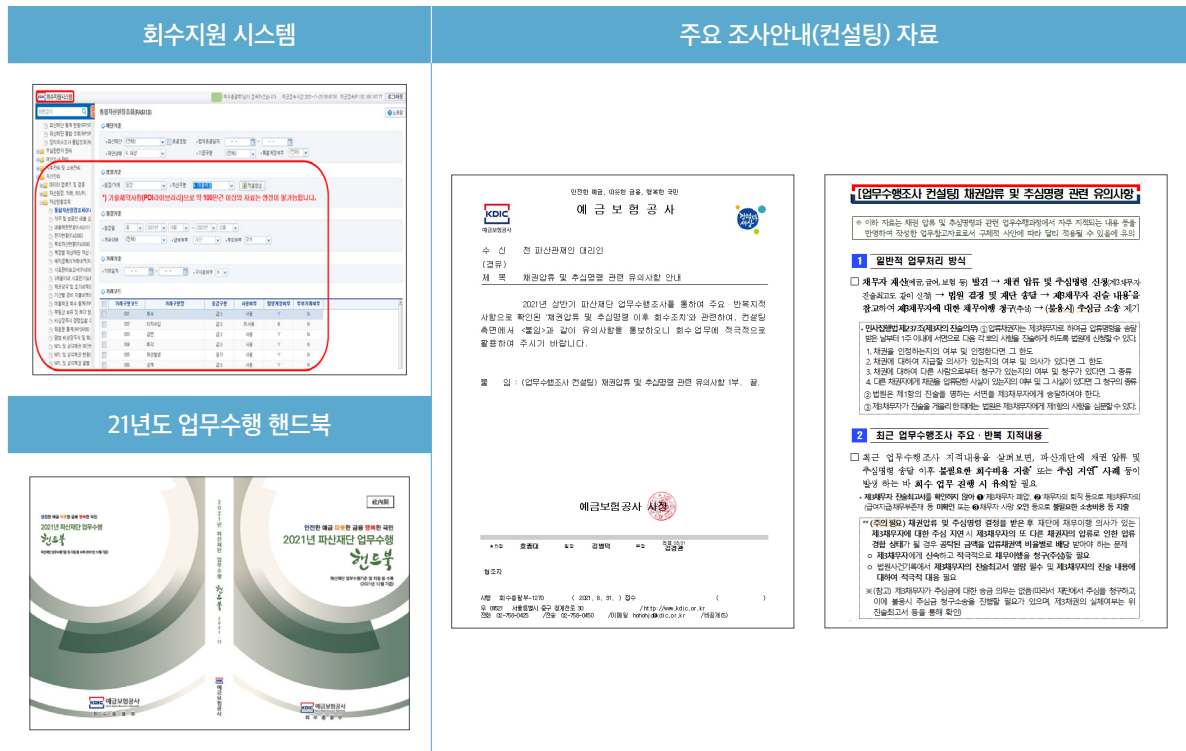
* 공사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2개(와이즈에셋자산운용, 한맥투자증권) 재단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추천으로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공사는 전국에 산재한 파산재단에 대하여 6개 광역권역별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지역통할책임자를 두어 공사, 지역통할책임자, 파산관재인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자산규모, 종결계획 등을 감안하여 10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 및 통합운영을 확대하는 등 인력관리 및 운영비용 절감에 노력하였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기준을 재조정하고, 파산재단 업무수행조사 및 광역권별 파산재단 간 교차점검 등 철저한 내부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공사 자체 회수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업무수행조사를 실시하고, 재단 간 교차점검을 재단 자체점검으로 일시적으로 전환 실시하여 재단의 코로나19 발생을 예방하였다.

아울러, 업무수행조사 등의 피드백으로 주요 조사결과 및 관련 개정 기준·지침을 반영한 ‘2021년 파산재단 업무수행핸드북’을 발간함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 파산재단 사고 예방 및 통제에 노력하였다.

그림 Ⅶ-7 파산재단 업무수행조사 실시 및 피드백



반기별로 개최되는 파산관재인 및 업무보조인 워크숍을 통하여 공사의 파산재단 운영 지침과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동시에 파산재단간 회수 경험 및 노하우가 활발히 공유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파산관재 업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자산매각 등 환가과정에서 공정·투명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부패·윤리경영 의식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파산재단 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등 내부정보 이용 및 이권개입 등 금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계약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관리 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회수 난이도가 높은 자산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보유자산 환가 등 특별한 공로가 있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파산재단별 회수실적을 파산재단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회수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중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파산재단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파산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채무조정제도 개선 및 채권 소각 실시

공사는 2001년부터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재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021년에는 분할상환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상환유예와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대상 한시적 추가 감면 기한을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각 1년 연장하였으며, 추가 감면 대상 코로나19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율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지급금에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2021년도에 15,115명의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사는 회수가 불투명한 장기 연체 채권 715억원을 조기 회수하였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청구권 없는 채권 0.3조원, 1.2만건(누적 2.5조원, 13.5만건)을 소각(채무면제)하여 채무부활 위험을 원천 차단하였고, 공사 및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소각 사실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VII-4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및 채권 소각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채무 조정	코로나19 피해자 감면기간 및 인정범위 확대	•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2022.12.31까지 1년 연장 •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영위하던 중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코로나19 피해자에 포함하여 인정범위 확대
	코로나19 관련 특별상환유예 연장 실시	•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환유예를 최대 1년간 연장
	신복위 채무조정 동의율 제고방안 마련	•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 및 저소득 소액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 원칙
	가지급금 감면율 적용	• 원금과 동일하게 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가지급금에 감면율 적용

2. 자산환가 및 배당 극대화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산별 특성에 따라 합동공매, 온비드·신탁사 공매, 법원·옥션 경매 등 차별화된 매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신규 매수자 발굴 및 회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각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홍보를 강화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하여 잠재매수자에 현장감 높은 정보를 제공하였고, 미매각 자산의 투자포인트 등의 정보를 담은 투자노트를 발간하는 한편, 부동산 전문포털 사이트인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온비드 공매 홍보배너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 합동공매에 대한 잠재수요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보공매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매나 공매의 지식·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편의성 및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매각가능 자산의 매물·공매·행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는 합동공매 제도와 입찰 참여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매웹툰도 제작하여 「예보공매정보 시스템」과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다.

그림 VII-8 예보공매정보 화면



한편,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간 축적된 회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수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파산재단 자산의 유형별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 등을 상시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통계를 생성하고 활용함으로써 파산재단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와 함께 공사는 효율적인 파산재단의 배당업무 수행을 위해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전산시스템(CDIS)」을 200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산채권 관리 및 배당금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여 배당 관련 업무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였다.

공사는 이처럼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배당 극대화와 공적자금 등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표 VII-5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 동 산	19	286	16	354	8	244
회원권(골프·콘도)	7	4	4	1	5	1
비상장주식	2	16	-	-	7	1

※ 보유자산의 공매, 온비드 및 수익계약 등으로 매각한 건수 및 금액임

3. 파산재단의 합리적 종결 추진

공사는 파산기간이 장기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잔여자산을 평가·매각하여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 법적 종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산재단을 조속히 정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있다.

2021년말 현재 490개 파산재단 중 456개 파산재단이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34개 파산재단 중에서도 파산기간이 장기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법적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파산재단이 법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각 지역통할책임자를 통해 관련 민원 안내 및 법률관계 정리 등 법적 종결 파산재단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VII-6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 계
총 파산재단 (A)		5	11	6	22	121	325	490
종결	종결재단 (B)	5	10	5	22	89	325	456
	종결율 (B/A×100)	100	91	83	100	74	100	93
진행재단 (A-B)		0	1	1	0	32	0	34

제5절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 관리

1.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 현황

공사는 정리금융회사(케이알앤씨; KR&C)를 통해 2021년 말 누적 기준으로 총 49조 649억원을 인수하였다. (인수액 기준)

제일은행 매각 시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자산, 기타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인수자산의 인수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공사(RFC, 현 케이알앤씨)는 예금보험 기금채권상환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일은행으로부터 7조 8,386억원, 5개 인수은행(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으로부터 1,588억원, 5개 생명보험회사(국민·동아·태평양·한덕·대한)로부터 3,569억원, 3개 금융투자사(한투·대투·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1조 3,072억원, 470개 파산재단으로부터 3,777억원, 3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5,148억원,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 흡수과정에서 38조 5,109억원 등 2021년 말까지 총 49조 649억원(인수액 기준)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 한마음·한중·아림·좋은·대운·홍익·경북·현대·분당·전북·옴름·전일·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경은·에이스·제일·제일2·진흥·토마토·토마토2·파랑새·프라임·한주·경기·신라·서울·영남·스마일·한울·해솔·골든브릿지저축은행

표 VII-7 케이알앤씨(KR&C) 인수자산(누계)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KR&C)	은 행	98,695	79,974	6개 은행(제일은행 포함)
	보 험	4,051	3,569	5개 생명보험
	금융투자	25,324	13,072	3개 금융투자사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KR&C)	파산재단	105,622	3,777	470개 파산재단(5개 은행, 11개 보험, 4개 금융투자, 22개 증금, 89개 저축은행, 339개 ¹⁾ 신탁)
	저축은행	26,429	5,148	37개 저축은행
	소 계	260,121	105,540	-
한아름증금 ²⁾	증 금	330,588	326,625 ³⁾	16개 증금
한아름금고 ²⁾	금 고	79,848	58,484 ³⁾	41개 저축은행
합 계		670,557	490,649	-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 중앙회로 이관된 14개 파산재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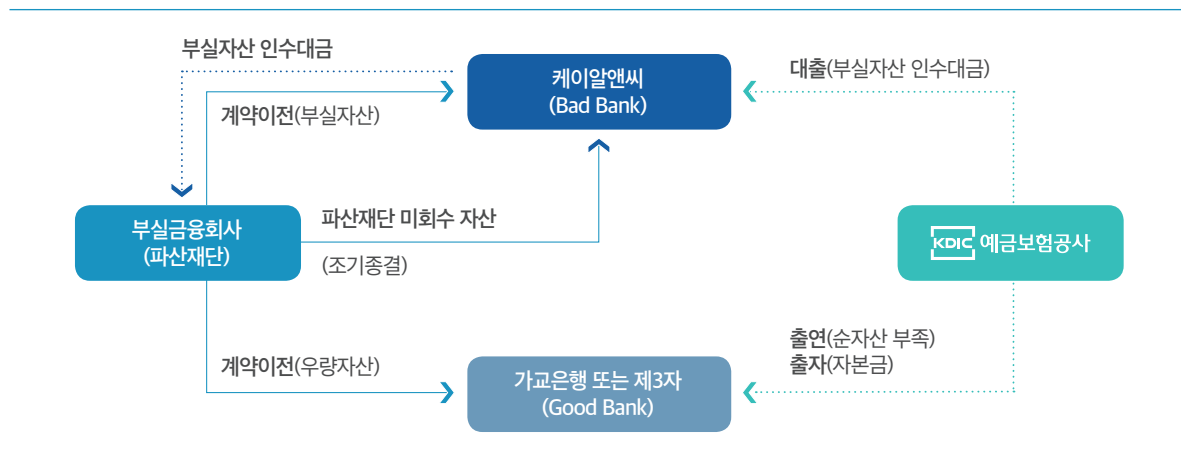
2)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정리금융회사

3) 예금대지급채권 포함

2. 부실금융회사 인수자산의 효율적 관리

케이알앤씨(KR&C)는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이전 절차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등을 신속하게 인수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VII-9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2021년말 기준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잔액은 채권액 기준 7조 3,794억원으로 이 중 1,464억원은 케이알앤씨(KR&C)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7조 2,330억원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유자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추심·채무조정 및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고,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은 정기 합동공매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표 VII-8 케이알앤씨(KR&C) 보유자산(잔액)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직접관리	외부 위탁관리	합 계
대출채권	425	72,330	72,755
유가증권	415	-	415
부동산등	624	-	624
합 계	1,464	72,330	73,794

* 손해배상채권 등 제외 기준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8

부실책임 추궁

- 제1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1절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1.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효율성 제고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당해 부실금융회사 등에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 부실금융회사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2008년 3월 공사는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 간의 고도로 밀착된 불법행위에 대한 유기적 연계조사를 위하여 부실금융회사 조사를 담당하던 '구 조사부'와 부실채무기업 조사를 담당하던 '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국 2부 1사무소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검 인력을 포함하여 2021년말 현재 총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검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부실책임을 확정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과 보험회사 영업정지 발생 등 복잡·다양해지는 부실책임 심의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금융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 Ⅷ-1 부실금융회사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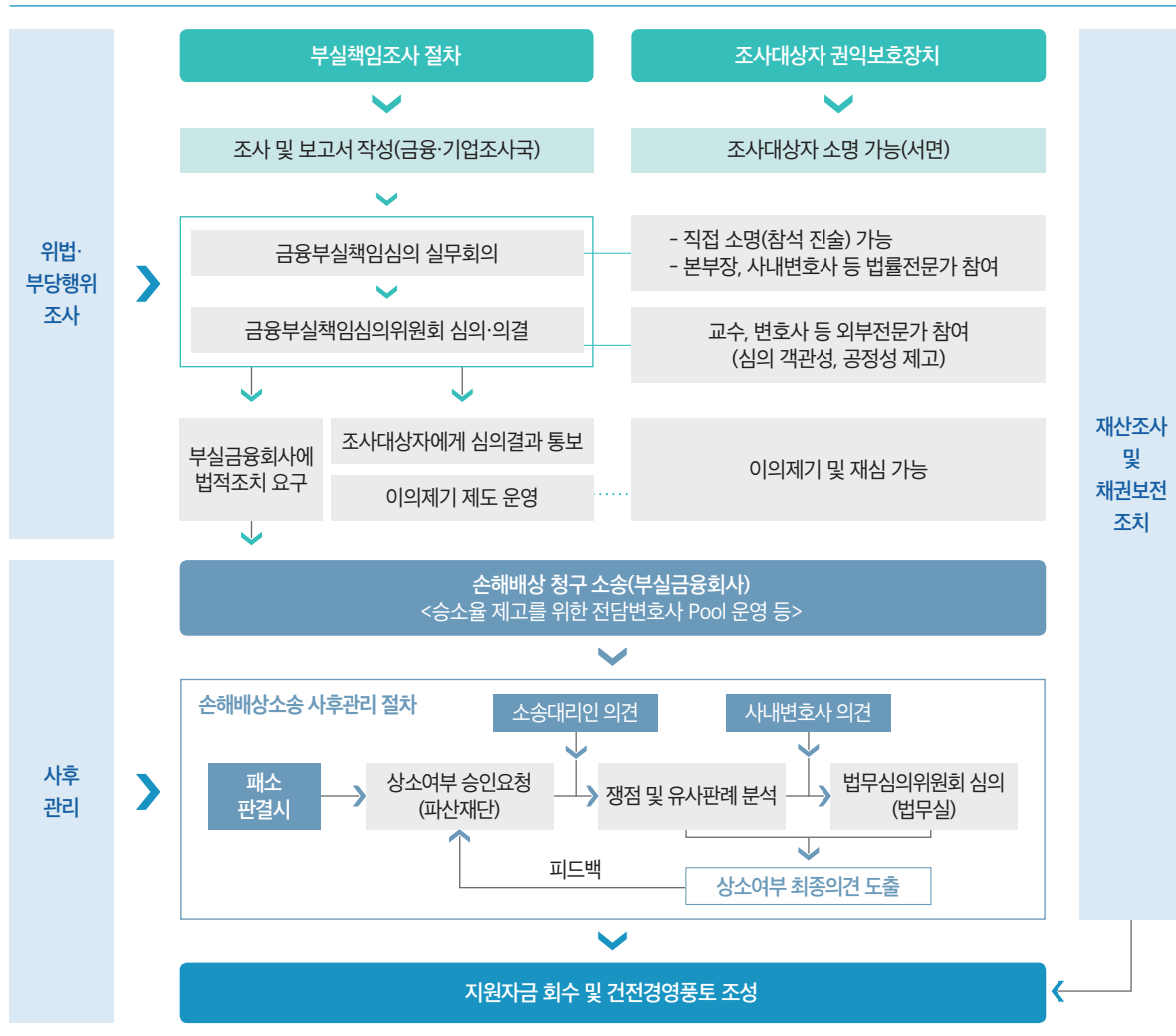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합 계	
	부실금융회사 (A)	부실관련 임직원(B)	부실금융회사 (C)	부실관련 임직원(D)	부실금융회사 (A+C)	부실관련 임직원(B+D)
은 행	15	191	-	-	15	191
금융투자	6	65	-	-	6	65
보 험	18	244	1	6	19	250
종합금융	22	160	-	-	22	160
저축은행	86	789	46	521	132	1,310
신 협 ¹⁾	325	4,146	-	-	325	4,146
합 계	472	5,595	47	527	519	6,122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부실책임심의 결과 2021년말 현재 공사는 총 519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 임직원 6,122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에 요구하였다.

그림 Ⅷ-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2.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년 말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9,013명에 대해 1조 8,1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이들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종료되었으며,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강제집행 등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부실책임제재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Ⅷ-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탁 ¹⁾	합 계
부실금융회사수	15	6	18	22	85	311	457 ³⁾
피 고 수	191	83	276	181	1,026	7,256	9,013
소송청구액	1,004	342	2,435	3,048	5,433	5,856	18,118
승 소 액	476	218	1,346	548	4,056	3,208	9,852
회 수 액 ²⁾	102	54	218	660	923	769	2,72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

2)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3) 자진변제, 면책 등의 사유로 조사 완료 후 소송 미제기한 15개 회사 제외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회사 및 그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말까지 47개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 702명에 대해 4,61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Ⅷ-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억원)

부실금융회사수	피 고 수	소송청구액	소송확정액 ¹⁾	승 소 액	회 수 액 ²⁾
47	702	4,617	4,588	2,691	1,264

주 : 1) 소송진행 29억원

2)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새로이 발견할 경우 즉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잔여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부실책임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착수시점부터 부실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실책임 현장조사 착수 시부터 향후 조사 진행과정과 각 과정별 소명 또는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부실책임 심의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사회적 약자의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 권익보호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 홈페이지 상 권익보호제도 안내방식 개선 및 별도의 권익보호제도 안내 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피조사자 권익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를 체계화하였다.

2020년에는 피조사자 권익보호 관련 모든 사항을 원칙적으로 「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권익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4.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역량 강화 노력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등장 및 금융의 디지털화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검찰 및 국세청의 비트코인 법적조치 이슈와 부실채기업 손배소송 관련 대법 판례를 검토하고자 검찰 수사관 및 변호사를 초청하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개념 및 분석”, “부실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제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20년간의 부실책임 민·형사 판례를 집대성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부실책임조사 및 관련 업무 수행 시 활용토록 하고 검찰, 금융위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대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경영풍토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공사는 금융부실책임조사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금융법학회와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향후 금융부실조사 방향으로 암호자산, 신종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사모펀드에 대한 부실조사 참여, 조사 대상자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부실금융회사 발생에 대비하여 효율적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금융정보제공 요구대상 확대, 부실책임조사 대상자 확대 등 예보법(령) 개정 관련 국회 및 금융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노력

공사의 '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부실금융회사 조사 전담부서인 '구 조사부'와 통합,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2013년에는 부실채무기업 전담부서인 기업조사국(현 조사국)을 신설하여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금융부실책임 조사를 강화하고, 책임재산 확보 등을 통해 채권회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1년말 현재 890명에 대해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에 통보하였다.

표 VIII-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부실채무기업 수	부실관련자 수
384	890

2.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및 그 파산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와 동일하게 법적조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 1,191명에 대해 2021년 말까지 9,8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VIII-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억원)

부실채무기업수	피 고 수	소송청구액	승 소 액	회 수 액 ¹⁾
155	1,191	9,820	4,495	1,188

주 : 1)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 국내 재산조사 강화

공사는 자금을 지원한 부실금융회사(파산재단 포함)의 부실관련자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는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통해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및 부보금융회사의 건전 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상 보장된 '자료제공요구권'을 활용하여 법원 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예보법 개정을 통해 부실관련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권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그 권한을 상시화하여 부실책임추궁업무 및 지원자금 회수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는 재산발견 가능성이 높은 조사항목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국내재산 428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1년 12월 말까지 총 1조 4,245억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공사는 2019년 말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회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21년에 위원회에서 재산조사 계획 및 그 결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권익보호 및 재산조사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하였다.

그림 Ⅷ-2 국내재산조사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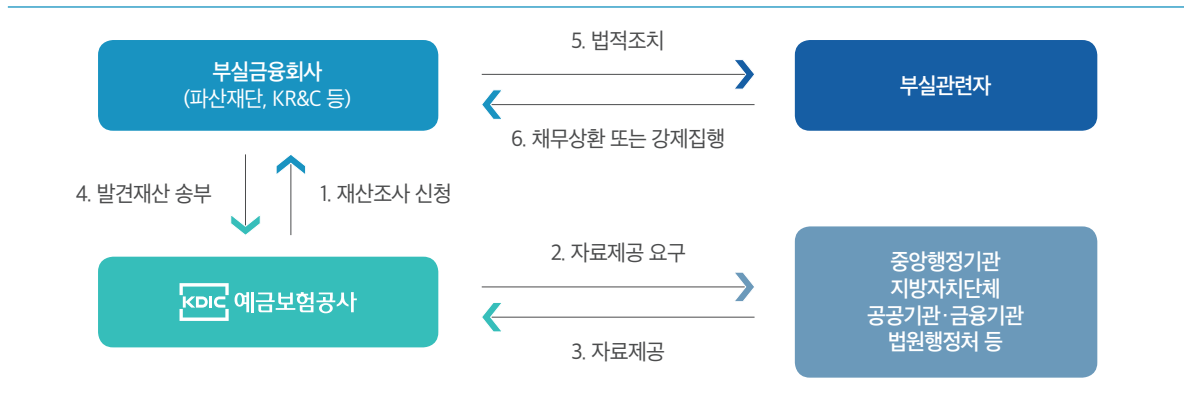


표 Ⅷ-6 국내재산 회수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 도	200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금 액	10,496	851	1,257	290	291	302	330	428	14,245

2. 해외 재산조사 확대 및 회수 강화

공사는 2002년부터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해외재산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조사 대상국을 확대하는 등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사는 2021년까지 56개국에서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무자별 재산조사방법 다각화 및 조사항목 확대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힘입어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도, 2021년 중 해외재산 보유 현황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미국 등 5개국에서 미화 약 3,140천달러(37억원)상당의 해외재산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해외은닉재산 회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채무자별 회수 전략 적정성 Review를 실시하여 채무자별로 최적화된 회수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KOTRA 등 유관기관, 시중은행 및 FDIC의 추천 등을 통해 신규 소송대리인 후보군을 대폭 확충*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2020년 : 16개국, 39명 변호사 → 2021년 : 22개국, 67명 변호사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에는 부실관련자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 중 527천달러(5.9억원)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그간의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회수 단계별 쟁점사항과 해외 법제, 업무 노하우 및 사례 등을 집대성하여 “해외재산회수 마스터북(CPR)”을 e-book 형식으로 제작 및 발간하였다.

표 Ⅷ-7 해외재산 회수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천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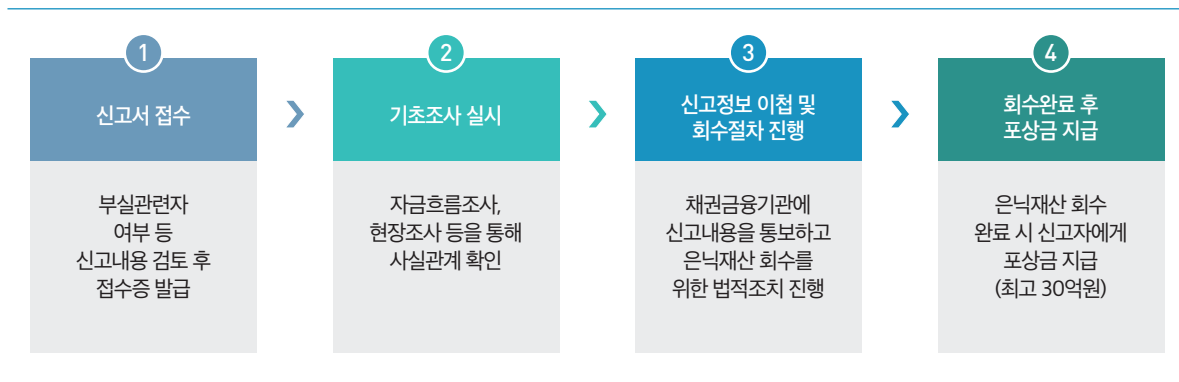
연도	200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금액	3,046	349	1,400	415	11,653	2,252	5,027	6,250	1,496	1,596	1,990	1,570	527	37,571

3.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은닉재산 회수

공사는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재산조사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국민의 신고를 통해 확보하고자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이하 ‘은닉재산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자금흐름조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회수실익이 있는 신고정보를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Ⅷ-3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흐름도



회수절차가 완료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회수기여도 평가를 거쳐 포상금을 산정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채권금융기관) 관할 법원이 포상금액을 결정해서 지급을 허가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요 일간지 지면광고 및 온라인 배너 게시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이용자에게 제도 및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하였다. 아울러,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미국, 베트남, 중국, 호주 등의 해외지역의 교민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은닉재산신고센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수 기여도 평가 등 일부 업무에 대한 개선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 및 신고자 포상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센터 접수 건 중 미종결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회수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등 신속한 회수가 진행되도록 파산재단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는 2021년 말까지 총 42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 중 100건에 대해 799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총 51억원을 지급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신고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고가 회수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표 Ⅷ-8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접수건수	166	23	53	33	36	37	25	22	16	10	7	428
회수건수	27	5	9	8	7	9	11	9	7	4	4	100
회수금액	28,866	825	2,553	732	3,230	6,745	7,779	10,191	10,509	1,522	6,919	79,871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9

사회적가치 추진 및 성과창출 노력

제1절 사회적가치 추진 기반 강화

제2절 사회적가치 추진 실적

사회적가치 추진 기반 강화

1. 사회적가치 추진 실행력 제고

공사는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년도와 같이 2021년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전략체계 설정, 전담조직 개편 등을 통한 인프라 마련 등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추진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추진기반 및 지표별 세부계획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그림 IX-1 사회적가치 강화를 위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전략목표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시장 안정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과제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	기금건전성 제고 및 기금관리체계 정비	ESG 강화 등 경영혁신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 확대	차등평가와 연계한 리스크관리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정립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	선제적인 위기대응을 위한 제도 고도화	안전·보건 경영 강화
	효율적인 지원자금 회수·관리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2. 체계적인 사회적가치 추진 및 내재화

공사는 2021년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과제 등 신규과제 21건을 포함하여 총 89개의 사회적가치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제를 결합·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가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추진위원회」 및 「사회적가치 실현 추진단」의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2019년부터 제도화한 ‘사회적가치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작성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 시에 사회적가치 주요 항목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점검 과정에서 ‘파산재단 대출채권 최고금리 인하’ 등 신규 과제를 도출하여 임직원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 전반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와의 연계성을 지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사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활동 내용을 공유·전파하는 “사회적가치 뉴스레터”를 주기적으로 제작·배포하였다. “사회적가치 뉴스레터”는 공사 내 사회적가치 추진 활동, 대내외 모범사례 및 주요 기관 사회적가치 동향 등으로 구성되며, 사내 게시판 및 공사 SNS 등을 통해 공사 직원 및 국민참여단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가치 구현 활동 홍보 및 신규 아이디어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ESG경영이 중점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해당 뉴스레터를 “ESG 뉴스레터”로 변경하여, 공사의 ESG 경영실천 노력, 실천 사례, 대내외적 ESG 동향 등을 담아 ESG 경영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사회적가치 구현’ 메뉴 내에 사회적가치 전략체계, 추진조직 및 다양한 사회적가치 활동과 소식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하였고, 공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회적가치 실현보고서”와 “ESG 뉴스레터”를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X-2 ESG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ESG 뉴스레터

홈페이지(사회적가치 홍보관)

번호	제목	소관부서	등록일
46	제46호 ESG뉴스레터(22.3.30)	사회적가치경영부	2022/04/07
47	제47호 ESG뉴스레터(22.2.23)	사회적가치경영부	2022/03/04

2021년 3월에는 공사의 사회적가치 추진 노력을 집대성하기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 및 표준을 반영한 “사회적가치 실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주관 ‘Vision Awards’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 플래티넘 대상을 수상하여 공사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3. ESG경영 기반 마련

공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과 함께 환경 및 투명 경영을 반영한 ESG경영을 추진하고자 부서별로 진행되던 ESG 관련 업무를 보다 전사적 차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ESG 전략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내부 ESG경영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를 설정하고, 타당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그림 IX-3 ESG 전략체계안



ESG 관련 업무를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된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단 및 ESG 각 주제별 3개의 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ESG 관련 전략과제 수행 등을 위해 ESG 전담조직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공사의 존립목적, 고유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금을 활용한 ESG 투자 활성화지원, 파산재단 대출 채권 최고금리 인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44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제2절

사회적가치 추진 실적

1. 일자리 창출

가. 신규채용 확대 및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공사는 채용의 효율적 관리 및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연간단위 채용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채용계획 수립 시 향후 5개년 채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정현원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반기 채용규모를 확대(15명 → 21명)하여 2021년에 총 36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다.

적합직무 발굴을 통해 3년 만에 특성화고 졸업예정자(2명)를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고졸자 등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자격증 취득 등 불필요한 스펙(spec)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전형은 폐지하고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전형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총원 등을 활용하여 업무지원직 2명을 채용하였으며,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74명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였다. 특히, 인턴들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2021년도 최저임금(약 183만원)을 상회하는 월 200만원을 급여로 책정하였다.

나. 민간일자리 창출 성과 극대화

(1) 핵심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확대

공사는 리스크 관리·기금 관리·정리·회수 등 핵심업무 전반에 걸쳐 민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업무 수행방식 및 과정의 개선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 관리 업무에서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고위험 금융회사(1개 손해보험사, 1개 저축은행)를 대상으로 감독관 파견, 현장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용안정성 유지에 기여하였다.

둘째, 기금 운용 업무에서는 공공성예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지원 등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우수환경기업 등의 금융지원을 위해 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성 예금을 운용하여 총 6,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재원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기업은행채권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회적채권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등을 1조원 넘게 매입(2020년 9,000억원 → 2021년 12,600억원)하여 기간산업 및 중소벤처업권 등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하였다.

셋째,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MOU 체결 금융회사 관리에 있어 MOU 비재무목표 부여 등을 통해 창업·재도전 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자금지원과 고용 관련 상품 지원 확대를 독려함으로써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수 업무에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PF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매각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 노력 및 공익 활용 등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킴으로써 건설 및 신규점포 창업 등으로 총 20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 민간 위탁업체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사는 민간 위탁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다.

우선, 공사가 관리하는 34개 파산재단에 근무하는 약 226여명의 업무보조인이 파산 종결 이후 안정적 일자리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고용노동 분야 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채무조정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 및 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지원 연계 프로세스 등을 통해 실질적 재기가 되도록 돕고 있으며, 공사 채무조정자의 재기 스토리를 토대로 미담 사례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존 연체채무자의 취업 등 재기의지를 고취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글로벌교육센터 인근의 공공기관과 함께 충북지역 대학생 대상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국정과제인 청년층 취업지원에도 앞장섰다. 참가자 니즈, 채용전형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AI 모의면접, 그룹 멘토링을 추가하고 진행시간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약 가운데서도 지역 대학생 취업역량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학계 연계프로그램(KEPA)*'으로 지방 소재 대학 중심의 특강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지방대학생의 금융이해도와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2011년부터 실시, 공사 리스크관리 담당 직원이 대학교에 방문하여, 수업 시간에 예보제도와 채용안내, 금융 현안 등 강의(통상 방문특강 형태로 실시되었으나,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형태로 실시(유튜브, 줌 등 활용)

2.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가.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공사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기회균등 및 공정한 과정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이,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견없이 지원자의 역량 및 직무적합도에 대해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진행하는 채용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입찰하여 동일한 채용대행업체와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채용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의 채용정보 비대칭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CEO가 직접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공사업무 소개 및 채용절차를 설명하고, 필기 및 면접전형 예시문제 등을 공개하였다.

나.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1) 정현원차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사는 2021년도 채용계획 수립 시 대내외 환경분석, 부서 신규수요, 정현원차, 법정 의무고용비율 등을 고려하여 향후 5개년 신입직원 채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도에는 효율적인 정현원차 관리로 당초 계획(30명) 보다 많은 36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다.

아울러, 2020년도 75명에 이어 2021년도에도 74명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2) 지역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공사는 취업정보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 채용설명회를 지속 실시하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기재부 및 금융위 주관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공사 채용제도를 소개하였으며, 2021년도 대학생 취업캠프에 참여하여 공사 글로벌

교육센터가 있는 충북지역의 5개 대학교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홍보 채널 확대와 함께 신입직원 전형 시 지역인재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13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도(12명)에 이어 두 자리 수의 지역인재 채용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우대 가점(15%) 부여와 장애인 구분채용(체험형 인턴)을 통해 2021년 총 6명을 채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2명을 일반정규직으로 공개채용함으로써 고졸자 등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무지원 직원 및 체험형인턴 채용 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대를 지속 실시하여 사회 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안전 및 환경

가. 안전보건경영 체계 운영

(1)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공사는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최고경영진이 전 임직원에게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포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ISO 45001 국제인증을 유지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였다.

우선, 최고경영진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통해 안전보건을 공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할 것임을 전사에 선포하고, 경영진이 직접 공사 사옥 및 시설관리 자회사 직원들의 작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사 전 직원이 참여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심사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점검·운영하여 공인 기관의 사후심사를 거쳐 ISO 45001 국제인증을 유지하였다.

한편, 안전관리실 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건강검진 사후관리, 의약외품 지원, 건강상담 등을 통해 사무직 근로자에게 발생 가능한 질환에 대해 예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자회사의 경비 및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현업근로자 대상으로 식염포도당, 이온음료 등을 전달하고,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전파 및 홍보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작업 허가제도, 작업중지 제도 등을 운영하여 위험작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통제함으로써 사옥 내 무재해·무사고 달성에 기여하였다.

사진 IX-1 경영진의 안전활동 참여



(2)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임직원의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사 전 임직원 및 파산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우선, 공사 사옥 내 비대면 재난안전 교육장을 상시 운영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정지,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및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달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전 직원 대상 건강관리 등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무실 생활안전수칙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등 다양한 교육영상을 파고TV(공사 포털)에 게시하여 임직원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파산재단 구성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 안전 및 보건전문가가 파산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점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였다.

향후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교육, 계절별 건강관리, 직무스트레스 줄이기 등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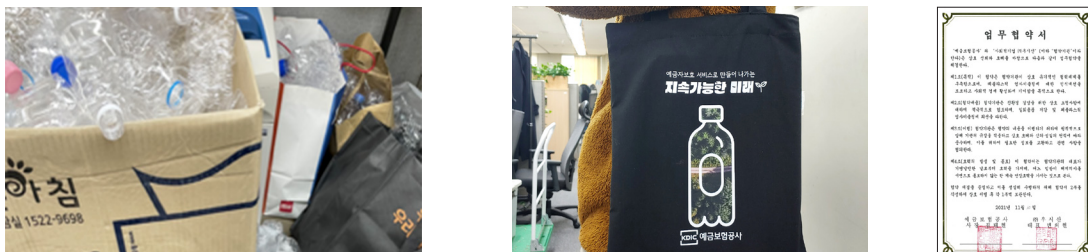
사진 IX-2 안전교육 활동



나. ESG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통한 친환경 활동 실시

공사는 2021년 ESG경영 도입에 따른 전사적 ESG 문화 확산을 위해 ‘ESG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활동으로 페플라스틱 업사이클링과 고고챌린지 등 친환경 활동을 실시하였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활동으로, 회의 후 버려지는 페페트병을 전사적으로 수거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해 친환경 에코백(88개)으로 업사이클링하였다. 고고챌린지는 1회용컵 대신 개인컵 사용을 인증하는 활동으로, 다수의 임직원이 동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사진 IX-3 페플라스틱→친환경 에코백 업사이클링 활동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가.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 장기 미매각 PF사업장 등을 활용한 사회적가치 실현

공사는 2011~2015년 30개 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파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담보부동산을 관리·매각하게 되었는데, 비교적 입지가 좋고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은 대부분 매각되었고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인기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공사는 팔리지 않은 상가 등을 비워두기보다는 청년창업가, 지역주민, 사회적약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사회적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사람들의 왕래에 따라 상가 가치도 상승하여 나머지 공실상가 매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익활용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236개 미매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활용가능성이 있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에 착수하였다. 공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단독으로 공익활용 결정을 할 수 없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익활용이 매각가치 제고에 도움이 됨을 설득하여 공익활용을 추진하였다.

* (채권단) 명도문제로 매각에 장애, (원소유자) 수익 미발생, (신탁사) 관리곤란

그 결과, 일부 활용가능한 부동산 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후 지자체 및 사회단체 등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 지역 특산물 판매공간,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공간, 지역주민 배움터 등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표 IX-1 PF사업장 등 공익활용 내역

연도	활용상가 등	활용사례(수혜자)
2018년	용인 죽전상가 1개호	도에 문화체험 및 제작판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등)
	서울 상암동, 황학동 상가 2개호	지역 특산물 판매·홍보 (강원 정선군 소재 농가)
	건재고택 (충남 아산시역문화재)	문화재 무료개방 (관람객 등 일반국민)
2019년	서울 황학동 상가 4개호	청년예술가 창업오피스 2개호 (청년예술가) 협동조합 공유오피스 1개호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 마을주민 배움터 1개호 (지역주민)
	서울 논현동 지하상가 1개호	K-POP 댄스 문화체험 (다문화가정 어린이)
	담보 미술품	미술품 관람 및 정서 함양 (방과후 시설 어린이)
2020년	천안 소재 골프장 인근부지 임목	태풍피해 버섯재배 농가 지원 (인근 마을 주민)
2021년	청주시 올리브 상가 2개호	창업 공간 무상 제공 (청년 창업가 2개사)
	남양주시 리치플러스 상가 1개호	판매물품 홍보 공간 (소상공인연합회)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회단체(충북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협력하여 청주 소재 상가 2개호를 창업공간으로 무상 제공하였고, 지자체(남양주시청)와 협의하여 남양주 소재 상가 1개호를 소상공인연합회 물품 홍보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사진 IX-4 청주·남양주 상가의 공익활용

청년창업가(팝코즈)	청년창업가(아케인37)	남양주 리치플러스 상가
		

향후, 공실 상가를 추가 확보하고 지자체·사회단체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2)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농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지역아동 등을 보살피는 취약계층 복지시설 211곳을 후원하였다.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낙후된 소규모 복지시설에는 필수 생활가전인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을 후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화생활이 어려워진 장애인, 지역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립정동극장과 협업하여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후원대상의 상황 및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후원 사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사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대상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계층을 동시에 후원하는 쌍방향 후원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간접지원 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복지시설 후원을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예감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와 공동으로 명절맞이 농산물꾸러미를 제작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취약계층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쌍방향 후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생활가전 등이 필요한 낙후 복지시설에 냉장고, 세탁기 등 후원물품을 후원할 시에도 동반성장물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 봉사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설공단과 체결한 청계천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청계아띠)을 통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보호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 각 부서가 1개 결연시설을 후원하는 ‘1부서 1시설’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가구 방한물품 후원, 저소득 가정 장학사업 실시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후원하였다.

사진 IX-5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특히,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전국친환경농산물연합회를 통해 구입한 농산물을 복지시설에 후원하는 등 농가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사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사회공헌인증제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환경 문제 등 공동체의 관심을 받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표 IX-2 2021년 사회공헌활동 내역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회, 명)

구분	활동명	활동 내용	비고	2021년 실적	
				실시 횟수	참여자 (대상자)
이웃 사랑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주변의 이웃 또는 복지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후원 및 급식봉사 등 실시	2008.5월부터 실시	212	-
	예보꿈나무 장학 사업	저소득 취약가정 고등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	2005년부터 매년 실시	1	(20)
지역 공감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명절맞이 물품 구매 및 복지시설 후원 등	2011.8월부터 실시	591	1,245
	국가유공자·국군장병 돕기	국가유공자 및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연탄나눔, 위문금 등 후원활동 실시	2014년부터 실시	2	-
	1부서 1시설 돕기	각 부서와 결연을 맺은 복지시설 후원	2006.9월부터 실시	59	-
농어촌 동반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	일손 돕기 및 농촌문화체험	2005.11월부터 실시	-	-
	행복예감 직거래장터	농가 및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장터 개최	2015.7월부터 실시	1	-
환경 보호	환경보호	청계천 환경정화활동	2014.4월부터 실시	2	20
계				2,886	1,265

(3)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상생 노력

공사는 겨울철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활동 증가로 높아진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가스자동차단기 250개를 서울 중구 지역 내 고령자 등 화재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다. 공사는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중부소방서와 2019년 전통시장 소방안전기기 지원 및 공동 금융·안전교육, 2020년 화재취약계층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에 이어 이번 사업도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범적 협력모델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재산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IX-6 화재취약계층에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4) 지역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정보 및 공공데이터 공유 확대

1)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비대면교육 활성화

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 노년층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장애인, 새터민, 지역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매년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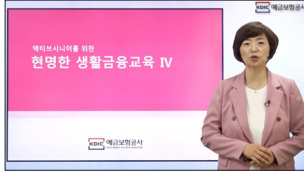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하여 노인·장애인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총 845회, 14,874명에게 생활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정부지침보다 강화된 집합기준 적용, 강사 전담지역 세분화 및 행동수칙 개선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참관평가 도입 등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총 637회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융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와 소외지역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여 금융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추어 온라인교육 내실화 등을 통한 비대면교육 확대를 추진하였다.

노인, 장애인, 지역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여 취약계층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채널 금융교육을 대폭 확대(74회 → 114회)하였고, 강사와 수강생이 실시간 소통하는 쌍방향 비대면교육을 신규 도입(94회)하는 등 비대면교육을 활성화하였다.

표 IX-3 비대면 생활금융교육 현황

구분	유튜브 교육	실시간·쌍방향 교육
대상	금융취약계층	금융취약계층, 미래금융소비자 등
구성	- (노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등 - (장애인) 계획적인 금전관리 등 - (지역아동) 디지털금융 등	-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쌍방향 소통 가능한 생활금융교육 진행
실적	114회	94회
		

2)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사는 보호대상 금융상품, 부보대상 금융회사 정보, 파산재단 부동산 공매정보 등 국민 관심이 많고 이용가치가 높은 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2021년 중 사회공헌활동 및 해외 주요 금융기구 연구분석자료 정보 등 5개의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여 2021년말 기준으로 총 48개 유형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분석 및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부보금융회사 재무현황 관련 개방항목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을 위해 신규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의 신규 공공데이터와 2개의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였으며 2022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선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우수’)을 획득하였다.

3)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제공

공사는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2008년부터 공사의 금융·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다.

코로나19 가운데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2021년은 쌍방향 소통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상담을 실시하였고, 기존 노인복지관 외에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수혜대상도 확대하였다.

나. 중소·소상공인 상생협력 도모

(1) 코로나19 극복 및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회적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해 'KDIC-희망뉴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디지털·그린·안전망·지역균형 등 한국판 뉴딜 분야 관련성 및 지속적인 협업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비대면 화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총 26개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지원금을 후원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금년도 선정 기업 5개 및 전년도 선정 기업 2개 등 총 7개 기업과 협업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IX-4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사업 추진 내역

지원 기업(사업 내용)	협업 내용
리맨 (IT기기 재제조 및 재활용)	• 사용연한 만료 PC(200여대) 등 보수 ▶ 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등) 기증
휴먼앤티크 (가스자동차단기 제조)	• 가스자동차단기 구입 ▶ 지역 내 화재 취약계층 기증
온아시아 (다문화 여성 대상 통·번역 교육 및 자립 지원)	•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
교남어유지동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 해당 사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활용한 생산설비 투자 지원
빅이슈코리아 (주거취약계층 자립 지원)	• 예금보험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공익광고 게재
나눔푸드 (홍삼액 등 홍삼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	• 공사 주최 직거래장터 초청 ▶ 판매부스 제공 등 판로 지원
숲스토리 (물품 재활용 및 판매)	• 공사 임직원의 중고물품 나눔캠페인 ▶ 양질의 물품 460여점 기증

공사는 26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후원 및 협업사업을 통해 해당 사회적기업의 직원 약 3백명의 고용유지 및 안정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속가능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뉴딜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결제환경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공사는 중소기업의 결제대금회수 안정성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NH농협은행과 약정결제·지급결제 플랫폼 가입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는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으로 이를 전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부서 도입 안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가능 여부 사전점검을 위한 용역입찰체크리스트 항목 반영으로 2021년 7월 도입 후 2건, 총 34백만원의 이용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제로페이 주요 가맹점포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경비집행이 가능한 예산비목을 확대하고, 가맹점 정보 제공 등 사용자 교육 실시, 부서 평가항목에 사용실적 반영 등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1년 2,118건, 총 161백만원(2020년 대비 각각 1,541건, 63백만원 증가)을 제로페이를 결제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실현하였다.

(3)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KDIC 모범거래모델> 기반 제도개선

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KDIC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대국민, 대협력업체, 민간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4대 유형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각 항목별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표 IX-5 KDIC 모범거래모델 4대 유형별 개선 필요사항 및 제도개선 실적

유 형	개선 필요사항	제도개선 실적
對국민 (수입계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 극복 동참 및 적극적인 손실보상 분담 요청	• 공사 사옥 입주사 임대료 50% 인하 • 구내식당 협력업체 손실 보전 → 석식 단가 인상
對협력업체 (지출계약)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특정업체 또는 특정인과의 계약 등 특혜 방지를 위한 규정 필요 • 승낙서 등 계약서류에 포괄적, 불명확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조항 배제	• 계약 관련 내규개정으로 비밀유지협약(NDA) 의무화 • 입찰시 사전규격 공개 및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 • 구체적인 계약해지 가능 조건을 적시한 승낙서양식으로 변경·배포하여 불공정 거래조건 개선
민간기업	•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대금·임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확대 필요	• 하도급지킴이 2년 연속 100% 활용, 실적 2배 증가('20년 3건 → '21년 6건)
공정거래 준수 내부준칙	• 금품수수 등 불공정행위 적발의 경우 제재기준 명확화 필요	• 인사 관련 내규개정을 통해 직무, 권한이용 부당행위자 징계사유 명시

(4) 동네서점 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공사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네서점 지원제도’를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업무 효율성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정보자료지원실 도서를 1개 구매처(교보문고)에서 일괄 구입하였으나, 2021년에 동네서점*에서 직원이 개별적으로 희망도서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동네서점 지원제도는 임직원이 동네서점에서 직접 도서를 구입한 후 영수증을 도서자료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동네서점 관련 웹사이트(bookshopmap.com, 지역서점활성화 플랫폼) 및 도서자료 담당자를 통해 확인된 동네서점

공사는 2021년 중 동네서점에서 총 125권의 도서를 구매하였고, 동 제도 및 동네서점 홍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주요 동네서점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두 차례 제작하여 포탈에 게시하였다. 향후 공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네서점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IX-4 동네서점 지원제도 카드뉴스



(5) 중소기업·소상공인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신규 제도 도입

2020년 공사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관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21년 예금보험공사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지표별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세부지표로서 협력이익공유제, 상생누리, 동반성장물, 상생결제 등 동반성장 평가에 관련한 신규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부서 평가 반영 및 교육, 안내 등을 통해 전사적 참여를 독려하고 실적 창출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상생협력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였다.

5. 윤리 경영

공사는 윤리경영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발맞추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전략과제로 삼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1년 전 인증 획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의 사후심사 절차를 진행,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부패리스크 식별 작업 및 철저한 서류·대면 심사를 통해 부적합 없이 인증을 유지하여 공사 내 부패방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공사의 내부시스템 정비를 이행하였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해추구행위를 적극적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보 사적이용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시스템의 권한을 가지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주식투자를 원천 금지하며, 2021년 4월에는 파산재단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시 임직원 참가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 운영 중이다.

공사는 ‘청렴 모니터링’과 ‘직무관련 외부인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사전에 원천봉쇄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외부청렴도 상위권(2등급)을 유지하였다. 국민들에게 공사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렴연극 상연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관람하였으며, 공사 SNS를 활용한 대국민 청렴퀴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반부패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청렴 DAY’ 및 ‘청렴 Talk’를 통해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시책 및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여 청렴문화를 내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경영진 청렴이어달리기를 통해 고위직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전파하고, 고위직·전 직원·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승격자·신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수행함과 동시에 갑질·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하고 도덕적인 윤리경영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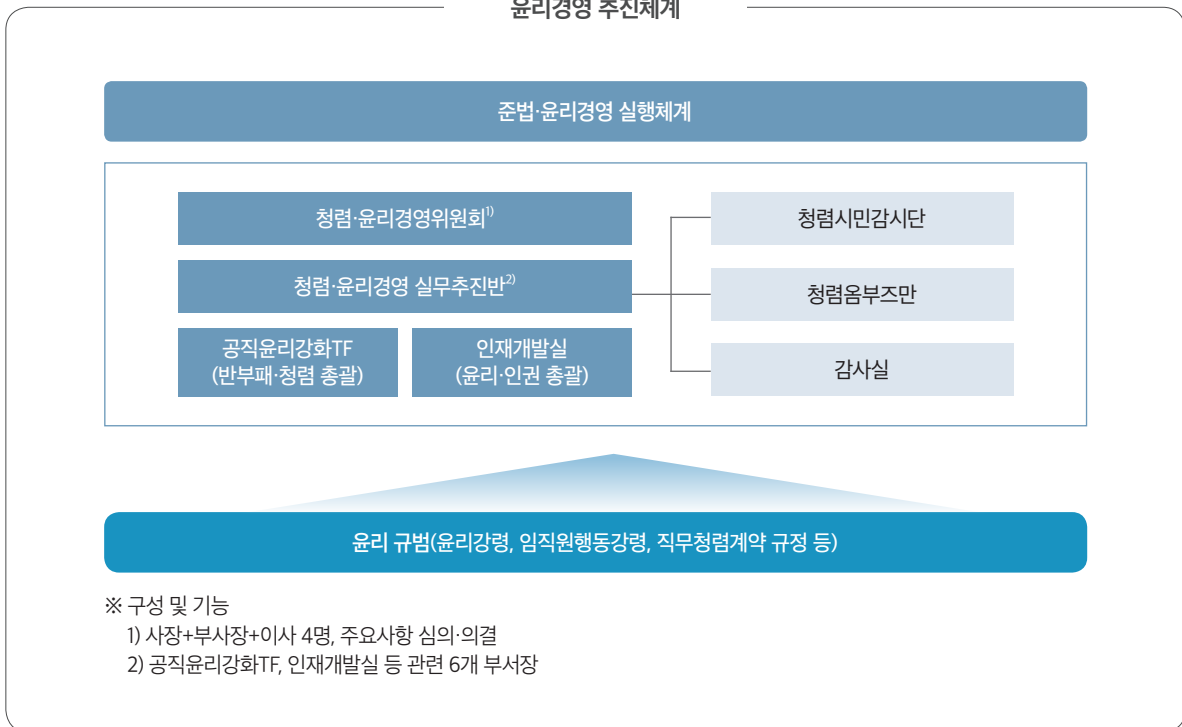
나아가, 정부의 인권중시 기조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 권고에도 부응하고 있다. 인권 관련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의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계획을 논의·확정하였으며,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 인터페이스를 간편화하여 신고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향후에도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권존중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표 IX-6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윤리경영 추진체계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0

2021년도 결산

제1절 결산 개요
제2절 결산 기준
제3절 결산 현황

제1절

결산 개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 공사회계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 등 4개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한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시 은행계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생명보험회사계정, 손해보험회사계정, 종합금융회사계정, 상호저축은행계정,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등 7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상환기금은 은행계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생명보험회사계정, 손해보험회사계정, 종합금융회사계정, 상호저축은행계정, 신용협동조합계정 등 7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예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제2절

결산 기준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등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유가증권의 평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 및 매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 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가능금융자산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상각후원가측정가능금융자산은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관계기업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지분비율만큼 취득원가에 가감처리하고 동시에 자본항목을 증감시키거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가능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된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또는 상각 후 취득원가)와 공정가액(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나. 대출금 등의 평가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총당부채

소송결과 등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총당부채를 적립하고 있다.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수익·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예금보험료수입과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❶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❷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❸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II. 상환기금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

채무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장기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라. 공채발행차금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공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마.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총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3. 수익·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 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비용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3절

결산 현황

1.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통합

가. 재무 현황

2021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16조 4,576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9,117억원(5.9%) 증가하였다. 이는 운용자산 및 미수보험료가 각 9,202억원, 1,653억원 증가하였으나, 장기구상채권이 1,622억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1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7조 8,876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1조 3,152억원(△14.3%) 감소하였다. 이는 보험료, 파산재단에서 받은 파산배당금 등의 수입으로 특별계정 발행채권 및 차입금을 순상환(1조 3,202억원)한 데 기인한다.

2021년말 현재 자본 총액은 8조 5,700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2조 2,269억원(35.1%)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2조 2,853억원)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

나. 손익 현황

2021년도 당기순이익은 2조 2,853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2020년 대비 3,738억원(19.6%)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은 2조 1,023억원으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영업수익(2조 3,827억원)의 경우 예금보험료수익(2조 2,001억원), 운용자산 이자수익(1,694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영업비용(2,804억원)의 경우 예특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1,568억원), 공사운영비(1,12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타손익은 1,829억원으로 구상채권 회수예상가액 증가로 인한 대손충당금순환입(1,81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환기금

가. 재무 현황

2021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3조 1,499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182억원(0.6%) 증가하였다. 이는 매각 등에 따른 장기투자증권 감소(△6,682억원)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이 증가(7,163억원)함에 주로 기인한다.

2021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25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1조 4,913억원(99.8%) 감소하였다. 이는 특별기여금, 주식 매각대금 및 배당금 등으로 채권을 상환(1.48조원)한 데 주로 기인한다.

2021년말 현재 순자산 총액은 3조 1,474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1조 5,095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공적자금상환 기금으로 출연금을 1.25조원 전출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2조 6,662억원 실현에 주로 기인한다.

나. 손익 현황

2021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2조 6,662억원으로 2020년도 대비 4,896억원(22.5%) 증가하였다.

*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부(-)인 경우 발생한 원가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4,842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3,485억원에서 프로그램수익 8,327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프로그램총원가의 경우 지원자산 처분손실(3,001억원), 상환채 이자비용(117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수익은 지원자산처분이익(6,205억원), 배당금수익(1,627억원), KR&C 대출금 이자수익(47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운영순원가는 (-)4,890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4,842억원에서 관리운영비 등 32억원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 80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한편, 재정운영결과 (-)2조 6,662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4,890억원에서 비교환수익 2조 1,772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기여금수익을 말한다.

표 X-1 요약 재무상태표

당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전 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110,192	114,075	유동부채	27,779	25,333
1. 현금및현금성자산	236	11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49	599
2. 유동금융자산	96,521	101,925	단기미지급비용	473	54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21	398	금융리스부채 등	76	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권)	18,822	23,340	2. 유동금융부채	27,187	24,699
단기대여금	628	628	단기차입금	186	-
(대손충당금)	-	(-)38	사채	27,000	24,700
단기금융상품	76,450	77,597	사채할증(인)발행차금	1	(-)1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434	12,035	3. 유동비금융부채	18	12
착오송금채권	9	-	단기예수금	18	12
단기미수수익	13,423	12,034	4. 유동충당부채	25	23
기타	2	1	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	25	23
4. 유동비금융자산	1	1			
단기선급비용 등	1	1			
비유동자산	54,384	41,384	비유동부채	51,097	66,695
1. 비유동금융자산	45,662	31,140	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167	1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권)	43,072	30,994	금융리스부채	167	194
장기대여금	6	6	2. 비유동금융부채	50,856	66,356
장기금융상품	2,584	140	장기차입금	2,500	2,500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2	91	(현재가치할인차금)	(-)336	(-)408
장기보증금	111	101	정부보조금이연수익	290	359
(현재가치할인차금)	(-)9	(-)10	사채	48,400	63,900
3. 유형자산	414	413	사채할증(인)발행차금	2	5
토지	52	52	3. 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건물	102	102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구축물	18	18	4. 종업원급여채무	-	71
건설중인자산	14	1	순확정급여부채	-	71
사용권자산	313	355			
기타유형자산	277	276	부채 합계	78,876	92,028
(감가상각누계액)	(-)362	(-)391			
4. 영업권이외 무형자산	6	6	이익잉여금	86,219	63,277
기타무형자산	6	6	당기순이익: (+)22,853		
5. 순확정급여자산	90	-	기타 잉여금 변동: (+)89		
6. 비유동비금융자산	8,110	9,734			
장기선급비용	7	9	기타자본구성요소	(-)519	154
장기구상채권	144,999	148,39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19	154
(대손충당금)	(-)136,896	(-)138,671	자본 합계	85,700	63,431
자산 합계	164,576	155,459	부채및자본 합계	164,576	155,459

표 X-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당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	전기
영업이익 (A=B-C)	21,023	18,088
영업수익 (B)	23,827	21,243
보험료수익	22,001	19,069
이자수익	1,694	2,044
이전수입	73	71
착오송금수입	1	-
기타수입	58	59
영업비용 (C)	2,804	3,155
이자비용	1,568	1,937
인건비	814	793
경비	421.8	425
착오송금비용	0.2	-
기타 손익 (D)	1,829	1,025
대손상각비 순환입(전입)	1,814	(-)479
기타	15	1,504
금융 손익 (E)	1	2
금융자산처분이익 등	1	2
당기순이익 (F=A+D+E)	22,853	19,115
기타포괄손익 (G)	(-)584	(-)11
총포괄이익 (H=F+G)	22,269	19,104

표 X-3 요약 재정상태표

당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전 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순자산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11,144	3,979	유동부채	1	14,938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131	868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14,800
2. 단기금융상품	-	3,100	2. 기타유동부채	1	138
3. 미수채권	11,041	11,039	장기충당부채	24	-
(대손충당금)	(-)11,028	(-)11,028	1. 소송충당부채	24	-
투자자산	20,281	27,264	부채 합계	25	14,938
1. 장기대여금	142,815	142,815			
(대손충당금)	(-)139,989	(-)139,688	순자산		
2. 장기투자증권	17,455	24,137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기타비유동자산	74	74	2. 적립금및잉여금	(-)491,434	(-)505,596
1. 장기구상채권 등	74	85	3. 순자산조정	(-)156	(-)1,089
(대손충당금)	-	(-)11	순자산 합계	31,474	16,379
자산 합계	31,499	31,317	부채와 순자산 합계	31,499	31,317

표 X-4 요약 재정운영표

당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 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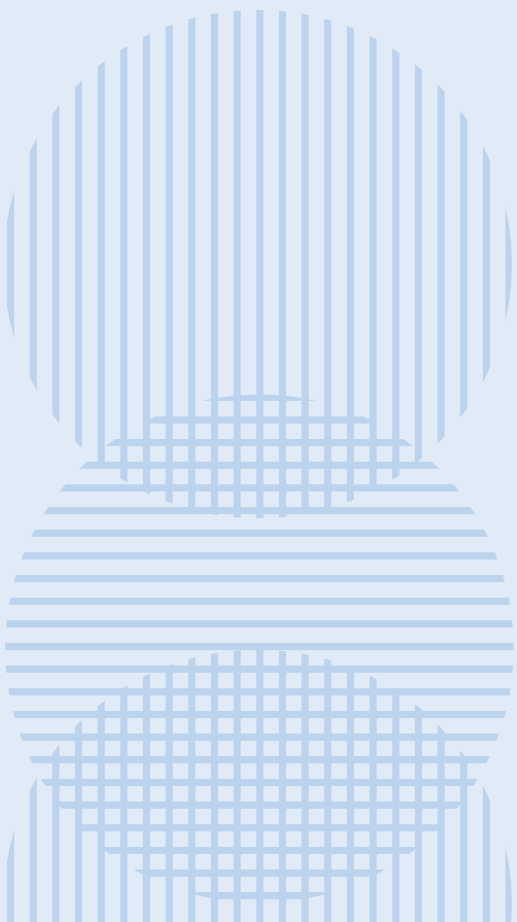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3,485	(-)8,327	(-)4,842	1,004	(-)2,817	(-)1,813
1. 금융정책지원	3,485	(-)8,327	(-)4,842	1,004	(-)2,817	(-)1,813
이자비용	119			817		
대손상각비	321			186		
지원자산처분손실	3,001			-		
지급수수료 등	44			1		
배당금수익		1,627			2,402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476			414	
지원자산처분이익		6,205			-	
대손충당금환입		19			-	
잡이익 등		-			1	
II. 관리운영비			32			33
1. 지급수수료			32			33
III. 비배분비용			-			-
1. 평가손실 등			-			-
IV. 비배분수익			80			246
1. 이자수익			80			246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4,890			(-)2,026
VI. 비교환수익			21,772			19,740
1. 부담금수익			21,772			19,74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6,662			(-)21,766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

2021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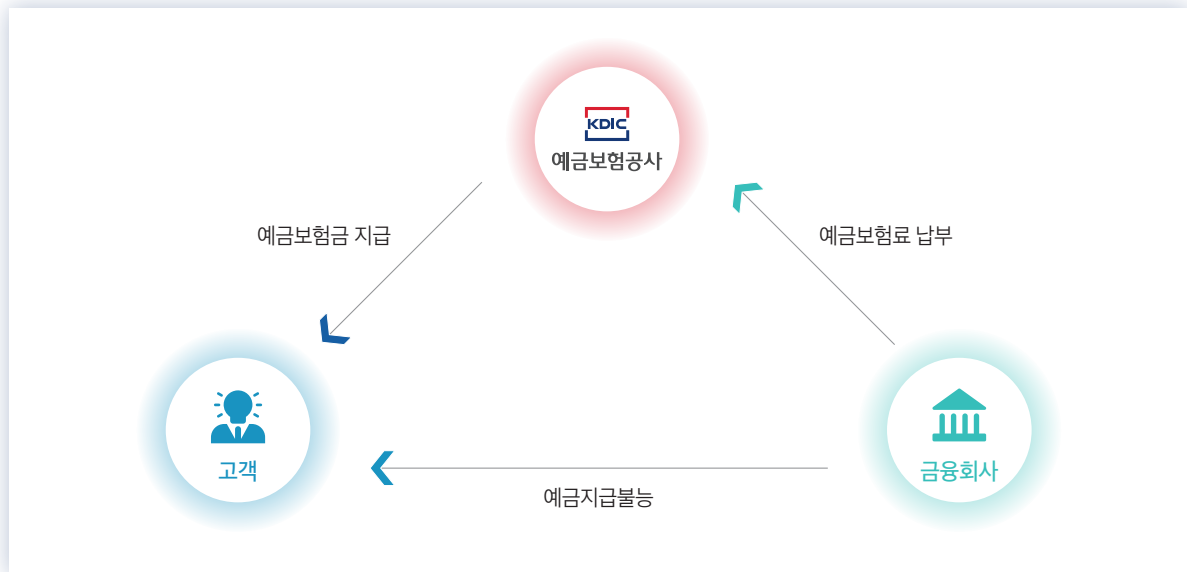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대외평가
3. 2021년도 주요일지
4. 통 계

1. 예금보험제도 개요

가. 예금보험제도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평상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예금보험의 구조



나. 부보금융회사

부보금융회사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로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 포함),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등이 부보금융회사에 해당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등도 이에 해당된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가 부보금융회사에 해당된다. 한편,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해당된다.

다. 부보예금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부보금융회사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보호되지 않는 예금 등을 제외한 금전을 말한다.

● 보호 금융상품 및 비보호 금융상품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¹⁾, 주택청약종합저축 등¹⁾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투자 매매 업자 · 투자 중개 업자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체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²⁾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²⁾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주 : 1)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제2항)

2) 저축은행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라. 보호한도

1996년 공사 출범 당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7년 11월 19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한도를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한편, 원리금 전액 보장으로 인한 예금자와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1998년 7월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금 계산방식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원금만 보호하는 것이었다.

*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 이율(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과 영업 정지된 부보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2001년부터 환원 예정이었던 예금부분보호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공사는 2009년 6월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적립금 중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행 예금, 금리연동형·이율보증형 보험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 등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금자가 보호대상 적립금 등이 예치된 부보금융회사에 다른 부보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을 합산하여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호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사는 2015년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별도 적용하고 있다.

●● 예금보호한도 변천내역

구 분	예금보호한도
1997. 1. 1 ~ 1997. 11. 18	1인당 2,000만원 보호
1997. 11. 19 ~ 1998. 7. 31	원리금 전액 보호
1998. 8. 1 ~ 2000. 12. 31	• 1998. 8. 1 이전 가입분 : 전액보호 • 1998. 8. 1 이후 가입분 : 2,000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 보호 2,000만원 이하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000만원까지 보호
2001. 1. 1 ~ 2015. 2. 25	1인당 5,000만원 보호(결제성 예금은 2003. 12. 31까지 전액 보호)
2015. 2. 26 ~ 현재	1인당 5,000만원 보호(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

2. 대외평가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2020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2021년 3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았다.

2021년 6월에 발표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종합 'B등급'을 달성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용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2020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보고서(자산운용부문)를 작성하여 2021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동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6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10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동종 기금 중 최고 수준의 기금운용 역량을 인정받았다.

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공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대상 기관이다.

공사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도모니터링(청렴콜) 등 전사적 부패 취약분야 개선·운영 노력으로 외부청렴도는 상위권인 '2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종합청렴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3등급'을 획득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수립에 대하여 평가하는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전년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획득하였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고 노력 등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향후 공사는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2022년 KDIC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및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 등에 따라, 연 1회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1년 6월에 발표된 2020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공공기관 중 상위 수준인 'B(양호)' 등급을 획득하였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1년 6월에 발표된 202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공사는 'B 등급'을 획득하였다.

3. 2021년도 주요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월 19일	「한·캄 캄코시티 정보공유 TF」 1차 화상회의 개최
1월 28일	국가정책 홍보를 통한 지역발전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1월 28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 2020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2020 기관 최우수상」 수상
2월 10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3월 23일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연장 추진
3월 28일	2021년도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 실시
3월 30일	공사·말레이시아 예보 공동주관 웨비나 개최 (주제 :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3월 31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4월 1일	기업은행과 ‘K-뉴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4월 9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2% 블록세일로 매각(1,493억원 회수)
4월 12일	파산금융회사 파산배당금 ‘모바일 안내 서비스’ 시행
4월 23일	검찰과 공조하여 은닉재산 조사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4월 29일	우정사업본부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우체국 e-그린우편 서비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월 3일	한국신용정보원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데이터 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6월 1일	기금운용평가 10년 연속 금융성 기금 최고등급 달성
6월 2일	공사·말레이시아 예보 공동주관 웨비나 개최 (주제 : “핀테크”)
6월 16일	공사 주관 IFIGS(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World Bank(세계은행) 공동 웨비나 개최 (주제 :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역할 및 정리사례 소개”)
6월 22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 관련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 25일	한·캄 캄코시티 정보공유 워킹그룹 1차 화상회의 개최
6월 29일	하나은행과 ‘ESG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6월 30일	「금융안정연구」 제 22권 1호 발간

일 자	주 요 내 용
7월 5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7월 14일	NH농협은행과 ‘ESG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1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부칙 제9134호 2항)
8월 18일	「KDIC 희망뉴딜」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10월 1일	제 11대 김태현 사장 취임
10월 5일	행안부 주최 실패극복사례 최우수상 수상
10월 22일	베트남 예금보험공사(DIV) 임직원 대상 비대면 연수 실시
10월 27일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IDIC) 전 직원 대상 비대면 연수 실시
11월 19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행복예감 직거래 장터」 개최
11월 23~24일	「KDIC Global Training Program」 개최
11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 체결
12월 2일	사장, IADI(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이사 당선
12월 8일	제8차 IFIGS(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 연차총회 개최
12월 9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9.33% 희망수량경쟁입찰로 매각(8,977억원 회수)
12월 9일	「2021년도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개최
12월 10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주제 :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2월 15일	한국금융법학회와 온라인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주제 : “금융부실책임조사 20년의 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
12월 16일	2021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 대상 수상
12월 29일	2021년도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 유공 금융회사 포상
12월 31일	「금융안정연구」 제 22권 2호 발간

4. 통 계

가. 부보금융회사¹⁾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 분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은 행	56	56	54	54	54
국 내	18	18	18	18	19
외국계	38	38	36	36	35
금융투자 ²⁾	110	124	141	105	106
보 험	47	44	45	45	43
생명보험	25	24	24	24	23
손해보험	22	20	21	21	20
종합금융	1	1	1	1	1
저축은행 ³⁾	80	80	80	80	80
합 계	294	305	321	285	284

주 : 1) 부보금융회사는 인·허가일부터 인·허가 취소일 또는 해·파산일 전일까지 금융회사를 말함

2)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포함하여 집계

나. 금융권역별 부보예금¹⁾

(2021년 9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말(A)	2021년 9월말(B)	증감(B-A)
은 행	15,519,250	16,493,298	974,048
금융투자	744,650	810,193	65,543
보 험	8,346,608	8,585,626	239,018
생명보험	6,229,125	6,382,940	153,815
손해보험	2,117,483	2,202,686	85,203
종합금융	18,992	23,432	4,440
저축은행	713,480	831,903	118,423
합 계	25,342,980	26,744,453	1,401,473

주 :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부보금융회사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을 제외한 금액(잔액기준)

다. 상환기금 수입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보험료 수입 ²⁾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1998 이전 ¹⁾	1999 ~2002	합 계	200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은 행	1,613	13,105	14,718	77,239	9,786	10,664	11,344	12,011	12,566	14,100	15,681	163,389
금융투자	-	687	687	2,200	179	240	272	300	307	305	538	4,340
보 험	2,322	8,237	10,559	22,557	3,513	3,836	4,171	4,330	4,509	4,745	4,885	52,545
생명보험	1,800	6,646	8,446	17,781	2,617	2,835	3,067	3,133	3,228	3,384	3,436	39,482
손해보험	522	1,591	2,113	4,776	896	1,001	1,103	1,197	1,281	1,361	1,449	13,063
종합금융	980	838	1,818	120	7	8	10	11	12	14	17	199
저축은행	2,407	1,833	4,240	5,360	308	348	403	469	539	585	651	8,662
신 협	402	1,491	1,893	1,712	275	299	332	-	-	-	-	2,617
합 계	7,724	26,191	33,915	109,187	14,068	15,394	16,531	17,121	17,933	19,748	21,772	231,753

주 : 1) 1998년 보험료 수입은 1998년초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1998년 4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

2) 20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라. 예금보험료 수입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11 ¹⁾	2012 ⁵⁾	2013 ⁵⁾	2014 ⁵⁾	2015 ⁵⁾	2016 ⁵⁾	2017 ⁵⁾	2018 ⁵⁾	2019 ⁵⁾	2020 ⁵⁾	2021 ⁵⁾	합 계
은 행	44,963	3,748	3,948	4,197	4,369	4,675	5,005	5,250	5,342	5,942	6,641	94,079
금융투자	2,655	2	0	0	0	0	0	0	39	0	165	2,862
보 험	35,103	86	709	1,256	1,990	2,662	3,233	3,439	3,444	3,139	2,008	57,067
생명보험	28,539	-14 ³⁾	221	811	1,280	1,857	2,349	2,466	2,426	2,109	914	42,957
손해보험	6,564	100	488	445	710	806	883	973	1,018	1,030	1,093	14,110
종합금융	251	8	8	6	4	7	9	9	10	11	14	337
저축은행	12,931	1,345	253	256	64	296	286	139	248	216	253	16,287
특별계정 ²⁾	1,742	5,816	6,672	6,158	7,120	6,823	8,242	9,102	9,360	10,259	11,267	82,564
합 계 ⁴⁾	97,645	11,004	11,590	11,872	13,547	14,463	16,774	17,940	18,443	19,567	20,347	253,194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설치(2026년 말까지 존치 예정)

3) 2012년 이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에 대한 환급

4)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5)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2012년(금투·생보 면제, 손보 15% 감액), 2013년(금투 면제, 생보 45% 감액, 손보 7% 감액), 2014년(금투 면제, 생보 38% 감액, 손보 1% 감액), 2015년(금투 면제, 생보 17% 감액), 2016년(금투 면제, 생보 5% 감액), 2017년(금투 면제, 생보 5% 감액), 2018년(금투 80% 감액, 생보 6% 감액), 2019년(금투 면제, 생보 16% 감액), 2020년(금투 49% 감액, 생보 64% 감액), 2021년(생보 70% 감액) 예금보험료 감면 조치

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2002년 구 발행 예보채권)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금융	65,120	-	12,600	73,344	-	151,064
저축은행	9,917	15,977	6,500	33,331	-	65,725
신 협	2,769	8,178	-	2,027	-	12,974
합 계	210,150	224,849	89,407	310,593	36,600	871,599 ¹⁾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바.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¹⁾	자산매입 ¹⁾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	81,064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113	21,239	-	125,264
보 험	159,198	31,192	-	3,495	-	193,885
생명보험	56,697	27,519	-	3,495	-	87,711
손해보험	102,501	3,673	-	-	-	106,174
종합금융	26,931	7,431	182,718	-	-	217,080
저축은행	1	4,161	72,892	-	5,969	83,023
신 협	-	-	47,402	-	-	47,402
합 계	507,937	186,117	303,124	105,799	5,969	1,108,946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지원 포함

사.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
	제일은행	50,248
	한빛은행	60,286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
	하나은행(하나 보람합병)	3,295
	조흥은행	27,179
	평화은행	4,930
	경남은행	2,590
	광주은행	1,704
	제주은행	531
	수협	11,581
	농협	962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
	하나로종금	24,912
	한스, 한국, 중앙종금	2
	영남종금	1,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
	서울보증보험	102,500
	대한생명보험	35,5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선생명보험	21,197
	한국투자신탁증권	51,649
	대한투자신탁증권	29,003
	정리금융공사	1
	대한, 국제화재보험	1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6
	소 계	507,937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5개 인수은행)	97,113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
	농협	870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1
	제일은행	11,528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20
	부민금고 등	4,161
	대한화재	509
	우리(구 하나로)종금	7,431
	국제화재	739
	동양,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2,425
	녹십자(대신)생명	1,393
	KB(한일)생명	266
	한국투자신탁증권	784
	대한투자신탁증권	630
	현대투자신탁증권	2,730
	소 계	186,117

구 분			지원금액
예금 보험금 지급	직접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2
		증권회사(4개)	113
		상호신용금고	12,335
		영남, 한솔, 한국증권	1
	정리금융회사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종합금융(종금 18개)	182,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7
		소 계	303,124
자산 매입	직접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9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지분)	165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주식등)	8,570
	정리금융공사 대출을 통한 매입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588
		제일은행	79,063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5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
		현대투자신탁증권	1,300
			소 계
대 출	상호신용금고(13개)	5,969	
	소 계	5,969	
총 계			1,108,946

아.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226	-	-	-	226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	226	-	-	-	22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3,655	229,873	36,278	1,136	775	271,717
합 계	4,866	254,642	50,690	6,027	994	317,219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자. 연도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03,457
2001	41,179
2002	26,634
2003	56,034
2004	56,672
2005	36,117
2006	34,001
2007	43,660
2008	23,980
2009	24,118
2010	29,295
2011	12,679
2012	13,769
2013	7,992
2014	24,449
2015	16,243
2016	26,483
2017	11,692
2018	5,040
2019	4,652
2020	3,318
2021	12,923
누 계 ¹⁾	614,388

주 : 1) 현투증권 등 부실금융회사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2004년도), 458억원(2006년도), 93억원(2007년도), 200억원(2012년도) 포함

차. 형태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21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¹⁾	대출금 직접회수	합 계
은 행	230,759	702	18,472	66,667	-	316,600
금융투자	12,121	3,375	78	18,014	-	33,588
보 험	65,673	888	4,310	2,453	-	74,324
생명보험	25,338	848	3,662	2,453	-	32,302
손해보험	41,334	40	648	-	-	42,022
종합금융	3,121	59	93,391	-	-	96,571
저축은행	-	343	52,760	-	5,969	59,072
신 협	-	4	34,229	-	-	34,233
합 계	312,674	5,371	203,240	87,134	5,969	614,388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회수 포함

카.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21년말 기준, 단위 : 개, %)

금융권역별	1997년말 총기관수 (A)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 등	현 재 기관수
		인가 취소	합 병	해산·파산, 영업이전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2	-	17	51.5	4	20
비 은 행	2,062	205	292	631	1,121	54.7	507	1,441
• 종 금	30	22	8	-	30	100.0	1	1
• 증 권	36	6	14	6	26	72.2	48	58
• 보 험	50	11	9	12	32	64.0	36	54
• 자 산 운 용	24	9	12	3	24	100.0	350	350
• 저 축 은 행	231	144	38	1	183	79.2	31	79
• 신 협	1,666	3	196	609	808	48.5	15	873
• 리 스	25	10	15	-	25	100.0	26	26
합 계	2,095	210	304	631	1,145	54.7	511	1,461

자료 : 금융위원회

타.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2021년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합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용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 축 은 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 등		-	-	-	-	2.4	2.4
합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자료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

2021 연차보고서

발행인 김태현

편집인 임일섭

발행처 예금보험공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 02-758-1029

팩 스 02-758-1090

www.kdic.or.kr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 02-758-1029 | 팩스 02-758-1090